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 편 -

2012. 5.

연구진

연구책임자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 언

호주는 영연방 국가로서 판례법을 중시하는 영국의 법체계 전통을 따르고 있다. 모든 세목에 고루 적용되는 사항들을 국세기본법에 정리하고, 각 세목별로 독특한 내용들을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목별 법률에 포괄하여 담으며, 필요한 경우 그 세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대륙법계 국가들과는 달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가 구속력이 있으며 판례가 모여서 그 자체로서 법률을 형성한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성문화된 법률이 정교하게 발전하면서 성문법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법률체계와 구성, 판례의 역할 등에 있어서 대륙법계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호주는 영미법계의 전통을 따라 판례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인지 세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매우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호주 조세 전문가가 아닌 한 세법과 시행령을 따라가면서 호주의 조세체계와 세목별 과세제도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호주 국세청과 재무부에서 호주의 조세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들을 잘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호주의 조세체계 및 세목별 조세제도를 파악하여 정리한다.

호주의 재무부는 2008년 8월에 호주의 조세체계 및 공적 이전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Architecture of Australia's Tax and Transfer System*)를 발간하였는데, 그 보고서는 호주의 각급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 최소한 125개는 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중 99개는 연방정부 세목이고, 25개는 주정부 세목이다. 주 산하의 지방정부 세목은 1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세목이 많은 것은 조세를 법률적 개념이 아닌 경제적인 개념에 따라 정의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헌법에 의하면 조세는 “정부 및 공공 목적으로 강제로 징수한 것으로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 벌금, 부당징수가 아닌 것”을 말한다(Commonwealth Constitution, s51(ii)). 즉, 조세는 정부가 강제로 징수한 것으로서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연

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IMF나 UN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정의와 일치하는 것이다. 125개라는 세목의 수는 호주의 통계청(ABS) 분류에 따른 것이다.

세목 수는 많지만 대부분 작은 세목이어서 세수입 규모로 볼 때 큰 세목 10개가 세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 10개의 세목을 보면, 개인소득세(personal tax)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법인세(company tax),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연료세(fuel excise), 급여세(payroll taxes), 등록인지세(conveyance stamp duties), 지방정부 레이트(local government rates),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담배소비세(tobacco excise), 토지세(land taxes) 순이다. 기타 115개 세목에는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를 비롯하여 도박세(gambling taxes), 보험세(insurance taxes), 주류소비세(beer and spirits excise), 관세(customs duties),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es), 원유소비세(crude oil excise), 농업 부담금(agricultural levies) 등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수규모가 비교적 큰 세목들을 중심으로 호주의 조세제도를 정리한다.

다른 국가의 조세제도를 정리한 보고서는 보고서를 집필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저자는 본 보고서가 제일 먼저 정책 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이 국내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다음에 호주에 대한 투자 등의 이유로 호주의 세법과 조세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개괄을 이해하는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보고서는 안중석 선임연구위원이 김정현 전문연구원과 이준성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집필하였다.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의 호주세제 전문가가 감수하였다. 집필을 담당한 안중석 선임연구위원과 작업을 도와준 두 명의 연구원, 그리고 자세하게 읽어 보고 의견을 제시해 준 삼일회계법인 담당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꼼꼼하게 원고를 정리해 준 홍유남 주임연구행정원께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는 원래 2010년에 발간할 것을 목표로 집필하였는데, 그때 발간하지 못하고 2년 후에 발간하게 되었다.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호주의 경제 및 사회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비롯하여 조세체계 등을 갱신하였으나 각 세목별 구체적인 제도의 설명은 부득이 2010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을 그대로 두었다. 자료의 갱신과 새로운 원고의 교정을 맡아 훌륭하게 수행한 조세연구본부의 박소희 연구원과 출판팀의 박산유

전문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며,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2년 5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 원 동

목 차

제1편 총론	19
I. 경제 및 사회 환경	19
1. 정부체제	19
가. 의회	21
나. 행정부	21
다. 사법부	22
2. 호주의 사회 환경	22
3. 최근 경제상황	25
가. 경제 규모 및 소득수준	25
나. 산업구조	28
다. 수출입 현황	30
라. 투자 현황	33
II. 조세체계	39
1. 조세법체계	39
2. 조세체계	44
가. 조세의 개념 및 조세체계	44
나. 주요 세목 개요	46
III. 세수입 규모 및 구성	52
1. 조세부담률, 연방·주정부의 세수입 규모	52
2. 세수입의 구성	58

IV.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62
-------------------------------	----

제2편 소득세제	67
----------------	----

I. 개인소득세	67
1. 서론	67
2. 납세의무자	70
가. 서론	70
나. 거주자, 일시적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	71
다. 파트너십, 신탁	72
3. 비과세소득	73
가. 소득의 구분	73
나. 면제소득	74
다. 비과세-비면제소득	75
4. 과세소득	77
가. 과세소득의 정의, 산정체계	77
나. 인적용역 소득	79
다. 사업소득	79
라. 부동산 및 증권, 외국환 판매 수입	80
마. 사회보장 및 연금	81
바. 도박수입, 상금 등	81
사. 이자	82
아. 배당	82
자. 임대료 및 사용료 소득	83
차. 종업원 지주제도 관련 소득	84
카. 보상금	85
타. 기업연금 혜택(Superannuation Benefits)과 퇴직급여(Termination Payments)	85

5. 각종 공제제도	87
가. 인적공제	87
나. 기부금 공제	95
다. 사업 및 고용 관련 비용 공제	98
6. 세율체계	100
7. 소득세 행정	102
가. 신고납부제도	102
나. 소득세 신고	103
다. 징수제도	107
라. 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기록의 유지, 정정 및 이의신청	108
II. 법인세	110
1. 서론	110
2. 납세의무자	111
3. 과세소득	112
가. 과세소득의 정의, 산정체계	112
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114
다.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114
라. 특정 기업의 과세소득	115
3. 비용, 손실의 공제	120
가. 사업비용 공제	120
나. 감가상각	123
다. 손실의 공제	128
라. 주식의 발행	132
마. 배당과 배당세액공제제도	133
5. 세율	135
6. 연결납세제도	138
7. 조세특례	139

가. 투자공제	139
나. 소기업에 대한 지원	140
다. 1차 산업 생산자에 대한 조세지원	141
라. 광업 및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지원	146
마. 환경보호에 대한 지원	148
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149
사. 호주의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152
아. 건축물·구조물 개량에 대한 지원	153
자. 국가 임대주택 공급 지원(NRAS: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155
8. 법인세 행정	155
Ⅲ. 국제조세	157
1. 서론	157
2. 거주자의 정의	157
3. 소득의 원천	158
4. 거주자의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	159
가. 국제소득에 대한 특례(Special Concessions)	159
나. 발생주의 과세제도	161
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164
5.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165
가. 배당소득	165
나. 이자소득	166
다. 사용료	166
라. 원천징수세의 징수	167
마. 특정 범주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168
바. 일시적 거주자	168
6. 이중과세방지조약	169

7. 이전가격과세제도	171
IV. 파트너십·신탁 등에 대한 과세	174
1.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 서론	174
가. 파트너십의 창립 및 존속	174
나. 과세소득의 신고 및 세금의 납부	175
다. 파트너십 구성원의 변경	176
라. 순소득·순손실의 계산과 배분	177
2. 신탁과 수혜자, 상속신탁	180
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의무	180
나.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81
다. 신탁의 순소득	182
라. 법인단위신탁(Corporate Unit Trust) 등	184
3. 기업연금기금 및 기여금에 대한 과세	185
가. 기업연금기금에 대한 과세	185
나. 기업연금 기여금에 대한 과세	186
다. 연금 혜택	186
라. 과세소득과 납부세액	187
마. 허용되는 공제, 세액공제, 조세지원 등	189
4. 개인연금(RSA) 계정에 대한 과세	191
5. FHSA와 동 계정 소유자에 대한 과세	191
V. 기타 과세	193
1.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193
2.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FBT)	195
가. 서론	195
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196
다. 세율	197

라. 신고와 세금의 납부	198
제3편 소비과세 및 지방세	199
I. 부가가치세	199
1. 서론	199
2. 납세의무자	201
3. 과세거래	202
4. 과세표준과 세율	203
5. 영세율·면세제도	203
가. 영세율 제도(GST-free sales)	203
나. 면세제도(Input-tax supplies)	205
다. GST 그룹(GST Group)	206
6. 부가가치세 행정	206
가. GST 사업자 등록	206
나. 신고서 작성 및 세금의 납부	207
다. 세금 계산서	209
라. 매입세액 환급	210
II. 개별소비세	212
1. 주류에 대한 소비세	212
2. 담배에 대한 소비세	213
3. 유류관련 소비세	214
4. 와인균등세	214
5. 고급자동차세	215
III. 지방세	216
1. 급여세(Payroll Tax)	216

2. 토지세(Land Tax)	218
3. 인지세(Stamp Duty)	222
4. 카운슬 레이트(Council Rate)	225
제4편 국세행정 및 절차	226
I. 세금의 납부 및 징수	226
1. 세금 납부기한	226
2. 활동보고서	226
3. 세액의 통보 및 세금의 납부	228
II. PAYG 원천징수	231
1. 원천징수 대상 지급과 세율	231
2. 원천징수의무자	234
3. PAYG 분할납부(중간예납)	235
III. 평가와 조사	238
1. 서론	238
2. 평가	239
가. 최초 평가(original assessment)	239
나. 정식 신고(full assessment)	240
다. 임의평가(default or arbitrary assessment)	240
3. 조사와 정보접근 권한	241
가. 조사의 원칙	241
나. 조사프로그램	241
다. 연간 납세 계약(Annual Compliance Arrangements: ACA)	242
라. 협상을 통한 조정	243
마. 국세청의 정보접근 권한	244

IV. 국세청의 예규와 권고	245
1. 예규, 권고의 종류와 특성	245
2. 공적예규(Public Ruling)	247
3. 사적 예규(Private Ruling)	248
V. 조세불복	250
1. 불복대상	250
2. 불복 절차	251
VI. 조세회피 방지와 소득의 처분	255
1.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	255
2.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	257
3. 조세회피 전략 프로모터	258
4. 소득의 처분(alienation of income)	259
VII. 벌과금과 처벌	261
1. 벌과금	261
2. 조세범 처벌	264
참고문헌	267

표 목 차

제1편

〈표 1-I-1〉 지역별 GDP 및 인구 비중(2010/11년)	23
〈표 1-I-2〉 지역별 면적 및 인구 수(2010년 6월)	24
〈표 1-I-3〉 주요 경제지표	26
〈표 1-I-4〉 GDP 변화추이	28
〈표 1-I-5〉 산업별 총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	29
〈표 1-I-6〉 수출입 실적	31
〈표 1-I-7〉 주요국별 상품 수출입 실적(2010/11년)	32
〈표 1-I-8〉 주요국별 서비스 수출입 실적(2005/06년)	33
〈표 1-I-9〉 외국인투자 실적	35
〈표 1-I-10〉 해외투자 실적	36
〈표 1-I-11〉 한국의 대(對)호주 직접투자 실적	37
〈표 1-I-12〉 호주의 대(對)한국 투자 추이	38
〈표 1-II-1〉 호주의 세법 체계	40
〈표 1-II-2〉 Taxation의 세부항목	42
〈표 1-II-3〉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조세	48
〈표 1-III-1〉 호주정부 일반정부 부문 발생주의 기준 조세수입, 세외수입 및 총수입	54
〈표 1-III-2〉 각급 정부별 조세수입	56
〈표 1-III-3〉 각급 정부별 1인당 세부담	57

제2편

〈표 2-I-1〉 기업연금과 퇴직급여 과세 - 펀드단계에서 과세된 경우	86
〈표 2-I-2〉 기업연금과 퇴직급여 과세 - 펀드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87
〈표 2-I-3〉 부양가족 세액공제 개인의 세액공제	89
〈표 2-I-4〉 저소득층, 노년층에 대한 세액공제	91
〈표 2-I-5〉 의료비 공제, 특정지역 공제 등	93
〈표 2-I-6〉 개인소득세 세율체계	100
〈표 2-II-1〉 법인에 대한 순세액 계산	113
〈표 2-II-2〉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사용 가능 했수	125
〈표 2-II-3〉 연도별 법인세율	136
〈표 2-II-4〉 특정 금융상품 취급 기관에 대한 법인세율	137
〈표 2-II-5〉 투자공제제도의 공제율	140
〈표 2-III-1〉 호주의 이중과세협정 체결 국가와 제한세율	170
〈표 2-IV-1〉 신탁의 손실 공제를 제약하기 위한 소유권·통제 관련조건	184
〈표 2-V-1〉 FBT 분할납부일 및 금액	198

제3편

〈표 3-I-1〉 GST 도입에 따라 폐지된 간접세	201
〈표 3-I-2〉 기업 규모별 GST 신고납부 주기	208
〈표 3-I-3〉 분기별 GST 신고기한	209
〈표 3-II-1〉 주류 관련 소비세(2010/11년)	212
〈표 3-II-2〉 담배소비세	213
〈표 3-II-3〉 유류관련 소비세	214

〈표 3-II-4〉 WET와 GST의 계산사례	215
〈표 3-III-1〉 각 주별 급여세 세율	218
〈표 3-III-2〉 각 주별 토지세 세율	221
〈표 3-III-3〉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각 주의 인지세	223
〈표 3-III-4〉 30만달러 주택 구입 시 주별 인지세 비교	224
〈표 3-III-5〉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각 주의 인지세	224

제4편

〈표 4-II-1〉 원천징수 의무자의 구분	235
〈표 4-II-2〉 규모별 원천징수세 납부기일 및 납부수단	235
〈표 4-V-1〉 AAT/STCT, 법정 소송의 수수료	253
〈표 4-VII-1〉 각종 벌금의 내역	262
〈표 4-VII-2〉 범죄 유형에 따른 조세범 처벌	265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1-I-1] 호주의 행정구역	20
[그림 1-III-1] OECD 회원국의 세수입 GDP 대비 비율(2009년)	52
[그림 1-III-2] 국가의 조세수입에서 중앙(연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2009년)	53
[그림 1-III-3] 연방정부 세입의 구성(2012/13년)	58
[그림 1-III-4] 세수입 구성의 변화	59
[그림 1-III-5] 조세수입 구성의 비교: 호주 대 OECD 평균(2009년)	60
[그림 1-III-6] 개인소득과세의 GDP 대비 비율(2009년)	61

제2편

[그림 2-I-1] 호주의 개인소득세액 계산과정	70
----------------------------------	----

제1편 총론

I. 경제 및 사회 환경

1. 정부체제

호주는 6개 주(州, state)와 2개 준주(準州, territory)로 구성되며 공식 국명은 Commonwealth of Australia이고 수도는 캔버라이다¹⁾. 국토면적은 769만km²로 한반도의 약 35배에 해당한다. 총 인구는 2011년 9월 기준 2,27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민족별로 나눠 보면 유럽계가 90%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아시아계 8%, 원주민 2.3%, 아랍계 1.7% 순으로 나타난다. 공식 종교는 없지만 천주교 29.1%, 성공회 21.1% 등을 포함하여 기독교가 72%에 달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공용어는 영어이다.

1) 6개 주는 뉴 사우스 웨일즈(시드니), 빅토리아(멜번), 퀸즐랜드(브리즈번), 서호주(퍼스), 남부 호주(애들레이드), 테즈메이니아(호바트)이고, 2개의 준주는 노던 테리토리(다윈), 수도특별구(캔버라)이다. 괄호 안은 각각의 주도를 나타낸다.

[그림 1-1-1] 호주의 행정구역



호주는 연방형 국가로서 지방분권제가 발달하여 연방정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준주), 지방정부(약 700개) 간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독립적인 헌법 및 입법부(의회)·행정부·사법부를 갖고 있는데, 연방과 주의 관계는 미국과 흡사하다. 성문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방정부는 외교 및 통상, 국방, 이민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 소관이 아닌 업무를 맡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분야에서 이들 두 정부 간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²⁾. 동일한 문제에 대해 연방과 주의 법률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이 우선한다. 소규모 지역사회 서비스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의해 설립된다. 지방정부에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있으나 사법부가 없으며 주정부에 의해 권한이 규정지어진다.

2) 연방정부는 외교·통상무역·국방·징세(관세·소득세·상품 및 서비스세)·우정(우편·전신·전화)·통신·금융·TV·라디오·고용·소득 및 법인세·이민 및 세관·여권·연금·항공 등의 권한을 보유하며, 주정부와 공동으로 과세·이민·검역·국세조사·통계·저작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각 주정부는 보건·교육·도로·철도·재판·경찰·농정·임정(林政)·자동차등록·산림·소방·야생동물 보호 등을 관할한다. 지방정부는 도시계획·도로교통·쓰레기수거·하수도·운동 시설·도서관·지역관광 등을 담당한다.

자유민주주의 전통에 기초한 호주의 정부 체제는 제도 및 관습에 있어 영국과 북미의 모델을 반영하면서도 호주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영국과 달리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법부(의회)·행정부·사법부로 대별되는 3부 조직의 형태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의회

입법권이 부여된 연방의회는 상·하 양원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상원은 6개 주에 12명씩, 2개 준주에 2명씩 대표의석을 할당하는데, 각 주를 선거구로 놓고 경쟁하는 대선거구제 방식을 취하며 정당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2008년 현재 총 의석수는 상원 76명이며 임기는 주의 경우 6년(3년마다 반수를 새로 선출), 준주의 경우에는 3년이다. 상원은 각종 법률안 등을 재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원은 각 지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1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하원은 상원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며 하원의 다수당 지도자가 연방총리가 되어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한다.

호주의 주요 정당으로는 1909년 창당된 노동당을 비롯하여 국민당, 자유당, 민주당, 녹색당 등이 있으며 진보를 대변하는 노동당과 보수정당인 자유당이 교대로 집권하면서 전형적인 양당정치 체제를 정착시켜 왔다. 2007년 11월 24일 실시된 총선을 통해 11년 반 넘게 지속된 존 하워드(John Howard)의 자유·국민 보수연립이 막을 내리며 케빈 러드(Kevin Rudd)가 이끄는 노동당이 집권하였고, 2012년 현재 줄리아 길라드(Julia E. Gillard)가 총리이다.

나. 행정부

법적인 최고행정기관은 총독이 주재하는 행정위원회(Executive Council)로 되어 있으나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의 전통에 따라 관례적으로 행정 권한은 내각이 행사한다. 내각은 하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일정당 또는 정당

연합에 의해 구성되는데, 각내 장관(Cabinet Minister)과 각외 장관(Outer Minister)의 2중 구조를 이루며 하원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다. 장관은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의회의 신임을 요한다. 각 부처의 차관에는 일반적으로 전문 관료를 임명한다.

다. 사법부

연방 차원의 사법기관으로는 대법원장과 6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대법원 및 연방법원과 가정법원이 있다. 대법원은 ① 조약, 주 간의 소송, 연방에 대한 헌법 소송, ② 연방법원 또는 주 최고법원의 상고심, ③ 연방선거 관련 소송 등을 다룬다. 각 주에 설치된 연방법원은 파산, 회사법, 조세 및 무역법 등에 관한 소송을 취급하며, 가정법원은 가사 문제에 대한 자문 또는 중재를 제공하거나 이혼, 가족양육 등에 대한 소송을 관할한다.

독립된 사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각 주는 통상 민사 및 형사 사건을 다루는 주 최고법원 및 중급법원 외에도 교통위반, 경범죄 등을 관할하는 즉결재판법원과 경미한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소액청구법원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연방법과 관련된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소와 원주민소유권법에 따라 원주민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전담 처리하는 원주민소유권재판소가 있다.

2. 호주의 사회 환경

호주는 튼튼한 경제적 토대 위에 문화적인 다양성이 인정되는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고 있다. 호주의 국토면적은 세계 6위이나 전체 인구가 2천만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해 인구밀도는 3명/km²도 채 안 된다. 이처럼 광활한 영토에 비해 인구가 적은 데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있다.

호주는 인구분포 측면에서 볼 때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으며 해안가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호주인 가운데 80% 이상이 해안가에서 100k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으며 특히 애들레이드부터 케언스까지 이어지는 남동

부 해안가에 위치한 여러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I-1〉에서 보듯이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퀸즐랜드의 3개 주에 전체 인구의 77.4%가 몰려 경제활동 또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총 GDP의 74.1%를 이들 3개 주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I-1〉 지역별 GDP 및 인구 비중(2010/11년)

(단위: %)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퀸즐랜드	남부 호주	서호주	태즈 메이니아	노던 테리토리	수도 특별구
GDP 비중	31.8	23.2	19.1	6.5	14.2	1.8	1.2	2.2
	25.9							
인구 비중	32.3	24.9	20.3	7.3	10.4	2.3	1.0	1.6
	22.6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Economic Indicators*, April 2012.

각 지역별 면적 및 그 지역과 주도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정리해 보면 〈표 1-I-2〉와 같다. 1911년에 호주의 수도로 지정된 캔버라가 있는 수도특별구는 주와 준주를 통틀어 면적은 가장 작지만 의회와 대법원을 비롯하여 중요한 국가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는 호주에서 제일 오래되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서 국가 전체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대도시인 시드니를 주도로 삼고 있다. 빅토리아는 면적으로 보아 호주 본토에서 가장 작은 주이지만 인구가 많기로는 두 번째이고 인구밀도는 가장 높다. 멜번은 빅토리아의 주도로써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영토 순으로 2위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자랑하는 퀸즐랜드는 대보초(Great Barrier Reef)라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로도 유명하다. 해마다 500건 이상의 축제가 열리는 남부 호주는 주요 와인 산지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서호주는 면적은 제일 넓은 반면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구의 4분의 3 가량이 주도인 퍼스에 밀집되어 있다. 배스해협에 의해서 본토와 분리된 태즈메이니아는 6개 주 가운데 가장 작으나 유명 관광지가 많아 본토에 거주하는 호주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던 테리토리의 경우 면적은 프랑스의 2배에 달하나 인구는 약 21만명에

불과하다. 다윈을 주도로 삼고 있으나 주요 도시는 앨리스 스프링스라 할 수 있으며 울루루-카타 추타 및 카카두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호주는 애시모어 및 카르티에 제도,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제도, 산호해 제도, 허드 및 맥도날드 제도, 노퍽 섬 등을 속령으로 통치하고 있으며 남극 대륙의 약 42%에 달하는 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에 대해서도 조약상 통치 의무를 지고 있다.

〈표 1-1-2〉 지역별 면적 및 인구 수(2010년 6월)

(단위: km², 백만명)

	면적	거주인구 추계	주도	거주인구 추계
뉴 사우스 웨일즈	800,642	7.22	시드니	4.58
빅토리아	227,416	5.54	멜번	4.08
퀸즐랜드	1,730,648	4.51	브리즈번	2.04
남부 호주	983,482	1.64	애들레이드	1.20
서호주	2,529,875	2.29	퍼스	1.70
태즈메이니아	68,401	0.51	호바트	0.21
노던 테리토리	1,349,129	0.23	다윈	0.13
수도특별구	2,358	0.36	캔버라	0.36
호주	7,692,024	22.30		

주: 총 인구 수치에는 호주에 의해 통치되는 기타 준주들이 포함됨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 September 2011.

호주는 토착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원주민 그리고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로 구성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 정부의 이민프로그램에 따라 660만명이 넘는 이주민(69만명 이상의 난민 포함)이 호주에 정착하였으며, 6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총 인구는 700만명에서 2,100만명으로 3배 가량 크게 늘어났다. 한편 인구 4명당 약 1명꼴로 해외에서 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 가운데 영국 및 아일랜드 출신이 45%에 달했으나 2006/07년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중동에 위치한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이 늘어나면서 이 비율은 17%로 떨어졌다.

호주의 인구증가율은 2009/10년 현재 1.6%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09년 최고

점인 2.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9/10년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86명으로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높은 편이며 표준화 사망률은 1천명당 5.68명,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 1천명당 3.96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많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호주도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라 일컬어지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호주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거주자의 중위연령은 1990/91년 32.4세에서 2010/11년 37.1세로 높아졌다. 연령집단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14세 이하 연령집단의 비중은 2.9%포인트 줄어든 반면에 15~64세 연령집단은 0.7%포인트, 65세 이상 연령집단은 2.2%포인트만큼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 최근 경제상황

2011년 기준 호주는 세계 전체 경제에서 GDP 규모 14번째, 1인당 GDP 규모는 8번째로 부유한 국가에 속하며, 오래전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 국가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편이다.

가. 경제 규모 및 소득수준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1990년 이후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1-I-3>과 같다.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호주는 1992년 이래 17년째 흔들림 없이 연평균 3.3%에 달하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어 오고 있다. 2010/11년에는 2.0% 성장하였는데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 1.6%를 웃도는 수치이다³⁾.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장기간의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호주의 국내총생산(GDP)은 2010/11년 1조 3,190억호주달러로 규모 면에서 볼 때 1990/91년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2009/1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질 GDP). 이와 같이

3) 호주의 회계연도는 당년 7월 1일~익년 6월 30일로 호주 통계청은 이를 기준으로 제반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호주는 IT 부문-주택 부문-자원 부문을 타고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20년 가까이 경제호황을 누린 결과 실업률이 2007/08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4.1%를 기록하였으며 2010/11년에는 5.0%로 완전고용 수준(5% 이하)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지난 10여년간 63%에 머물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0/11년 65.7%로 올라섰다.

〈표 1-1-3〉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호주달러, %, 미달러)

	실질 GDP		실질 GDI		실업률	경제 활동 참가율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환율 (대호주달러, 연평균)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2/93	718,728	4.1	650,659	3.4	10.7	62.63	1.86	0.7030
1993/94	747,829	4.0	673,476	3.5	10.2	62.77	1.74	0.6919
1994/95	777,693	4.0	704,524	4.6	8.7	63.33	4.50	0.7427
1995/96	808,750	4.0	737,065	4.6	8.1	63.65	3.10	0.7593
1996/97	840,296	3.9	770,405	4.5	8.3	63.46	0.33	0.7828
1997/98	878,313	4.5	804,415	4.4	8.0	63.12	0.67	0.6808
1998/99	921,827	5.0	836,435	4.0	7.4	63.09	1.07	0.6276
1999/2000	957,282	3.8	875,222	4.6	6.6	63.12	3.19	0.6290
2000/01	975,464	1.9	894,977	2.3	6.4	63.37	6.02	0.5379
2001/02	1,013,636	3.9	932,958	4.2	6.7	63.35	2.84	0.5239
2002/03	1,045,579	3.2	965,158	3.5	6.1	63.60	2.69	0.5848
2003/04	1,088,945	4.1	1,018,837	5.6	5.7	63.40	2.48	0.7137
2004/05	1,123,646	3.2	1,068,459	4.9	5.2	63.94	2.49	0.7454
2005/06	1,157,783	3.0	1,122,294	5.0	5.0	64.57	3.98	0.7474
2006/07	1,201,563	3.8	1,181,371	5.3	4.5	65.04	2.07	0.7863
2007/08	1,246,899	3.8	1,239,490	4.9	4.1	65.47	4.51	0.8968
2008/09	1,263,934	1.4	1,275,871	2.9	4.7	65.56	1.46	0.7456
2009/10	1,293,380	2.3	1,293,380	1.4	5.7	65.34	3.05	0.8830
2010/11	1,318,960	2.0	1,371,408	6.0	5.0	65.68	3.60	0.9891

주: 1. 2009/10년 호주달러 기준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Economic Indicators*, April 2012,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Consumer Price Index, Australia*, Dec 2011,
Reserve Bank of Australia, *Exchange Rate Data*, <<http://www.rba.gov.au/statistics/tables/xls/fl1hist-1969~2009.xls>>

물가상승률은 2010/11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3~4%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아직까지 연간 기준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에는 각 분기별로 나누어 전년 동기와 비교한 물가상승률이 2사분기 4.5%, 3사분기 5.0%로 치솟으면서 분기 기준으로 7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광범위하게 가중되기도 하였으나, 2009년 4사분기부터 안정화에 접어들어 2011년 4사분기에는 3.1%로 내려갔다.

호주의 화폐 단위는 호주달러(Australian dollar)로 2010/11년 미달러/호주달러 환율은 연평균 0.9891미달러를 기록하였다⁴⁾. 2001/02년 0.5239미달러까지 절하된 바 있으나 경제호황 및 고금리정책에 힘입어 꾸준한 통화 강세를 유지하면서 이후 10년에 걸쳐 두 배 가량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수입구매력은 높아진 반면 수출품 제조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비교를 위해 더 널리 통용되는 역년(calandar year) 기준의 GDP 통계를 정리하면 <표 1-I-4>와 같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집계한 2011년 GDP는 1만 4,880억 미달러로서 세계 14위를 차지하였다. 경제가 호조세를 보인 데다 호주 통화의 강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미달러로 환산한 GDP는 전년도 대비 19.51%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다. 경상가격 기준 1인당 GDP도 6만 5,477미달러로 전년도에 비하여 18%가 늘어났고 순위는 전년도와 비슷한 8위를 기록하였다.

각국 화폐의 구매력을 고려한 화폐변환율을 뜻하는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보면, 2011년 호주의 순위는 18위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낮다.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전 세계의 총 GDP 중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몇 년째 변화가 없다.

4)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1983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 정부가 환율 결정 및 외환수급 조절 등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했었으나 1983년 12월 변동환율제도를 도입, 시행한 이후에는 환율이 시장수급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다.

〈표 1-1-4〉 GDP 변화추이

(단위: 십억달러, 달러, %)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DP(불변가격) ¹⁾	791	967	1,064	1,107	1,142	1,173	1,227	1,258	1,275	1,308	1,335	1,375
상승률	3.2	3.1	3.1	4.1	3.1	2.7	4.7	2.5	1.4	2.5	2.0	3.0
GDP(경상가격) ¹⁾	511	686	827	889	958	1,032	1,127	1,233	1,253	1,354	1,441	1,499
GDP(경상가격/USD)	379	399	539	655	732	778	945	1,054	991	1,245	1,488	1,586
GDP 디플레이터(인덱스)	64.6	70.9	77.7	80.3	83.9	88.0	91.8	98.0	98.2	103.5	108.0	109.0
1인당 GDP(불변가격)	43,491	50,212	53,192	54,707	55,608	56,198	57,748	57,919	57,652	58,284	58,736	59,770
1인당 GDP(경상가격)	28,111	35,599	41,325	43,907	46,652	49,473	53,032	56,742	56,636	60,331	63,433	65,177
1인당 GDP(경상가격/USD)	20,844	20,731	26,939	32,341	35,635	37,270	44,470	48,530	44,816	55,474	65,477	68,916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GDP(PPP GDP, 경상가격)	395	525	612	650	690	731	788	825	846	877	914	954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1인당 GDP(PPP PC, 경상가격)	21,708	27,249	30,627	32,130	33,602	35,056	37,068	38,003	38,226	39,090	40,234	41,467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전 세계 GDP 대비 비중(PPP SH, 경상가격)	1.2	1.2	1.3	1.2	1.2	1.2	1.2	1.2	1.2	1.2	1.2	1.2

주: 1) 1999년 호주달러 기준

1. 각 GDP 자료는 실질GDP를 의미
2. 음영 처리된 칸은 IMF 추산임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2.

나. 산업구조

호주는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원수출국으로서 농업, 광업 등의 1차산업이 주요한 외화획득 수단이다. 전반적으로 낮은 인구밀도, 고급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은 취약한 편이나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 금속제품, 식료품 등의 부문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표 1-1-5〉를 보면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가 갖는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점차 심화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3차산업의 비중은 1993/94년 GDP 대비 70%를 넘어선 후 매년 꾸준히 증가

하여 4분의 3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일본이 약 70%, 미국이 약 80%이다.

〈표 1-1-5〉 산업별 총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¹⁾	세금공제
1991/92	2.46	7.74	11.97	70.20	7.65
1992/93	2.48	7.51	11.75	69.48	7.57
1993/94	2.49	7.34	11.79	70.18	7.61
1994/95	2.04	7.57	11.58	71.41	7.98
1995/96	2.38	7.94	11.39	70.90	7.84
1996/97	2.48	7.74	11.13	71.23	7.73
1997/98	2.37	7.66	10.95	71.30	7.96
1998/99	2.48	7.25	10.63	71.81	7.91
1999/2000	2.53	7.32	10.32	72.11	7.84
2000/01	2.58	7.77	10.34	72.14	7.52
2001/02	2.55	7.50	10.16	72.46	7.56
2002/03	1.95	7.32	10.25	73.18	7.73
2003/04	2.35	6.82	9.95	73.24	7.67
2004/05	2.36	6.96	9.53	73.62	7.63
2005/06	2.36	6.88	9.21	74.13	7.55
2006/07	1.93	7.19	9.05	74.52	7.48
2007/08	1.98	7.07	9.07	74.67	7.35
2008/09	2.30	7.16	8.42	75.04	7.19
2009/10	2.22	7.43	8.33	75.03	6.98
2010/11	2.34	7.39	8.16	75.57	6.91

주: 1) 서비스업을 세분하여 각각의 GDP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0/11년 전기/가스/수도공급 2.2%, 건설 7.7%, 도매 4.2%, 소매 4.4%, 숙박/음식점 2.3%, 운수/창고 5.1%, 미디어/통신서비스 3.2%, 금융/보험 9.7%, 부동산임대업 2.0%, 전문/과학기술 6.6%, 행정지원 2.4%, 공공행정/치안 4.9%, 교육 4.5%, 보건/복지 5.8%, 문화/예술 0.8%, 개인부동산 8.0%, 기타서비스 1.7%로 나타난다.

1. 통계적 오류: 표준편차 0.08(GDP 대비 %)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December 2011.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호주에서는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낮다. 농림수산업과 광업의 비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제조업의 비중이 1991/92년의 12%에서 2010/11년의 8.2%로 빠르게 줄어들면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출입 현황

호주는 200개가 넘는 국가에 고품질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함과 동시에 세계각지로부터 생산품을 수입하는 쌍방향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무역은 호주 경제의 번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과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 유연하면서도 잘 숙련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업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2010/11년 호주의 쌍방향 무역 규모는 역대 최대인 5,740억호주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2,975억호주달러, 수입은 7.0% 증가한 2,765억호주달러로 209억호주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였다. 1차상품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형태의 교역구조를 갖고 있는 호주는 <표 1-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91년 이후로 단 4차례의 소규모 흑자를 달성했을 뿐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이번에 역대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1차상품 외 생산품(non-rural goods) 수출이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1차상품이 1990/91년 13억호주달러에서 305억호주달러로 2.3배 늘어난 데 비해 이것은 동기간 353억호주달러에서 2,020억호주달러로 5배 가량 늘어나 2010/11년 전체 수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표 1-1-6〉 수출입 실적

(단위: 십억호주달러, %)

	수출					수입				무역 수지 (금액)
	1차(rural) 생산품	1차 외 생산품	서비스	소계	증가율	상품	서비스	소계	증가율	
1977/78	4.8	7.3	2.1	14.3	6.1	11.2	4.1	15.3	8.8	-1.05
1988/89	15.1	26.0	11.4	55.7	7.5	47.2	15.4	62.6	15.8	-6.91
1993/94	17.1	41.7	19.3	83.8	7.6	64.8	21.5	86.3	8.5	-2.51
1994/95	17.3	44.8	21.4	88.6	5.7	75.2	23.1	98.4	13.9	-9.78
1995/96	19.6	50.7	23.6	99.9	12.8	77.9	24.3	102.2	3.9	-2.34
1996/97	21.0	52.9	25.4	106.4	6.6	79.4	25.3	104.7	2.5	1.70
1997/98	22.1	59.0	26.7	115.3	8.3	92.0	27.9	120.0	14.5	-4.65
1998/99	21.8	57.0	28.2	113.8	-1.3	97.9	29.9	127.9	6.6	-14.02
1999/2000	23.6	67.2	30.7	128.4	12.8	110.3	31.3	141.5	10.7	-13.13
2000/01	29.1	84.7	35.8	156.0	21.5	120.4	34.3	154.7	9.3	1.34
2001/02	30.1	84.1	34.7	155.8	-0.1	121.7	33.7	155.4	0.5	0.38
2002/03	25.5	82.5	35.6	151.5	-2.7	134.2	34.0	168.2	8.2	-16.69
2003/04	24.5	77.7	37.1	146.5	-3.3	132.9	35.9	168.7	0.3	-22.25
2004/05	25.6	95.6	39.0	166.8	13.9	150.7	39.5	190.1	12.7	-23.34
2005/06	25.3	119.6	41.9	195.9	17.5	169.4	41.3	210.6	10.8	-14.69
2006/07	25.1	133.6	47.2	216.8	10.6	183.6	45.1	228.7	8.6	-11.91
2007/08	25.5	144.9	50.9	233.8	7.8	205.1	53.0	258.2	12.9	-24.35
2008/09	29.4	184.4	52.9	284.6	21.7	220.9	56.3	277.2	7.4	7.35
2009/10	25.6	161.6	52.0	253.8	-10.8	205.0	53.4	258.4	-6.8	-4.62
2010/11	30.5	202.0	50.5	297.5	17.2	219.2	57.3	276.5	7.0	20.96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Economic Indicators*, April 2012.

2010/11년 호주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뉴질랜드 등으로 상품 수출입 실적 기준으로 나라별 순위는 〈표 1-I-7〉과 같다. 중국으로 649억호주달러를 수출하여 총수출액 중 26.4%를 차지하였으며, 일본(19.1%)과 한국(9.2%) 등이 주요 수출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이 411억호주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9.2%를 차지하였고 미국(10.8%)과 일본(7.8%)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였다.

〈표 1-I-7〉 주요국별 상품 수출입 실적(2010/11년)

(단위: 백만호주달러, %)

수출				수입			
상대국가	금액	총 수출액 비중	전년도 대비 증감률	상대국가	금액	총 수입액 비중	전년도 대비 증감률
중국	64,856	26.4	39.4	중국	41,109	19.2	13.0
일본	46,967	19.1	26.7	미국	23,226	10.8	6.3
한국	22,556	9.2	36.8	일본	16,693	7.8	-6.1
인도	15,761	6.4	-2.6	싱가포르	11,408	5.3	4.7
대만	9,109	3.7	33.0	독일	10,247	4.8	-4.4
미국	9,005	3.7	-5.7	태국	9,118	4.3	-26.7
뉴질랜드	7,691	3.1	-4.2	말레이시아	8,814	4.1	3.6
태국	6,952	2.8	1.5	뉴질랜드	7,364	3.4	5.1
영국	6,604	2.7	-8.4	한국	6,985	3.3	-0.9
싱가포르	5,464	2.2	8.3	영국	5,985	2.8	3.9
합계	245,274	100.0	-	합계	214,080	100.0	-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February 2012.

〈표 1-I-8〉은 2005/06년 서비스 수출입 실적에 따라 각국의 순위를 산정한 것이다.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미국과 영국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서비스 수출에서 7위를 차지한 데 반해 수입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상품 수출입의 경우와 달리 서비스 수출입에서는 홍콩이 새로 순위에 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서비스 수출은 6위, 수입은 5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표 1-I-7〉과 〈표 1-I-8〉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친디아(chindia)로 일컬어지는 중국 및 인도 경제가 최근에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호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가입국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가 호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차 커지는 추세라는 점도 이들 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1-1-8〉 주요국별 서비스 수출입 실적(2005/06년)

(단위: 백만호주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총 수출액 비중	연평균 증감률 ¹⁾		금액	총 수입액 비중	연평균 증감률 ¹⁾
미국	5,286	12.6	-3.1	미국	7,071	17.2	0.9
영국	4,356	10.4	2.2	영국	4,004	9.7	0.3
일본	3,184	7.6	-3.8	싱가포르	3,942	9.6	12.1
중국	3,169	7.6	25.2	일본	2,140	5.2	-0.3
뉴질랜드	3,006	7.2	5.9	뉴질랜드	2,111	5.1	2.5
싱가포르	2,684	6.4	4.1	홍콩	1,618	3.9	1.4
홍콩	1,574	3.8	3.5	독일	1,282	3.1	2.1
한국	1,451	3.5	9.0	중국	1,122	2.7	8.5
인도	1,401	3.3	21.8	태국	1,055	2.6	8.6
말레이시아	1,201	2.9	5.9	스위스	834	2.0	-2.9

주: 1) 2000/01년부터 2005/06년까지 5년 동안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Year Book Australia*, February 2008, 재
인용

라. 투자 현황

2011년 12월말 기준 호주의 외국인투자 저장(stock)은 2조 669억호주달러, 해외 투자는 1조 2,122억호주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해외투자 대비 2배 이상에 이르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원개발 등에 활용하는 한편 큰 폭의 무역 수지 적자에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자본조달은 호주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호주 정부는 경제활동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유발하는 한편 신기술, 경영기술 및 해외시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외투기업이 자본조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으며 별다른 외환규제가 없다는 점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호주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소규모 투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규모가 큰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 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승인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은행, 민간항공, 미디어, 통신 등 특정 산업 부문의 경우에는 아직 규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타 외자 가이드라인이 지정된 중요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따르면 외국인 1인의 소유 지분이 15% 이상 또는 다수의 외국인의 소유 지분 합계가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⁶⁾. 외국인투자심의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는 관련 당사자와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규모가 크거나 혹은 민감한 외국인투자 계획이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표 1-I-9〉에 의하면 1990/91년 이후 외국인투자 총액은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11년에는 5배 이상 급증한 2조 400억호주달러를 기록하였다. 투자유형별로 나눠 보면 포트폴리오 투자가 1조 1,628억호주달러로 총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08/09년까지 매우 빠르게 증가했던 파생금융상품의 규모가 다시 감소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직접투자는 1990/91년 1,031억호주달러에서 2010/11년 5,148억호주달러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199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9/10년과 2010/11년에는 각각 전년도에 비해 약 457억호주달러, 228억호주달러씩 증가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 총자산 1억호주달러 초과와 기존 호주기업 인수, 1천만호주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 미디어에 5% 이상 포트폴리오 투자 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비포트폴리오 투자, 외국 정부 또는 소속 기관에 의한 직접투자 등의 제안도 FIRB에 신고가 필요하다.

〈표 1-1-9〉 외국인투자 실적

(단위: 백만호주달러)

연도	총계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1988/89	252,518	90,575	114,447	0	47,496
1989/90	284,539	102,116	131,042	0	51,381
1990/91	304,439	103,100	145,526	0	55,813
1991/92	332,743	109,848	161,450	0	61,445
1992/93	367,441	122,816	180,614	0	64,010
1993/94	406,175	128,953	202,611	9,607	65,004
1994/95	441,787	138,268	231,830	9,519	62,170
1995/96	470,413	147,473	255,229	9,551	58,160
1996/97	521,835	158,611	289,462	10,221	63,541
1997/98	598,574	171,119	332,137	15,040	80,278
1998/99	649,187	185,711	348,241	17,826	97,408
1999/2000	757,486	206,574	419,967	21,441	109,504
2000/01	856,521	231,509	472,730	23,693	128,589
2001/02	886,768	240,722	475,169	32,304	138,573
2002/03	949,122	269,980	481,624	45,495	152,022
2003/04	1,095,712	299,956	609,832	37,828	148,095
2004/05	1,162,686	314,722	654,220	40,632	153,112
2005/06	1,385,309	343,427	826,148	37,840	177,893
2006/07	1,663,001	400,662	1,001,863	66,623	193,852
2007/08	1,740,844	439,514	972,558	104,713	224,058
2008/09	1,792,801	446,298	966,449	101,026	279,028
2009/10	1,975,163	491,988	1,119,958	98,690	264,526
2010/11	2,040,135	514,825	1,162,826	88,454	274,029

주: 2010년 6월 실질가격 기준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ustralia, Dec 2011(cat. no. 5302.0).

한편 해외투자 총액은 2010/11년에 1만 2,415억호주달러로 집계되었다. 투자유형 별로는 3,881억호주달러의 직접 투자가 31.3%, 4,806억호주달러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33.4%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파생금융상품이나 준비자산(Reserve assets) 등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추이를 보면

1990/91년의 438억호주달러에서 2010/11년에는 3,880억호주달러로 20년 동안 8.6배가 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부와 2005~2007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과 비교해 보면,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더 빨라서 1990/91년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의 42% 수준이었는데 2010/11년에는 75% 수준이 되었다.

〈표 1-1-10〉 해외투자 실적

(단위: 백만호주달러)

연도	총계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준비자산
1988/89	102,532	44,591	19,141	0	18,390	20,410
1989/90	111,704	47,945	17,986	0	23,903	21,871
1990/91	113,163	43,823	22,751	0	22,542	24,047
1991/92	126,987	50,309	31,957	0	22,481	22,240
1992/93	147,223	62,773	38,081	0	25,546	20,823
1993/94	170,947	68,081	41,491	10,682	30,033	20,660
1994/95	187,395	80,695	44,915	11,619	29,982	20,184
1995/96	196,505	81,975	49,772	10,179	35,520	19,060
1996/97	233,206	97,627	61,377	9,265	42,147	22,791
1997/98	303,990	135,181	72,169	14,357	58,023	24,260
1998/99	330,120	141,777	87,426	15,529	61,433	23,954
1999/2000	431,352	194,408	126,944	18,673	63,380	27,948
2000/01	493,775	208,851	149,213	24,329	73,431	37,951
2001/02	524,512	215,718	161,394	30,647	79,318	37,435
2002/03	537,242	217,218	161,049	41,158	77,058	40,760
2003/04	648,424	262,970	199,647	42,469	92,996	50,342
2004/05	665,169	243,690	231,213	36,904	97,192	56,170
2005/06	856,627	321,056	311,091	42,543	118,122	63,815
2006/07	1,049,815	374,270	398,884	55,567	141,411	79,682
2007/08	1,083,291	372,818	409,094	99,370	166,152	35,856
2008/09	1,089,230	356,784	361,762	101,869	216,504	52,311
2009/10	1,197,299	379,549	448,623	98,256	227,134	43,737
2010/11	1,241,481	388,056	480,641	90,082	241,572	41,130

주: 2010년 6월 실질가격 기준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Australia, Dec 2011(cat. no. 5302.0).

〈표 1-I-11〉은 우리나라의 대(對)호주 직접투자 실적을 보여 주는데,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연간 5억 6천만미달러의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고금액 누계 기준으로 광업 부문의 비중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광산 등 자원개발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종합상사의 현지법인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1년 투자실적이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표 1- I -11〉 한국의 대(對)호주 직접투자 실적

(단위: 건, 천미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8	45	14	136,150	134	108,916
1999	31	16	53,690	109	59,033
2000	42	24	123,078	89	58,283
2001	29	18	11,572	81	10,943
2002	29	13	54,910	63	61,738
2003	44	17	186,775	58	49,989
2004	41	24	79,738	84	54,027
2005	72	43	132,558	139	105,930
2006	78	47	177,897	158	132,882
2007	115	53	155,185	224	142,816
2008	135	52	652,716	288	579,754
2009	122	33	1,250,931	256	265,738
2010	105	36	764,231	202	563,413
2011	87	32	4,114,669	169	1,352,607
합계	975	422	7,894,100	2,054	3,546,06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정보, 해외투자통계(연도별), 2012. 4.

2011년 호주의 대(對)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 25건에 약 9억 889만미달러로 2010년의 7,008만미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2012년 현재 제조업이 전체 신고금액의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부동산, 물류 등이 주요 투자 분야인 서비스업은 3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12〉 호주의 대(對)한국 투자 추이

(단위: 건, 천미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신고건수	25	30	24	35	33	24	35
신고금액	51,149	925,052	46,981	68,549	224,515	7,008	90,889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1973년부터 2011년까지 누계 기준으로 볼 때 호주는 우리나라에 419건, 20억미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신고하였고, 이 중 서비스업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였다. 196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대(對)호주 투자가 1,481건에 101억 8천만미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호주 진출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II. 조세체계⁷⁾

1. 조세법체계

호주는 영연방 국가로서 판례법을 중시하는 영국의 법체계 전통을 따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삼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입법부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의 운영을 위한 해석을 사법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대륙법계 국가나 영미법계 국가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가 구속력이 있으며 판례가 모여서 그 자체로서 법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성문화된 법률이 점차 정교화되면서 성문법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법률체계와 구성, 판례의 역할 등에 있어서 대륙법계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존재하며 주정부의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헌법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게만 배타적인 입법권을 부여하였는데, 무역과 상업·조세·국방·외교·이민 및 시민권 분야가 그러한 분야들이다.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입법권을 가지는데, 연방정부의 법률과 주정부의 법률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에는 연방의 법률을 따른다⁸⁾.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조세정책에 대한 독점적인 입법권을 가진다. 주정부는 법에 의해 허용된 종류와 대상에 한하여 과세권을 가진다. 소득세의 경우 주정부도 과세할 수 있으나 연방정부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과세할 여지가 없고, 재화·수출·수입·연방정부 재산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주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주요 세목은 급여세(payroll tax)·재산세·금융거래세·자동차

7) 이하 호주의 조세체계 및 조세제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0년에 조사한 것이다.

8)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n Government, "About Australia: Legal System," <http://www.dfat.gov.au/facts/legal_system.html>

차등등록세·천연자원세·도박세·각종 인지세 등이다⁹⁾.

〈표 1-11-1〉 호주의 세법 체계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axation

Fringe Benefits Tax

Sales Tax

Superannuation

Goods and Services Tax

Excise (Including Customs, Working Pages and By-laws)

Archive

Other

Amending Legislation

ATO Interpretative Decisions

ATO Case Decision Summaries

Case Judgments

ATO Rulings and Determinations (Including GST Bulletins)

Bulletins (Excluding GST Bulletins)

Extrinsic Materials

Law Administration Practice Statements

Taxpayer Alerts

ATO Guidelines and Policy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ve Determinations and Declarations

Other Precedential ATOview Documents

Superannuation Circulars

자료: 호주 국세청, Legal Database, 〈<http://law.ato.gov.au/atolaw>〉

9) 정재호, (2000) 참조.

모든 세목에 고루 적용되는 사항들을 국세기본법에 정리하고, 각 세목별로 독특한 내용들을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목별 법률에 포괄하여 담으며, 필요한 경우 그 세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대륙법계 국가들과는 달리 호주는 판례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인지 세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매우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호주의 조세체계 특징은 <표 1-Ⅱ-1>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표는 호주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호주의 조세법과 시행령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를 정리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법과 시행령, 법률의 연도별 수정내용, 호주 국세청의 해석, 판례, 기타 안내자료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법과 시행령 항목은 조세법 일반(Taxation)과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판매세(Sales Tax), 연금(Superannuation),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물품세(Excise)로 구분하여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 있다.

그 중 조세법 일반의 범위에 포함된 세법 및 시행령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표 1-Ⅱ-2>이다. 법률안의 대부분은 소득세에 대한 것이며, 그 외에 석유자원렌트세, 이자에 대한 세금, 신탁에 대한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자 및 신탁에 대한 세금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호주 국세청의 분류에 의하면 호주의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급여세, 판매세, 연금, 부가가치세, 물품세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 표에 나타난 소득 관련 법률의 내용을 보면 일단 호주는 법안을 구성함에 있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소득세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 Income Tax Rates Act 1986
- Income Tax Act 1986

이 중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은 소득세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Income Tax Rates Act 1986에는 소득세 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Income Tax Act 1986에는 소득세 부과 징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즉,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부과징수 행정에 대해 각각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다. 소

득세법과 법인세법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과세표준의 결정 및 부과징수에 관한 대부분의 조항에서 개인과 법인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율에 있어서는 양자에 대한 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분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호주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소득세 중에서 개인소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인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1-2〉 Taxation의 세부항목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Income Tax (Transitional Provisions) Act 1997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Act 1953
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Income Tax Rates Act 1986
Income Tax Act 1986
Income Tax (Bearer Debentures) Act 1971
Income Tax (Deferred Interest Securities) (Tax File Number Whholding Tax) Act 1991
Income Tax (Diverted Income) Act 1981
Income Tax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Withholding Tax) Act 1974
Income Tax (Film Royalties) Act 1977
Income Tax (First Home Saver Accounts Misuse Tax) Act 2008
Income Tax (Former Complying Superannuation Funds) Act 1994
Income Tax (Former Non-Resident Superannuation Funds) Act 1994
Income Tax (Franking Deficit) Act 1987
Income Tax (Fund Contributions) Act 1989
Income Tax (Managed Investment Trust Transitional) Act 2008
Income Tax (Managed Investment Trust Withholding Tax) Act 2008
Income Tax (Mining Withholding Tax) Act 1979
Income Tax (Offshore Banking Units) (Withholding Tax Recoupment) Act 1988
Income Tax (Securities And Agreements) (Withholding Tax Recoupment) Act 1986
Income Tax (Withholding Tax Recoupment) Act 1971

〈표 1-11-2〉의 계속

Petroleum Resource Rent Tax (Interest On Underpayments) Act 1987
Petroleum Resource Rent Tax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7
Petroleum Resource Rent Tax Act 1987 No 143 Of 1987
Petroleum Resource Rent Tax Assessment Act 1987
Taxation (Interest On Non-Resident Trust Distributions) Act 1990
Taxation (Interest On Overpayments And Early Payments) Act 1983
Taxation (Interest On Underpayments) Act 1986
Taxation (Trustee Beneficiary Non-Disclosure Tax) Act (No. 1) 2007
Taxation (Trustee Beneficiary Non-Disclosure Tax) Act (No. 1) 2007 (144 Of 2007)
Taxation (Trustee Beneficiary Non-Disclosure Tax) Act (No. 2) 2007
Taxation (Trustee Beneficiary Non-Disclosure Tax) Act (No. 2) 2007 (145 Of 2007)
Taxation Laws (Clearing And Settlement Facility Support) Act 2004 (56 Of 2004)
Taxation Laws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6
Taxation (Unpaid Company Tax) Assessment Act 1982
Taxation (Unpaid Company Tax - Promoters) Act 1982
Taxation (Unpaid Company Tax - Vendors) Act 1982
Income Tax Regulations 1936
Income Tax (Excluded Stbs) Regulations
Income Tax Assessment Regulations 1997
Petroleum Resource Rent Tax Assessment Regulations 2005
Taxation Administration Regulations 1976
Taxation (Interest On Overpayments And Early Payments) Regulations

자료: 호주 국세청, Legal Database, 〈<http://law.at0.gov.au/atolaw>〉

이 세 개의 기본이 되는 소득세법은 10~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오랜 기간 동안 소득세법에 수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정된 내용들은 그때그때 별도의 법안으로서 만들어져 소득세법을 형성하는 집합에 포함된다. 물론 기본적인 법이 형성되기 이전의 법안들도 아직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Income Tax(Mining Withholding Tax) Act

는 1979년에 제정된 것인데 아직도 적용되고 있으며, Income Tax(First Home Saver Accounts Misuse Tax) Act는 2008년에 제정된 것이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전 법률과 충돌이 발생하거나 이전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전 법률을 폐기하기도 하지만 이전 법률과의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새 법이 추가되는 데 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소득세 과세의 주축을 이루는 기본적인 법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판례에 따르는 영미법계의 전통이 성문법을 만드는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소득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의 조세법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호주 조세 전문가가 아닌 한 세법과 시행령을 따라가면서 호주의 조세체계와 세목별 과세제도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호주 국세청과 재무부에서 호주의 조세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들을 잘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호주의 조세체계 및 세목별 조세제도를 파악하여 정리한다.

2. 조세체계

가. 조세의 개념 및 조세체계

최근에 호주 정부는 중요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호주의 번영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세 및 공적 이전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호주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관련된 모든 부처의 협력을 얻어 2008년 8월에 *Architecture of Australia's Tax and Transfer System*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자는 호주의 조세체계 및 공적 이전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현행 제도를 설명하고 분석하여 공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단초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자는 호주의 조세체계 및 공적 이전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이며 자세하고 분석적으로 정

리하였다. 이 책자를 시작으로 개편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12월에 개편방안을 담은 후속자료를 내놓았으며, 2009년 5월에는 은퇴소득제도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호주의 조세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호주의 조세체계를 설명하며 뒤의 개별 세목별 조세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 책과 호주의 세목별 조세제도를 설명하는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정리한다.

호주의 재무부는 *Architecture of Australia's Tax and Transfer System*에서 호주의 각급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 최소한 125개는 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중 99개 세목은 연방정부 세목이고, 25개는 주정부 세목이다. 주 산하의 지방정부 세목은 1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세목이 많은 것은 조세를 경제적인 개념에서 분류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헌법에 의하면 조세는 “정부 및 공공 목적으로 강제로 징수한 것으로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 벌금, 부당징수가 아닌 것”을 말한다(Commonwealth Constitution, s51(ii)). 즉, 조세는 정부가 강제로 징수한 것으로서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IMF나 UN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정의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더라도 특정세목에 대해 그것이 독립적인 세목인지 아니면 다른 세목에 포함되는 것인지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앞서 세법체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이 존재하는 한편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특정 소득에 대한 세금이 독립된 세목인지 아니면 소득세에 포함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는 비교적 명백하지만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 별도의 세목인지 아니면 소득세에 포함되는지 보는 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125개의 세목 수는 호주의 통계청(ABS) 분류에 따른 것이다. 세목 수는 많지만 대부분 작은 세목이어서 세수입 규모로 볼 때 큰 세목 10개가 세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세수규모에 따라 10개 세목의 순위를 매겨 보면, 개인소득세(personal tax)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법인세(company tax),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연료세(fuel excise), 급여세(payroll taxes), 등록인지세(conveyance stamp duties), 지방정부 레이트(local govern-

ment rates),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담배소비세(tobacco excise), 토지세(land taxes) 순이다¹⁰⁾. 기타 115개 세목에는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를 비롯하여 도박세(gambling taxes), 보험세(insurance taxes), 주류소비세(beer and spirits excise), 관세(customs duties),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es), 원유소비세(crude oil excise), 농업 부담금(agricultural levies) 등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세수규모가 비교적 큰 세목들을 중심으로 호주의 조세제도를 정리한다.

나. 주요 세목 개요

〈표 1-Ⅱ-3〉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주요 세목에 대해 세수규모와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먼저 개인소득세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보면 2006/07년도 세수입이 1,176억달러로 연방정부 세수입의 44.8%,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총 세수입의 36.7%를 차지하였다¹¹⁾. 개인소득세는 임금·급여·수당·이자·배당·임대료 등 과세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용주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기도 하고 개인이 연간세액을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납세자는 1,150만명이다. 개인소득세 세율은 5개의 소득구간에 대해 각각 0, 15, 30, 40, 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대학 학자금 용자 상환액과 고령자의료보험(medicare) 부과액이 부가되어 함께 징수된다는 특징이 있다.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자영업자 소득, 파트너십에 참여한 파트너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인의 수는 73만개이다. 2006/07년 법인세 수입은 585억달러로 연방세 수입의 22.2%를 차지하였다. 세율은 30%이며,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연결납세가 허용

10) 이 중 개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연료세·연금세·담배소비세는 연방정부에 의해 그리고 급여세·등록인지세·토지세는 주정부에 의해 징수되며, 지방정부 레이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유일한 세목이다.

11)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고에서 달리는 호주달러를 의미한다.

된다.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주주단계에서 배당액에 대해 기업이 납부한 세액(franked dividend)을 배당가산(그로스업, gross-up)하여 소득과 세액을 계산한 후 기업이 납부한 세액을 주주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상품의 수입에 대해 부과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200만명이다. 2006/07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412억달러로 연방 세수입의 15.6%를 차지하였다. 세율은 10% 단일세율이며 세수입은 전액 주정부에 교부된다. 모든 거래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며,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보건·교육·기초식품·구호물품 등에 대해서는 GST가 면제된다. 주택의 임대와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석유류와 담배, 주류에 대해 부과하는 물품세가 227억달러로 2006/07년 세수입의 8.7%를 차지하였다. 개인소득세와 원천징수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물품세가 연방정부의 5개 주요 세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세목의 세수입이 연방정부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3%이다. 물품세는 해당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데, 종량세로 부과되며 담배와 주류에 대한 세율은 2년에 한 번씩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여 개정된다. 석유 및 디젤에 대한 세율은 리터당 38.143센트인데, 이 세율은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다.

이들 주요 세목 외에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으로 연금에 대한 세금·관세·부가급여세·석유자원렌트세·와인균등세·농업세·고급자동차세 등이 있다. 연금에 대한 세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연금기금에 대한 기여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율은 15%이다. 기업이 종업원을 대신해 연금기금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연금기금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고용되지 않은 개인이 연금기금에 기여한 경우에 기여금을 자신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기여금에 대해서도 연금기금이 15%의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개인이 세후소득 중에서 일부를 연금에 기여하고, 그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연금에 대한 세금의 다른 한 부분은 연금기금의 실현된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세율은 15%이다.

〈표 1-11-3〉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조세

세목	2006/07 세수입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및 과세점	납세자 수 (근사치)
연방정부 조세				(단위: 백만달러, 명)
개인소득세, 기타 원천징 수세	117,614	임금, 급여, 수당, 이자, 배당 및 집세 를 포함한 개인의 과세소득	연간 세액에 대해 분납 방식으로 고용주는 개인이 납부	1,150만
법인세	58,538	법인의 과세소득	분기별로 법인이 ATO에 납부	730,000
부가가치세	41,208	상품 및 서비스의 과세 공급 그리고 대 다수 상품의 과세 수입(import)	등록된 실체가 ATO에 납부 국경에서 관세청이 수입업자로 부터 징수 또는 유예한 후 ATO에 납부	200만
물품세	22,734	연료 산출물, 술 및 담배	제조업자 또는 상품의 소유자가 ATO에 납부	400
연금세	7,879	노령연금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노령연 금기금의 소득	노령연금기금이 ATO에 납부	285,000
관세	5,644	섬유, 의류 및 신발,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수입 상품	국경에서 관세청이 징수	n. a.
부가급여세	3,754	고용의 대가로 종업원(또는 그들의 동 료)에게 제공되는 과세대상 급여	고용주가 ATO에 납부	69,000
석유자원렌트세	1,594	석유추출로부터 발생한 정상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	대부분의 역외 석유 프로젝트에서 석유추출 법인이 납부	42
와인균등	651	와인 및 와인 산출물, 사과술, 배술, 꿀, 술 및 사케(sake)	생산자 그리고/또는 도매업자가 ATO에 납부	1,900
농업세	608	다양한 농산물	중개인(도매업자, 대리인, 브로커, 가공업자, 수출업자 등) 그리고/또는 농산물 생산자가 Levies Revenue Service에 지불	9,100
고급승용차세	365	GST 포함 가격이 고급승용차 과세최 저한을 초과하는 차량	공급자가 ATO에 납부	
기타 조세	1,922	주로 기타 규제적인 세금(other regulatory taxes), 산업부과금 (industry levies) 및 면허수수료 (licence fees)로부터 발생된 세입으 로 구성		
총 연방정부 세입	262,511			

〈표 1-11-3〉의 계속

세목	2006/07 세수입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및 과세점	(단위: 백만달러, 명) 납세자 수 (근사치)
주정부 조세				
급여세	14,398	대다수 형태의 종업원 급여를 포함한 고용주의 지불급여 총액	월별 신고서에 의하여 고용주가 State Revenue Offices에 납부	n.a.
등록인지세	13,054	양도된 자산의 가치	인가된 법률 및 회계 기준, 금융기관 또는 직접 공탁(direct lodgement)을 통해 새로운 구매자가 State Revenue Offices에 납부	n.a.
자동차세	5,915	양도된 자동차의 가치 및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기타 수수료	자동차의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한 후 운전자 등록	n.a.
도박세	4,772	복권, 도박 기계, 카지노, 경주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도박으로부터 발생한 일반적이 '도박꾼 손실(player loss)'	도박 규정 관련 위원회에 지불하고 있는 비토리아 주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주에서는 인가를 받은 사림(licensees)이 (일반적으로 월별 신고서를 통해) State Revenue Offices에 납부	n.a.
토지세	4,358	일반적으로 주된 거주지 및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미개발 가치(unimproved value)	적정한 토지소유자가 State Revenue Offices에 의해 발행된 연차 결산 보고서(annual account)를 통해 납부	n.a.
보험세	3,714	보험료(insurance premiums) 및 보험 정책	일반적으로는 보험업자가 월별 신고서에 의해 State Revenue Offices에 납부 단, 비토리아 주의 보험회사는 부과금을 직접 대도시 및 지방 소방대(metropolitan and country fire brigades)에 납부	n.a.
기타 조세	2,700	일련의 기타 부과금 및 금융거래세 포함		
주정부 세입 총계	48,911			
지방정부 조세				
지방 레이트	9,388	자산의 가치, 레이트는 관할구역 및 토지 유형에 따라 변동. 몇몇 관할구역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기타 조세 역시 지방정부 세입에 포함	자산 소유자가 지방정부 당국에 의해 발행된 연차 레이트 고지서(annual rates notice)를 통해 납부	n.a.
총 지방정부 세입	9,388			
조세수입 총계	320,299			

주: 1. n.a.: 입수 불가능(not available)

2. 연방정부, 주 및 지방정부 과세 총액은 정부 간 조세(intergovernmental taxes)로 인해 각급 정부 총계의 합과 상이. 납세자 수의 출처는 재무부 산하 국제청 및 농림수산부로부터 획득한 정보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2008-09, 2009.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부가급여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을 말하는데, 고용주가 직접 세금을 납부한다. 대부분의 비현금급여가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인 45%와 고령자의료보험(메디케어)을 합하여 46.5%가 된다. OECD 회원국 중 개인소득세와 분리하여 별도의 부가급여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두 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호주이다. 부가급여는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세율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석유자원렌트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PRRT)는 연안해역을 넘어서는 호주 국경 내에서의 석유 및 가스 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발생 이익 중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율은 40%이다.

주류 중 와인에 대해서는 물품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와인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 WET)가 부과된다. WET는 와인제품, 사과·배·꿀·쌀로 만든 술, 기타 과실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생산자 또는 도매상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세율은 도매가의 29%이며, 주류에 대한 물품세와는 달리 알코올 도수에 따른 세율 차이가 없다.

농업세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도매인 또는 중개인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고급자동차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차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며, 상품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목 중에서 세수입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세와 등록인지세로 주정부의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9.4%와 26.7%이다. 급여세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종업원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모든 주가 예외 없이 급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가급여를 포함한 대부분의 급여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면세점이 높아 상당수의 기업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NSW(New South Wales)의 경우 90% 이상의 사업체가 급여세 면제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종교기관 등 특정 기관은 급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퀸즐랜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조세

조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등록인지세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인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최초의 주택구입자 및 기타 특정 그룹에 대한 조세지원이 있다.

그 외에 자동차세·도박세·토지세·보험세 등을 주정부가 부과하는데, 각 세목의 세수입이 주정부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보험세)~12.1(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양도가 발생하였을 때 양수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여객 수송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년 등록수수료(registration fee)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도박세는 복권·기계를 사용한 도박·카지노·경마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박에 대해 총 판매액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다. 세율은 주에 따라, 도박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도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노던 테리토리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주거주 주택을 제외한 미개발 토지 보유에 대해 토지세를 부과한다. 토지세는 대체로 누진세이다. 과세목적상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주에 따라 다른데, 특정 시점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역도 있고 지난 3년간 가치의 평균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역도 있다.

보험세는 보험료 및 보험증권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모든 주정부가 보험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퀸즐랜드주 7.5%에서 남부 호주(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11%까지 분포되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의 종류와 보험의 종류에 따른 세율은 주에 따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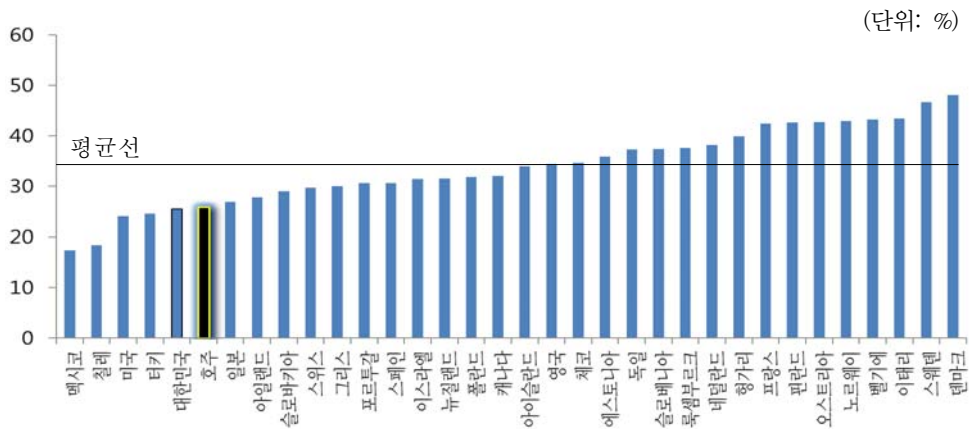
지방정부는 지방 레이트(municipal rates)라고 불리는 한 가지 세목의 세금만 부과하는데, 이 세목의 세수입이 국가의 총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불과하다. 지방 레이트는 재산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이다. 대부분의 토지가 과세대상이 되며,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지역에 따른 세율 격차도 상당히 크다. 지역에 따라서는 토지 외의 다른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보유한 자이다.

Ⅲ. 세수입 규모 및 구성

1. 조세부담률, 연방·주정부의 세수입 규모

호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조세부담률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속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를 모두 합하여 2009 회계연도에 징수한 세수입은 GDP의 25.9%로 OECD 회원국의 2009년 평균치 33.8%와 비교해 볼 때 7.9%p 낮다. 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이 낮은 국가부터 보면 멕시코, 칠레, 미국, 터키, 대한민국에 이어 6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조세부담률이 이와 같이 낮은 중요한 이유는, 사회보장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2개국만 사회보장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¹¹⁾.

[그림 1-Ⅲ-1] OECD 회원국의 세수입 GDP 대비 비율(2009년)¹⁾



주: 1) 세수입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수입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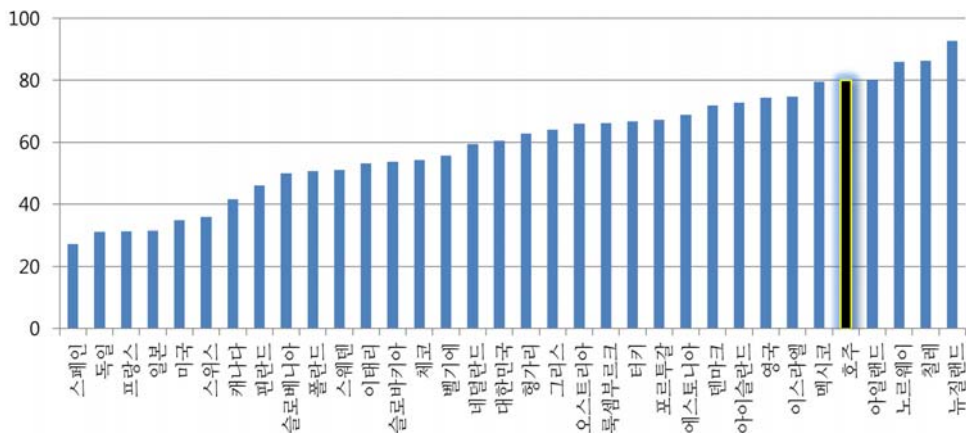
11) 여기서 조세부담률은 사회보장세(기여국)를 포함한 세수입의 GDP 대비 비중으로서 흔히 세수입/GDP와 구분하기 위하여 국민부담률이라고 표현한다.

호주의 조세수입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세수입으로 나눠 보면 2011년도 세수입을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80.4%, 주정부가 16.2%, 지방정부가 3.5%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연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조세에 대한 입법권한을 연방정부에 배타적으로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소득세가 연방정부에서 부과·징수되며, GST를 포함하여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세금도 대부분 연방정부에서 부과한다. 주정부의 세입 기반은 재산, 종업원 급여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사용에 대한 세금 일부로 구성된다. 지방정부의 유일한 세원은 재산과 세이다.

이와 같이 조세수입의 대부분이 연방정부에 귀속됨에 따라 호주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일반재원을 이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액 일정한 공식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된다.

[그림 1-III-2] 국가의 조세수입에서 중앙(연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2009년)¹⁾

(단위: %)



주: 1) 호주의 GST는 연방정부의 수입으로 계산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아래의 <표 1-Ⅲ-1>은 연방정부의 세수입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8/09년 연방정부는 소득세, GST, 연료·술·담배에 대한 조세, 관세 및 기타 간접세를 통해 2조 7,263억달러를 징수하였다. 동일 연도에 주정부는 재산·급여·자동차·도박·보험계약에 대한 조세를 포함한 그들 고유의 세목을 통해 5,063억달러를 징수하였다(지방정부 조세를 통해 조달된 658억달러 포함). 연방정부 세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2008/09년 21.7%로 2000/01년의 24.0%에 비해 2.3%p 하락하였다. 호주정부는 앞으로 이 비율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Ⅲ-1> 호주정부 일반정부 부문 발생주의 기준 조세수입, 세외수입 및 총수입

(단위: 백만호주달러, %)

	조세수입		세외수입		총수입	
	금액	GDP 대비 비중	금액	GDP 대비 비중	금액	GDP 대비 비중
1999~00	153,408	23.1	13,896	2.1	167,304	25.2
2000~01	175,881	24.8	10,228	1.4	186,110	26.3
2001~02	178,210	23.5	12,278	1.6	190,488	25.1
2002~03	195,203	24.3	11,720	1.5	206,923	25.7
2003~04	209,959	24.3	12,209	1.4	222,168	25.7
2004~05	229,943	24.8	12,564	1.4	242,507	26.2
2005~06	245,716	24.6	15,522	1.6	261,238	26.1
2006~07	262,511	24.1	15,900	1.5	278,411	25.5
2007~08	286,229	24.2	17,500	1.5	303,729	25.7
2008~09	278,653	22.1	20,280	1.6	298,933	23.7
2009~10(e)	269,529	20.8	24,686	1.9	294,215	22.7
2010~11(e)	302,456	21.5	19,365	1.4	321,822	22.9
2011~12(e)	336,416	22.6	19,981	1.3	356,397	24.0
2012~13(p)	361,911	23.1	20,009	1.3	381,920	24.3
2013~14(p)	386,397	23.3	20,811	1.3	407,208	24.6

주: 1. (e) 추정치, (p) 예측치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확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치들을 조정함(실질자료, CPI 사용)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2010~11*, 2011.

호주의 각급 정부별 조세수입은 <표 1-III-2>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2010/11년 호주의 총조세수입은 3,585억달러로 2009/10년 대비 7.6%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57.2%에 달하는 2,049억달러가 소득과세로부터 징수되었고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가 929억달러로 25.9%를 차지하였다.

주·지방정부를 제외한 연방정부 조세수입은 2009/10년 2,672억달러에서 2010/11년 2,881억달러로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11년 연방정부 세수입은 각급 정부로부터 징수된 총조세수입의 80.4%를 차지하였다.

2010/11년 주정부 조세수입은 2009/10년 545억달러에서 6.6%가 늘어난 58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11년 주정부 세수입에서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0%로 단일 세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으며, 종업원 급여에 대한 과세가 31.1%로서 그 뒤를 이었다. 주 및 준주 정부의 세입은 조세수입과 GST 수입의 지역별 배분액 및 그 외의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표 1-III-2〉 각급 정부별 조세수입

(단위: 백만호주달러)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연방										
소득과세	123,065	134,432	145,709	162,974	176,197	189,378	208,579	201,369	187,016	204,931
종업원 급여에 대한 과세	156	253	381	292	369	350	381	377	507	505
재산과세	12	13	13	14	14	15	15	16	12	13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	54,605	60,128	63,457	65,851	68,643	72,245	76,697	76,239	79,636	82,626
상품의 사용 및 활동의 성과에 대한 과세	-	-	-	-	-	-	-	-	-	-
합계	177,838	194,827	209,560	229,131	245,222	261,988	285,672	278,002	267,171	288,075
주 ¹⁾										
소득과세	-	-	-	-	-	-	-	-	-	-
종업원 급여에 대한 과세	9,672	10,158	10,838	12,003	13,096	14,363	16,026	16,926	16,796	18,086
재산과세	12,420	14,162	16,690	16,046	16,911	19,865	20,967	16,986	20,249	20,905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	6,557	6,989	7,293	7,865	8,166	8,517	9,162	9,602	9,721	10,251
상품의 사용 및 활동의 성과에 대한 과세	4,693	5,101	5,589	5,753	6,074	6,129	6,980	7,117	7,771	8,879
합계	33,341	36,410	40,410	41,667	44,248	48,874	53,134	50,631	54,536	58,121
지방										
소득과세	-	-	-	-	-	-	-	-	-	-
종업원 급여에 대한 과세	-	-	-	-	-	-	-	-	-	-
재산과세	6,750	7,217	7,664	8,175	8,718	9,395	10,121	10,873	11,582	12,381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	-	-	-	-	-	-	-	-	-	-
상품의 사용 및 활동의 성과에 대한 과세	-	-	-	-	-	-	-	-	-	-
합계	6,750	7,217	7,664	8,175	8,718	9,395	10,121	10,873	11,582	12,381
각급 정부 총계										
소득과세	123,065	134,432	145,709	162,974	176,197	189,378	208,579	201,369	187,016	204,931
종업원 급여에 대한 과세	9,807	10,390	11,200	12,270	13,438	14,676	16,366	17,269	17,268	18,560
재산과세	19,182	21,392	24,367	24,235	25,643	29,275	31,103	27,875	31,843	33,299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	61,162	67,117	70,750	73,716	76,809	80,762	85,859	85,841	89,357	92,877
상품의 사용 및 활동의 성과에 대한 과세	4,693	5,098	5,586	5,753	6,071	6,094	6,926	7,058	7,703	8,815
합계	217,909	238,431	257,612	278,948	298,156	320,185	348,832	339,413	333,188	358,483

주: 1) 노던 테리토리와 수도특별구 포함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axation Revenue 2010~11*, 2012.

〈표 1-Ⅲ-3〉은 1인당 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각급 정부별로 산정한 것이다. 호주 거주자들은 2010/11년에 1만 5,944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는 2009/10년 대비 6.0%가 증가한 금액이다. 2010/11년 연방정부의 1인당 세부담은 2009/10년의 1만 2,072달러와 비교하여 6.3%가 늘어난 1만 2,833달러였다. 주 및 준주 정부와 지방의회는 공동으로 재산세, 등록인지세, 도박세, 급여세 및 기타 세금 명목으로 2010/11년에 거주자 1인당 평균 3,136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2009/10년에 징수된 금액과 비교했을 때 5.1%가 증가한 수치이다. 8개의 주 및 준주 중에서 1인당 지방세 수입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수도 특별구로, 2010/11년에 3,437달러였으며, 가장 작은 지역은 태즈메이니아로, 2,252달러였다. 평균은 3,136달러로 최저치가 평균의 71.8%, 최고치는 109.6%였다.

〈표 1-Ⅲ-3〉 각급 정부별 1인당 세부담

(단위: 호주달러)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연방정부	11,936	12,551	13,435	12,793	12,072	12,833
주정부 및 지방정부	2,577	2,788	2,970	2,826	2,983	3,136
뉴사우스웨일즈	2,732	2,980	3,081	2,945	3,100	3,257
빅토리아	2,591	2,747	2,958	2,888	3,073	3,274
퀸즐랜드	2,272	2,529	2,760	2,582	2,672	2,810
남부호주	2,413	2,568	2,793	2,784	2,854	2,980
서호주	3,005	3,223	3,465	3,030	3,318	3,434
태즈메이니아	1,869	1,946	2,133	2,106	2,252	2,252
노던 테리토리	2,087	2,030	2,124	2,153	2,182	2,105
수도특별구	2,389	2,756	3,012	2,910	3,176	3,437
각급 정부 총계	14,494	15,319	16,383	15,596	15,031	15,944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Taxation Revenue 2010-11*(Cat. No. 5506.0),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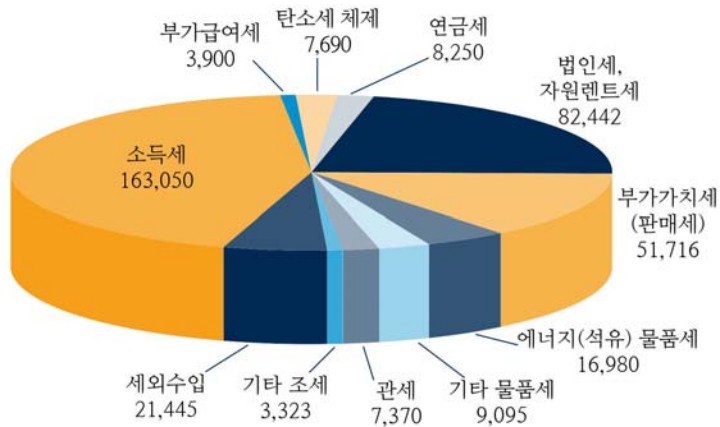
2. 세수입의 구성

[그림 1-Ⅲ-3]은 호주 연방정부의 조세수입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종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 2012/13년의 경우 총조세수입에서 각종 소득과세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인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이고, 연금세가 2%, 그리고 부가급여세가 1%를 차지하며, 법인세가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추정된다.

소비과세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14%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부가가치세가 주정부 세수입으로 간주되었으나 2008/09년부터는 국세로 분류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각종 물품세와 관세로 구성되는데, 이들 세목이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이다. 2012/13년부터 부과되는 탄소세가 눈에 띈다.

[그림 1-Ⅲ-3] 연방정부 세입의 구성(2012/13년)

(단위: 백만호주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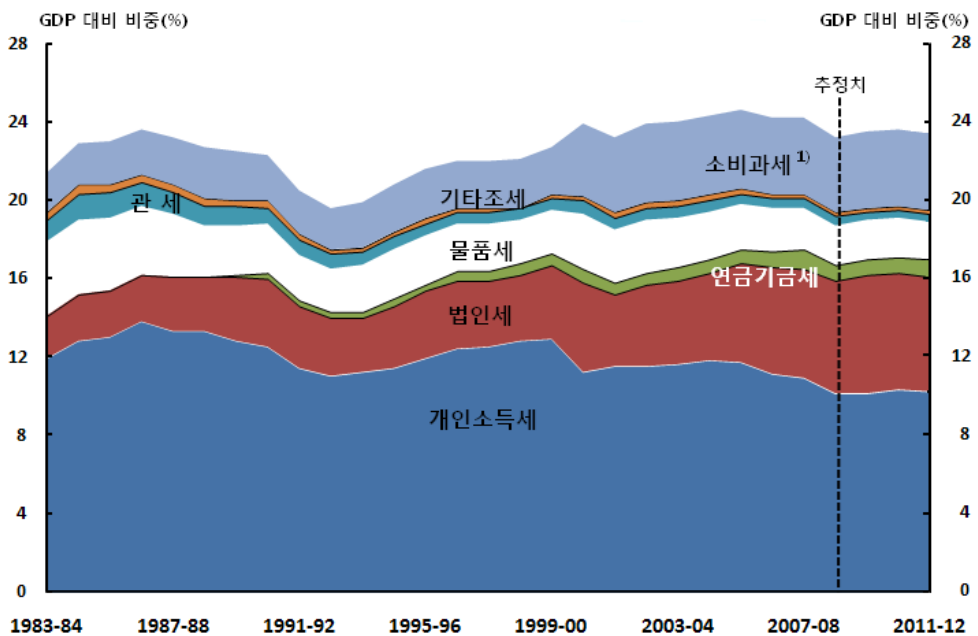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2012-13*, 2012.

지난 20여년간 연방정부 주요세목 세수입의 GDP 대비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그림 1-Ⅲ-4]와 같다. 개인소득세의 GDP 대비 비율은 1980년대부터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서 그 속도가 가속

되고 있다. 한편 법인세의 비율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1990년대 이후 연금세의 GDP 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 반면 관세 및 물품세의 비중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부가가치세와 와인균등세, 고급자동차세의 합계를 의미하는 소비과세의 비중은 2000년대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림 1-Ⅲ-4] 세수입 구성의 변화



주: 1)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 고급자동차세, 와인균등세를 포괄한 것임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2008-09*,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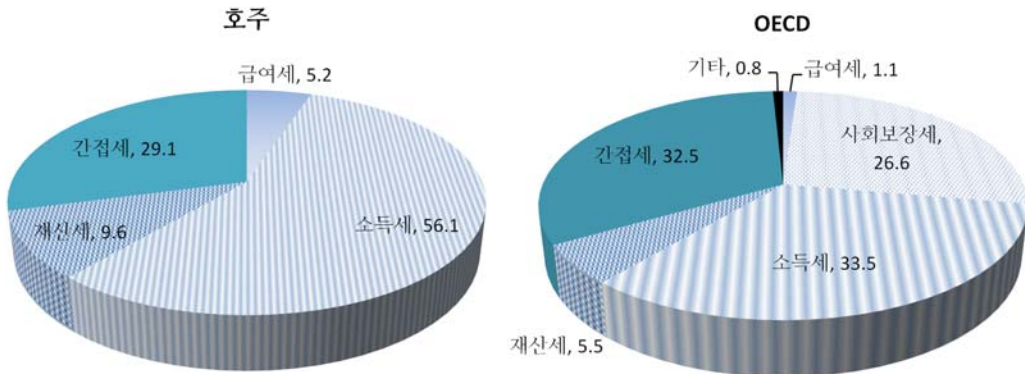
[그림 1-Ⅲ-5]에서는 2009년도 호주의 조세수입 구성을 2009년의 OECD 회원국 평균치와 비교하였다. 여기서 조세수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를 모두 합한 것인데, 호주의 조세수입 구성이 다른 OECD 회원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차이가 사회보장세인데, OECD 회원국 평균치를 보면 조세수입에서 사회보장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6.6%인데 비해 호주에서는 사회보장

세가 없다. OECD 국가 중 사회보장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뿐이다. 사회보장세가 없기 때문에 호주의 소득과세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1%로 OECD 회원국 평균치 33.1%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과세의 비중은 29.1%로 OECD 평균치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 급여세 등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종합한 개인소득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동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 18.3%인데 비해 호주는 11.0%로 상당히 낮으며, 개별 국가별로 순위를 보면 다섯 번째로 낮은 국가이다. [그림 1-III-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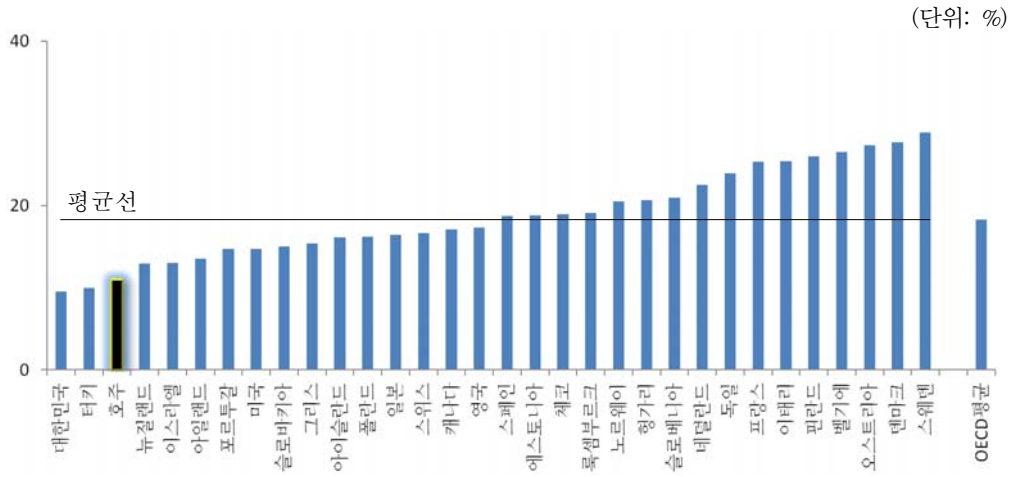
[그림 1-III-5] 조세수입 구성의 비교: 호주 대 OECD 평균(2009년)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그림 1-III-6] 개인소득과세의 GDP 대비 비율(2009년)



주: 멕시코는 제외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IV.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호주는 1930년대에 완성된 소득과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유지해오다가 지난 1998년 8월 13일 혁신적인 조세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연방세수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과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GST(Goods and Services Tax)라는 새로운 간접세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GST 도입에 따라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금 및 노령수당을 4% 인상하고, 가족보조금제도를 개선하여 실질 보조금액을 인상하는 동시에 보조금제도를 간소화하였으며, 의료보험료 납부액의 30%를 환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법인소득세 체계도 개편하였다. 호주가 혁신적인 조세개혁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호주 소득세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과 간접세의 비중이 가볍다는 것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

호주의 소득세법은 처음 제정될 당시 약 120페이지였던 것이 60년이 지난 현재 약 7,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15년간 약 650번 이상의 조세정책 변화로 그때마다 법을 개정하면서 그 체제가 복잡해지게 되었다.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신고 세부항목들에 대해 어떠한 소득과 공제를 포함시킬 것인지가 애매하여 세금신고서의 70% 이상을 세무사 등이 대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 및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 부담의 완화 정책은 200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7월에는 개인소득세 면세점의 상향조정 및 세율 인하와 더불어 각종 소득보조금제도의 개선, 고소득층(5만호주달러 이상)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가 단행되었다. 이어 2003년 7월 1일 또 다시 개인소득세가 소폭 인하되었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는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새로운 개인소득세 인하를 실시하였다. 2005년 7월에도 또 한 차례의 개인소득세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2006/07년 예산안에서도 개인소득세 인하를 발표하는 등 2003년 이후 매년 개인소득세 인하가 단행되고 있다.

2008년 8월에 호주 재무부는 21세기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부응하여 세금제도 간소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호주 세금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Australia's Future Tax System(AFTS)에 대해 논의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공표와 함께 호주의 조세 및 공적이전체계의 내용을 정리, 분석하여 *Architecture of Australia's Tax Transfer System*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행하여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동 보고서에 나타난 호주의 조세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인구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47년에는 인구의 25% 정도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8년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IGR(Intergenerational Report)이 2007년 4월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40년간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연평균 1.6%로 지난 40년간의 2.1%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화는 보건, 고령연금 등 노인복지 부문의 재정수요를 증가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둘째, 기후변화가 전 호주인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를 억제 또는 완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비용의 발생을 연기할 수는 있으나 비용의 발생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호주 정부는 탄소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셋째, 호주 경제는 소규모의 선진화된 개방경제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데, 아이디어와 투자,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된 사회에서 호주는 조세 및 공적이전체계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압력은 특히 이동성이 큰 투자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세가 투자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투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연방국가체계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가 있다. 여러 정부가 동일한 이슈에 대해 또는 상호 연관된 이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므로 정부 간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호주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사업활동에 대

해 중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규제가 존재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호주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노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호주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호주 정부는 조세 및 공적이전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14개 분야로 나누어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였고 그 내용을 2008년 12월에 발표하였다. 발표된 자료의 주요 내용은 현재 호주정부가 직면한 인구고령화 문제, 사회·경제문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조세 및 공적이전체계(tax-transfer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다. 호주는 조세 및 공적이전체계를 사회·경제 인프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꼽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후 2009년 12월에 *Australia's Future Tax System*을 발간하여 개인소득세·법인세·연금·자원세 부분을 중심으로 폭넓은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혁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자원초과수익세(REPT, Resource Super-profit Tax)의 신설이다. 2009/10년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전체 자원로얄티 징수규모를 57억달러로 추정하였는데, 이 중 93.4%가 광업이 활발한 서호주(25.77억달러, 45.5%), 퀸즐랜드주(16.96억달러, 29.8%), 뉴 사우스 웨일즈(NSW)주(10.41억달러, 18.3)에 편중되었고, 나머지 남부 호주, 빅토리아주, 태즈메이니아주, 노던 테리토리(NT) 주는 3.72억달러로 6.5%에 불과하여, 지역경제발전의 이원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서 호주 연방정부는 광업의 활성화로 이원화되어 있는 호주 국가경제기반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공정하면서도 간편하게 편중되어 있는 부를 재분배한다는 차원에서, 국토의 자원을 수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호주의 자원 기업들에게 40%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삼았다. 자원고부가수익세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토지와 같은 자원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를 미래에 대한 자본으로 남기려는 호주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2012/13 회계연도부터 신설되는 자원초과수익세에는 기존의 주정부 관할의 로얄티는 지속시키는 한편, 자원초과수익세에서 주정부에 납부한 로얄티를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기존의 로얄티와 자원초과수익세와의 차이점은 로얄티는 매출액에 일괄적으로 결정세율을 적용하지만, 자원초과수익세는 매출액에서 생산원가, 이자비용, 자본투자비용 등을 모두 제한 금액에 일률적으로 4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정부별로, 광종별로, 회사별로 세율이 변하는 복잡한 구조의 로얄티보다 단순한 구조로 기업의 영업활동 등을 고려한 훨씬 합리적인 조세제도이다.

자원초과수익세 도입으로 확충된 재원으로 인프라투자기금을 조성하여 균형 있는 호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역부터 인프라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부터 7억달러를 조성하고, 향후 10년 동안 56억달러를 조성하여 투자할 계획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자원초과수익세로부터의 세수를 기반으로 하여 법인세와 연금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호주 내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해 오던 법인세를 2012/13 회계연도에는 29%로, 2014/15 회계연도에는 28%로 각각 인하할 계획이다. 법인세의 인하는 잠재적으로 국가의 총생산을 2~3% 증가시키고, 2010/11년에 250억~400억달러의 부가가치를 더 생산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호주가 미래의 소득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또한 소형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증가된다. 연간 매출액이 200만달러 미만인 소형사업자들에게는 2012/13 회계연도부터 28%의 법인세율을 조기 적용할 것이며, 5천달러 한도 내에서 자산상각을 기존의 감가상각율에 따라 몇 년간 나누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일시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자산 즉시 상각제(Asset Write-Off)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호주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개인소득세를 대폭 정비하여 간략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21세기의 발전된 기술을 이용해서 공평하고 쉽게 적용하면서도 앞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조세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개인소득세는 호주의 가장 큰 세수입원으로써 조세제도에서 누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안에서는 개인소득세에서의 면세점을 2만 5천달러로 높여서 현재의 복잡한 과세기준을 대체하고, 모든 연금과 수당 그리고 공적이전 관련 수혜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하였다.

연금관련 개혁안에는 기존 고용연금은 고용주가 급여의 9%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

주고, 고용인이 추가로 적립할 경우 일정금액까지 세금할인혜택을 주던 현행 고용연금제도에서 고용주의 의무 적립률을 2019년까지 12%로 상향조정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연간 수익이 3만 7천달러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에게 호주 정부가 500달러씩 고용연금을 적립해주며, 만약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적립한 고용연금이 50만달러 미만일 경우 본인이 연간 5만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제2편 소득세제

I. 개인소득세

1. 서론

호주의 경우 처음에는 주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1884년 남부 호주를 시작으로 1895년 뉴 사우스 웨일즈 및 빅토리아, 1902년 퀸즐랜드 및 테즈메이니아, 1907년 서호주가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그러다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은 1916년 세계 제1차 대전 참전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였다. 소득세 부과를 위해 연방정부는 1915년에 소득세법 두 개를 제정하였는데, 하나는 Income Tax Assessment Act 1915(ITAA15)로서 과세대상 및 평가와 징수를 다루었고 다른 하나는 Income Tax Act 1915(ITA15)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령을 두 개로 구분하여 제정한 것은 호주 헌법에 의한 것으로 헌법은 조세에 관한 개별 법률이 각각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소득세 부과에 관한 법률은 부과에 대한 내용만 규정해야 하며, 과세소득의 평가에 관한 법률은 그 문제만 다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제로 인해 현행 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ITAA와 ITA 그리고 세율을 규정한 ITRA(Income Tax Rate Act)가 세 개의 축을 이루고 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세법이 주제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

1916년 연방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해 소득에 대해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정부(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서로 다른 세율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에 조세조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1923년에는 서호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연방정부와 합의하여 주 공무원이 주정부 세금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세금도 같이 징수하도록 하여 행정의 중복을 최소화하였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 공무원 중 일부는 주정부로 이동하기도 하였으며, 세금신고는 주세와 연방세 공동 서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연방정부는 1936년에 ITAA15를 폐기하고 ITAA36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조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소득세의 평가와 징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모든 법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각 주정부가 특정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 간에 과세의 차이가 있었으며 연방과 주정부 간에도 심각한 불일치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42년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는데, 전시 조치의 일환으로 연방정부가 그 당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체결된 모든 협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고 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자체 전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그 후에도 바뀌지 않고 유지되어 지금도 연방정부만이 직접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7년에 ITAA36을 개정하여 ITAA97을 제정하였다. ITAA36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ITAA97에서 새롭게 작성되었으나 ITAA97이 ITAA36을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어서 호주의 소득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법을 모두 읽어야 한다. ITAA36 및 ITAA97과 1986년에 만들어진 소득세법 및 소득세율법 즉, ITA86과 ITRA86이 현행 호주 소득세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호주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소득세란 소득세법 규정 중에서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호주의 개인소득세제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호주의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 AI)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법률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데, 과세대상 소득은 비전문적인 용어로 경상소득(ordinary income)과 같다. 경상소득에 대한 정의가 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판례에서 각각의 개별 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닌지가 결정되었다¹²⁾. CCH(2010)은 각각의 개별 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표로 정리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소득의 이름과 과세대상여부만 표시하였는데도 그 목록이 10쪽에 달할 정도로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다. 필요경비가 소득보다 많은 경우 차액은 이월할 수 있다.

둘째, 과세대상 소득은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하여 과세되며 가구 또는 부부 단위의 과세는 허용되지 않고 개인 단위로 과세된다. 소득을 미성년자녀에게 분할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셋째, 상환해야 할 대학 학자금 융자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 시 소득의 일정률로 정해진 상환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의료 부담금(medicare levy)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의료 부담금은 과세소득의 1.5%이다.

넷째, 비금전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체계(부가급여세)가 적용되므로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에는 비금전 부가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 작가나 발명가, 연예인 및 연주자, 영화제작자, 운동선수 등 수입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직종의 납세자는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적용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소득을 평준화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며, 자본이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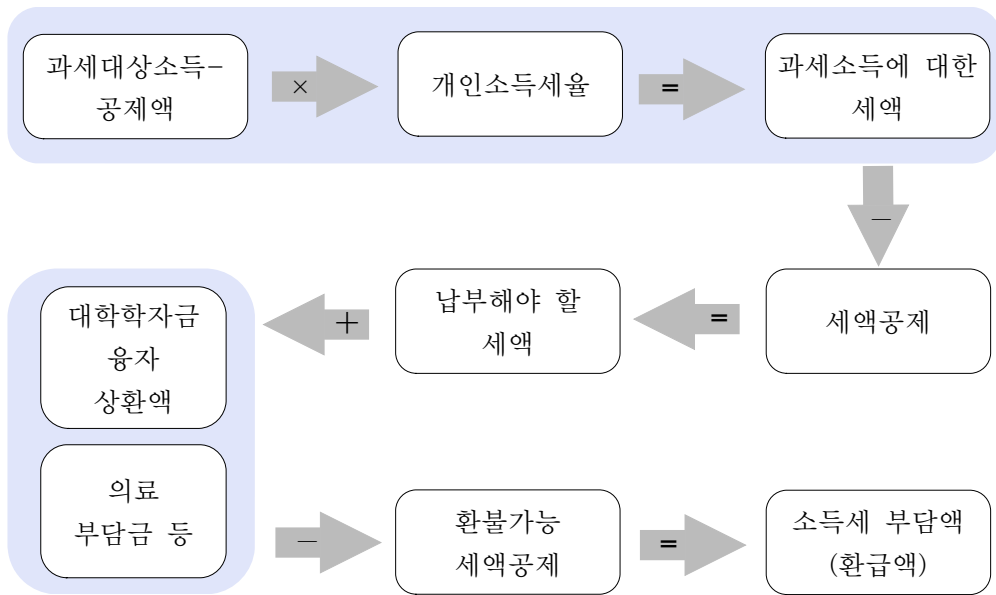
여섯째,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임퓨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제거한다. 즉,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세금도 배당을 수취한 개인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결정한 후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림 2-I-1]에서는 호주의 개인소득세액 결정과정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과세대상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고 나면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된다. 과세소득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므로 여기에 법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다음에는 산출된 세액에서 상계할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12) 열거주의(Schedular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포괄주의 소득세제(Comprehensive Income Tax)에 의거, 세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학학자금 용자 상환액이 있는 경우 이를 더하고 의료 부담금을 더하고, 세액공제액과 환급 가능한 것으로서 상계해야 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이 산출된다.

[그림 2-1-1] 호주의 개인소득세액 계산과정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Architecture of Australia's Tax and Transfer System*, 2008.

2. 납세의무자

가. 서론

호주의 개인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며, 개인인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호주 거주자인지 여부와 소득의 원천지가 호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원천지가 어디건 간에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호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호주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호주에서 납세의무를 지며,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인의 집합체인 파트너십의 경우 소득을 배분받는 파트너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신탁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 거주자, 일시적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

호주에서 과세목적상 거주자(resident)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의미로는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정리한 세 가지의 법적 개념상 거주자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과세목적상 거주자가 된다(ITAA36 s 6(1))¹³⁾.

- (1) 주소/상주하는 거처 테스트 : 호주에 주소(domicile)를 갖고 있는 자는 그가 상주하는 거처(permanent place abode)가 국외에 있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거주자로 간주된다. 여기서 'permanent'는 항구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주하는'이라는 개념으로서 '일시적(temporary 또는 transitory)'이라는 개념과 대응되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남은 여생을 보낼 거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시점에 볼 때 일정기간 이상 상주하는 거처를 의미한다.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정기간은 2년 이상을 말한다.
- (2) 183일 테스트 :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183일 이상을 호주에 체제하였다면 거주자로 간주된다. 여기서 연도는 과세연도를 의미하며, 호주에서의 체제가 도중에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시 말해 호주에서 계속 체제하였는지 또는 간헐적으로 체제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과세연도

13) 세법상 거주자는 이민법상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데, 호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입국/체류하는 경우에는 과세 목적상 거의 대부분 거주자가 된다. 워킹홀리데이비자(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분류되나 거주 상태를 결정짓는 여러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거주자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할 예정이면 거주자로 분류된다. 학생비자 소지자 또는 사업비자나 457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되어 호주 시민권자와 동등한 납세의무를 진다.

중 절반 이상을 체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그 자의 일상적 거처(usual place of abode)가 국외에 있고 호주에 거주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83일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 (3) 호주 기업연금 테스트 : 호주의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기여금을 납부하는 자 또는 그 기여금을 납부하는 자의 배우자와 16세 미만의 자녀는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

위의 정의에 의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다. 어떤 납세자가 통상적 거주지의 개념에 따라 호주 거주자였는데 과세연도 중간에 다른 국가로 이주한 경우 호주 내 거주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일시적 거주자가 되어 거주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거주자와 동등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 때 소득세 면세 기준도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줄어든다. 이는 비거주자가 연도 중에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호주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고 난 다음에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183일 테스트를 적용하여 거주자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183일 이상을 거주하고 해외발령이 나서 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연도 전체의 거주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다(Case S19).

다. 파트너십, 신탁

통상 파트너십은 개인이 모여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그 사업체를 말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파트너십은 이를 포함하여 공동의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ITAA97 s 995-1(1)). 예를 들면 재산을 공동소유함으로써 공동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파트너십에 해당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발생한 임대소득 중 25%는 남편에게 귀속되며 75%는 부인에게 귀속된다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파트너십이 인정된다. 그러나 두 개의 단체가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결합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상으로는 세법상으로는 파트너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은 파트너십이 아니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회나 조합(association)도 파트너십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의 이익은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 대신 발생소득을 파트너에게 배분하여 파트너 단계에서 개인소득에 통합하여 과세한다. 파트너십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을 개별 파트너에게 배분하여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한다. 여기서 배분은 파트너십의 소득을 계약에 의거하여 개별 파트너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소득이 실제로 분배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파트너십은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신고는 과세보다는 정보의 제공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파트너십의 신고를 통해 소득의 발생과 파트너별 배분액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파트너는 배분된 소득을 자신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ITAA36 s 91, 92).

유한책임 파트너만으로 구성되는 ‘유한책임 파트너십(corporate limited partnership)’은 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단, 벤처캐피탈 투자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특수목적회사인 유한책임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과세대상이 된다.

신탁은 과세목적상 독립된 개체가 아니다. 수탁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탁자가 신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신탁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최종적으로 그 소득을 가져가는 수익자이다. 과세시점에 수혜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정해져 있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해당 시점에 그 혜택을 수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ITAA36 s 96).

3. 비과세소득

가. 소득의 구분

호주의 과세목적상 소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ITA97 s 6-1).

첫째, 과세대상 소득(assessable income: AI)으로서 납세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인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말한다.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자

제한 개념은 다음 절(제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둘째, 면제소득(exempt income)인데,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그 소득과 관련하여 지불한 비용의 손금산입은 허용되는 소득이다. 경상소득(ordinary income)과 법정소득(statutory income) 중 법률에 면제소득이라고 규정된 경우 또는 ITA97과 ITA36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소득은 면제소득이 된다¹⁴⁾.

셋째, 과세대상소득도 아니고 면제소득도 아닌 소득이 존재한다. 이 범주의 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도 않고 비용공제에 있어서도 이 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무시된다. 경상소득과 법정소득 중에서 법률에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고 면제소득도 아니라고 규정된 것이 이 범주에 속한다.

나. 면제소득

ITAA97 s 11-1은 면제소득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특정 면제 기관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면제된다. 둘째는 특정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문하고 면제되는 소득이다. 세 번째는 특정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특정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면세가 가능하다.

면세기관을 보면 원칙적으로 비영리기관이 면세대상이지만 모든 비영리기관이 면세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s 11-5)에 면세대상 기관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 기관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에 소재하는 기관으로서 지출과 기관의 목적 사업이 호주에서 행해진다.

둘째,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수취하는 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다음 두 가지 성격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만 이익을 분배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 호주에 소재하는 자선기관으로서 모든 지출과 고유목적의 자선행위를 모두 호주에서 행하는 기관

14) 경상소득과 법정소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절(제4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 공제가능 기부금 수혜기관으로서 공립대학,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넷째, 국외 소재 기관으로서 거주지에서 면제기관인 경우, 호주 소재 기관이지만 대
부분의 지출과 고유목적 추구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소득이 귀속되는 기관과 관계없이 면제되는 소득 또는 특정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것
을 조건으로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 중등교육기관 교육비
- 상속소득 : 현금이든 현물이든 상속을 통해 수취한 소득은 자본이득세(CGT)를 제
외한 다른 세목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을 이윤추구 목적
의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도박, 복권, 기타 경쟁으로부터 획득한 상금
- 국외 고용소득 : 호주의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되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기
간이 91일 이상이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호주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중과
세방지조약이나 기타 조약, 국내 면세규정, 또는 국내 과세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원천지에서 과세하지 않을 경우에는 호주에서 과세한다.
- 비거주자의 국내투자소득 : 호주의 회사나 고정신탁에 투자하는 국외 연금펀드로
서 거주지에서 면세기관인 경우에 호주의 벤처자본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이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CGT를 모두 면세한다.
- 비거주자의 국외소득

다. 비과세-비면제소득

ITAA97 Subdiv 11-B에서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며 면제소득도 아닌 비과세-비
면제 소득을 판정하는 체크리스트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
들이 비과세-비면제 소득에 해당한다(ITAA97 s 11-55).

-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alienated personal service income)
 - 소득을 수취한 자가 조합(associate)에 지불한 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
능한 것(ITAA 97 s 85-20(3))
 -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단체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이 되

지 않는 것(ITAA 97 s 85-30)

- 인적용역 단체나 조합이 지급한 것으로서 이미 개인의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된 것(ITAA 97 s 85-35(1))

• 배당소득

- 기업분할 배당금(ITAA 36 s 44-4)
- 과세목적으로 이미 계상된 배당금을 상계하는 후취 배당금(a later dividend) (ITAA 36 s 109ZC(3))

• 화재소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손실 보상금(ITA 97 s 59-10)

• 생애최초주택저축계좌 소득(ITAA 97 s 345-50)

• 국제소득

- 도관으로서 배분한 해외소득(ITAA 97 s 802-20)
- 호주 회사의 해외지점소득(ITAA 36 s 23AH)
- 이미 피지배외국법인에 귀속된 소득(ITAA 36 s 23AI)
- 피지배 외국법인이 호주 회사에 지급한 과점주주 배당액(a non-portfolio dividend)(ITAA 36 s 23AJ)
- 이미 계상된(attributed) 외국투자기금 소득(ITAA 36 s 23AK)
- 해외 연금기금의 이자·배당소득으로서 동 기금의 거주지에서 면세되는 경우 (ITAA 36 s 128B(3)(jb))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사용료로서 원천징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ITAA 128D)
- 일시적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해외소득(ITAA 97 s 768-910)
- 일시적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ITAA 97 s 768-980)

그 외에도 다양한 비과세-비면제소득이 세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미 과세대상에 포함된 소득이 이중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위에서 열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소득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호주에서 과세하여 국제거래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도 있는데, 거주지국에서 비과세되는 연금기금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이에 해당한다.

4. 과세소득

가. 과세소득의 정의, 산정체계

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AI)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순 소득에 대해 법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대상 소득은 우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상소득과 법정소득을 포괄한다(ITAA97, s 6_1(1)). 경상소득과 관련하여 법에는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의 소득이라는 정도의 정의만 있을 뿐 소득으로 보여지는 특정 항목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판례에서 각종 소득에 대해 과세대상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 소득(AI)과 과세소득(taxable income: TI)을 구분해 보면, 과세대상 소득은 우리나라의 개념에서 볼 때 종합소득세 과세 목적상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고 난 후의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의미한다.

특정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질문을 차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 ① 그 소득이 경상소득인가?
- ② 경상소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CGT)가 과세되지 않는 법정소득인가?
- ③ CGT 과세대상인 법정소득인가?
- ④ 소득을 수취한 자가 호주 거주자인가? 소득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 ⑤ 소득세 면제 대상인가?

경상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에서 특정 소득이 경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경상소득에 대한 정의가 법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판례를 통해 각각의 개별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닌지가 결정되었다.

경상소득이 아니라도 특정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법정소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용료(royalty)는 경상소득은 아니지만 세법규정에 의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므로 법정소득이 된다. 자본이득 즉, 양도소득도 경상소득은 아

니다. 그러나 법정소득은 될 수 있다. 양도소득이 법정소득이면서 동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소득은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한다. CCH(2008)는 각각의 개별 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표로 정리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소득의 이름과 과세대상 여부만 표시하였는데도 그 목록이 10쪽에 달할 정도로 자세하게 분류되어 있다.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거나 별도의 과세체계를 통해 과세된다.

이러한 판단 과정을 통해서 소득의 성격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이후에는 소득이 귀속되는 자의 특성과 소득의 원천을 검토하여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소득이 호주 거주자에게 귀속된다면 그 소득의 원천이 세계 어디에 있든 호주의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경우 호주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호주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은 호주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 질문은 그 소득이 소득세 면제대상 소득인지 여부이다. 경상소득이나 법정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면제대상 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된 후 그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면 과세소득이 된다. 공제액이 과세대상 소득보다 많으면 차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공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과세대상 소득을 발생시키는 생산활동과 관련된 통상적인 사업비용이며, 두 번째는 자본적 성격의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적공제이다. 과세대상 소득 결정방식을 도식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I = AI - EI - \text{Deductions}$$

$$AI = OI + SI$$

$$\text{Deductions} = (\text{BE} + \text{CE} + \text{PD})$$

TI: 과세소득

AI: 과세대상 소득

EI: 면제소득

OI: 경상소득

SI: 법정소득

BE: 사업경비

CE: 자본적 지출

PD: 인적공제

나. 인적용역 소득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그것이 고용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든 아니면 독립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든 모두 경상소득에 포함된다. 이러한 소득에는 임금·급여·상당자 수당·커미션·체불임금·장기근속휴가수당·휴일수당·이사수당·용역 제공의 대가로 이익의 일정률을 배분받는 경우 그 대가, 주선비 등이 포함된다. 불규칙한 근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규칙적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같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아마추어가 아닌 운동선수가 받는 소득이나 상금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그리고 고용주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세, 연금 기여금 등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단,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고용주 자신이 기여하는 연금은 피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령연금과 퇴직 시 받는 일시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비금전 부가급여는 일반적으로 부가급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급여세 납세의무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부가급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도 않고 면제소득도 아니다(ITA36 s 23L). 직원 휴가를 위한 숙박권 제공 등과 같은 혜택이 이러한 부가급여에 포함된다. 고용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선물이나 기부금은 수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사업소득이나 전문용역(professional practice) 소득과 같이 발생주의 회계원칙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소득이 지급된 때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다. 사업소득

호주의 세법은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총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고 그 소득을 발생시킨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사업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모두 경상소득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자본이득의 성격이 있는 수입은 CGT 규정이나 다른 규정

에서 법정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통상적인 사업 과정이 아닌 독립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거래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노하우나 비밀공정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입은 그것이 사용료(royalty)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통상적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특허·사용권·디자인·분배독점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고판매 수입도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며, 자금의 융자 등과 관련된 수수료나 커미션,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나 프리미엄 등은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보험수입, 기타 보상액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특정 자산을 사용하거나 거래하지 않기로 계약하고 받은 수입은 자본으로 간주되므로 CGT의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는 소득의 성격과 소득을 발생시킨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라. 부동산 및 증권, 외국환 판매 수입

단순하게 자본자산을 현금화하여 발생한 수입과 투자금을 회수하여 발생한 수입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1985년 9월 20일부터 자본이득세(CGЕ)가 별도의 세목으로 도입되면서 자본자산을 단순하게 현금화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85년 9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며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단순하게 현금화(mere realization)한다’는 용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된다. 그러나 자본이득의 단순한 실현인지, 사업목적의 투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식 등 증권 양도차익의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차익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ITAA 36 s 26BB에 규정된 전통적인 증권(traditional securities)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전통적 증권이란 발행당시 연간 할인율이 1.5%를 넘지 않고, 이자지급을 이연하지 않으며, 자본의 가치에 연동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투자라기보다는 자금 대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외환차익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차손은 공제 가능하다.

마. 사회보장 및 연금

사회보장 및 퇴역군인에 대한 연금규정에 의해 일정연령 이상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며, 특정 연금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사회보장법에 의한 연금 중 노령연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특정 지급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데, 노령연금 대상자는 남자는 65세 이상이고, 여자는 193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60세 이상, 194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상이다. 면제되는 특정 지급액에는 주거비 보조, 벽지거주 보조, 재난 위로 지급액, 의약품보조, 전화비보조, 유틸리티 보조 등이 포함된다. 퇴역군인 연금의 경우에도 유사한 성격의 지급액은 면제된다.

기타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대부분 면제되는데, 자녀보호보조금(child care benefit), 가족지원조세혜택(family tax benefit), 임신부보조금, 민간건강보험 인센티브, 고용지원금, 임대료보조금, SA화재보상금, 사이클론피해보상금 중 일정액 등이 이에 해당된다. SA화재보상금은 사업체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나 모두 경비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된다.

바. 도박수입, 상금 등

내기나 도박을 해서 얻은 수입은 그것을 사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권의 상금이나 경기에서 얻은 상금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

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소득은 CGT 과세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고, 상금이 출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투자와 관련된 복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납세자가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부수하여 상금이 발생한 경우 그 상금도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사. 이자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이자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건, 어떤 형태로 지급되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이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호수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중 특정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는데, 국·공채 이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이자를 수취하는 비거주자가 자선기관 등 특정 비영리기관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 배당

과세목적상 배당이란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이익분배를 의미하는데, 거주자인 개인 주주가 배당을 수취한 경우 현금배당액에다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반영하기 위한 적격배당세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그런 다음 개인 주주에 대한 과세 단계에서 기납부된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한계세율이 현행 30%인 법인세율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배당세액 중 공제되지 않는 부분은 기타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상계하거나 납세자에게 환급될 수 있다. 국외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단, 환급은 거주자인 개인에게만 허용되

며,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국내 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이 되지 않는다.

자. 임대료 및 사용료 소득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료는 수입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명의 납세자가 재산을 공동 소유한 경우 파트너십 계약 등을 통해 별도의 배분비율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법적인 지분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이 공동 소유주에게 배분된다. 임대소득에서 관리대리인 수수료·수리비·보험료·재산세·감가상각비 및 기타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소득이 된다. 주 거주지를 제외한 투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구입 용자금의 이자도 비용 공제할 수 있으며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을 활용할 수도 있다¹⁵⁾.

사용료는 통상적인 의미의 사용료와 법적인 의미의 사용료로 구분되는데, 통상적인 의미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광산의 임대자가 채굴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
- 특허 사용에 대해 특허 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작가·작곡가·편집자 등에게 판매 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통상적인 의미의 사용료는 소득의 성격을 가지면 ITAA97 s 6-5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자본의 성격이 있으면 ITAA97 s 15-20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통상적인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의미의 사용료에 포함되면 역시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법적인 의미에서의 사용료에 포함되는 소득 중 통상적으로 자본으로 간주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동시에 CGT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

15)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용 부동산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는 일종의 감세혜택이다. 예를 들어 주택용자를 통해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용자상환액과 임대 에이전트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이 임대수입보다 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소유주의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치이다. 호주를 비롯한 극소수의 일부 국가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호주는 정부주택 임대난 해소의 한 방편으로 네거티브 기어링을 통해 임대주택 소유를 장려하고 있다.

법률상 확장된 사용료 개념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한다(ITAA97 s 6(1)).

- (1) 저작권·특허·디자인 또는 모형·도안·비밀공정·상표권 기타 재산이나 권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
- (2) 산업·상업·과학 장비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 (3) 과학·기술·산업 또는 상업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
- (4) 앞의 (1)~(3)에 열거된 재산이나 지식·정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 재산·지식·정보에 부수되거나 보조적으로 공급되는 것에 대한 대가
- (5) 영화·동영상·비디오·테이프 등을 라디오나 TV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 (6) 위성·케이블·광섬유 및 기타 유사한 기술을 통해 음향이나 그림·사진 등을 전송받거나 전송받을 권리에 대한 대가
- (7) TV나 라디오 방송과 관련하여 위성·케이블·광섬유 및 기타 유사한 기술을 통해 음향이나 그림·사진 등을 활용하거나 활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 (8) 주파수 면허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
- (9) (1)~(8)에 열거된 재산이나 권리, 지식, 정보,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를 보류하는 데 대한 대가

사용료는 실제로 사용료를 수취하였을 때 과세된다.

차. 종업원 지주제도 관련 소득

종업원 지주제도(ESS: Employee Share Scheme)에 대한 조세지원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종업원 지주제도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ITAA97 Div 83A에 의하면 종업원 지주제도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받은 할인액에 대해 취득 단계에서 선과세할 수도 있고, 과세를 이연하여 나중에 납부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할인액은 시장가에서 어떤 것이든 종업원이 종업원 지주제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모든 보상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특정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1천달러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선과세가 적용되며, 과세의 이연은 종업원이 취득한 주식이 몰수될 위

협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급여를 희생하는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것인 경우에, 그리고 연간 수취한 주식의 가치가 5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 이연이 적용된다. 과세이연은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과세해야 할 시점이 되었을 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 사건이란 종업원이 퇴직 등의 이유로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주식 취득 후 7년이 지난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위험이 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카. 보상금

자산의 거래로부터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한 보상금이나 보험지급에 따른 이익은 통상 소득 또는 법정 소득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인적 상해에 대해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타. 기업연금 혜택(Superannuation Benefits)과 퇴직급여(Termination Payments)

퇴직금과 연금에 대한 과세는 ITAA97 Pt 2-40과 Pt 3-30에 규정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납세자에 대한 기업연금 지급액은 그것이 기업연금기금의 단계에서 과세되었다는 전제하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면제소득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즉, 연금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서 기여 당시 소득에 대한 과세와 펀드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 그리고 수혜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 중 가운데에 과세하는 ETE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0세 이전에 연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혜단계에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ETT가 된다. 보존연령(preservation age)을 지났지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을 비과세요소와 과세대상 요소로 구분하는데, 비과세요소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도 않고 면제 소득도 아니다. 일시불을 지급받은 것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요소는 수혜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고,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저세율 한도(2009/10년 15만달러) 이내에서는 실효세율이 0%가 되도록 만들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이 15%가 되도록 한다.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을 적용하되 15%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보존연령 미만의 수혜자인 경우 비과세요소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면제소득도 아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정액일시불의 경우 실효한계세율이 20% 이하가 되도록 세액공제를 통해 실효세율을 조정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 혜택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세액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표 2-I-1〉 참조)¹⁶⁾.

〈표 2-I-1〉 기업연금과 퇴직급여 과세 - 펀드단계에서 과세된 경우

수혜자 연령	일시불	연금
60세 이상	AI도 아니고 EI도 아님	AI도 아니고 EI도 아님
보존연령에서 5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율과세한도(2009/10년 15만달러) 내 0% 한도 초과분 최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계세율 적용 과세 15%의 세액공제 허용
보존연령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계세율 적용, 세액공제 불허 장애자 기업연금 혜택의 경우 15% 세액공제

펀드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은 수혜자 단계에서 과세되어 EET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예를 들면 60세 이상이 되어서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서 실효세율이 15% 이하가 되도록 하며,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되, 10%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보존연령(preservation age)이 지나면 60세가 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불을 지급받는데 대해 저율과세 한도액(2009/10년 15만달러)까지는 15%의 세율로 과세하고, 비과세 플랜 한도액(untaxed plan cap amount, 2009/10년 1,100만달러)까지는 30%의 세율로 과세한다. 그리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연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

16) 보존연령은 55세에서 60세 사이로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다르다.

고 10%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보존연령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일시불을 지급받았으면 비과세플랜의 한도액까지 실효세율이 30% 이하가 되도록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세액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표 2-I-2> 참조).

<표 2-I-2> 기업연금과 퇴직급여 과세 - 펀드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연령	일시불	연금
60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플랜 한도(2009/10년 연금 플랜당 1,100만달러)내, 최대 15% · 한도 초과액, 최고한계세율 적용 	한계세율 적용 과세, 10% 세액공제 허용
보존연령에서 5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율과세한도(2009/10년 15만달러) 내, 최대 15% · 비과세플랜 한도 내, 한계세율 최대 30% · 초과분에는 최대한계세율 적용 	한계세율 적용 과세, 세액공제 불허
보존연령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플랜 한도 내, 최대 30% · 초과분, 최고한계세율 	한계세율 적용 과세, 세액공제 불허

퇴직금(Employment Termination Payments: ETP)에 대한 과세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제소득에도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요소는 (i) 질병급여 부분과 (ii) 1983년 7월 이전분이다. 질병급여 부분은 납세자가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받는 퇴직금으로서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84년 7월 이전분이란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고용이 1983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총 퇴직 급여액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5. 각종 공제제도

가. 인적공제

호주의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는 사업비용 공제와 특별규정에 의한 특별공제, 그리고

인적공제로 구분되는데, 다음에서는 이에 대해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 사업비용 및 고용관련 비용 공제, 자본비용 공제 인센티브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기부금 공제와 사업비용 공제, 자본비용 공제는 과세소득에서 비용 또는 손금산입형식으로 공제(deduction)하는 데 비해 인적공제는 대부분 세액공제(tax rebate, tax offset)이며, 그 중 일부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소절에서는 개인소득세를 납세하는 개인의 인적 환경을 근거로 제공하는 각종 공제에 대해 설명한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tax offset) 또는 세액의 환급(rebate) 형식으로 제공되는데, 본고에서는 편의상 tax offset과 rebate를 통틀어서 세액공제라고 부른다. 세액공제는 통상 당기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이루어 지는데 일부 항목의 경우 자신의 당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을 배우자 등 다른 납세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 다음 기로 이월할 수 있는 공제항목도 있으며, 환불(refund)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1) 부양가족 공제

호주에서는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60개가 넘는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다. 그 중 개인의 인적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주로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 저소득층·장애인·노년층에 대한 지원, 의료비 환급 등이다. 이 중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2009/10년에 적용되는 최대 공제 가능액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조정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 ATI)을 정리하면 <표 2-I-3>과 같다. 피부양 가족이 과세상 피부양자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어야 하는데, 그 자격을 판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소득의 개념이 ATI이다. ATI는 과세소득에 연금기금 납부액, 투자손실, 조정된 부가급여(adjusted fringe benefit)를 더하여 계산한다. 공제한도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 규모는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조정된다.

〈표 2-1-3〉 부양가족 세액공제 개인의 세액공제

(단위: 호주달러)

세액공제 항목	공제한도(2009/10)		피부양자 소득(ATI) 한도
배우자 공제(사실혼 관계 인정)	2,243		9,254
자녀-가정부(취업을 하지 않고 가사를 도맡아 하는 자녀) · 미성년, 학생공제 가능한 경우 · 기타	2,190	피부양자의 소득이 282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 4달러당 1달러씩 공제액 감소	N/A
	1,828		N/A
장애인 가족	823		3,574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1,645		6,862
첫째 자녀 세액공제(또는 출산장려금)	2,500(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축소)		* 2004년 7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축소, 2014년 6월 30일에 폐지
학생이 아닌 21세 미만의 자녀 ¹⁾ · 첫째 자녀 · 기타		376	1,786
		182	1,410
학생 ¹⁾		376	1,786

이 표의 첫 번째 줄에는 납세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규모가 나와 있는데,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 가족으로 인정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공제 최제한도는 연간 2,243달러이다. 피부양 배우자의 소득이 282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매 4달러마다 1달러씩 공제액이 줄어들게 되며, 소득이 9,254달러가 되면 세액공제가 0이 된다.

두 번째 줄에 나타난 '자녀-가정부'란 납세자의 자녀로서 취업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일을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다. 양부모가 모두 생존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장애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가정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녀-가정부 세액공제는 미성년, 학생공제가 가능한 납세자와 기타 납세자로 구분하여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데, 전자의 경우 공제한도가 2,190달러이고 후자는 1,829달러이다. 자녀-가정부 공제는 자녀가 전업으로 가사에 전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므로 시간제 취업도 허용하지 않고, 따라서 공제를 받으려면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녀와 형제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며,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도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첫째 자녀 세액공제는 이전의 출산 장려금을 대체한 것으로서 개편 이후에도 출산장려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대 공제 가능액이 2,500달러이며, 납세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조정된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14년 6월 30일에 폐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학생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되었으나 의료비 공제, 특정지역 공제, 자녀-가정부 공제 등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다. 자녀부양 공제는 동거하는 자녀에 한해 허용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경우 공제액을 배분할 수 있다.

위 표에 나타난 것 외에도 21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 외에 21세 미만의 자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장애인 친척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가사를 도맡아 책임지는 가정부가 이들을 돌보면 가정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1,828달러인데, 21세 미만의 자녀나 학생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190달러가 된다.

2) 저소득층 및 노년층 지원

Low Income Rebate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세액공제는 연간 공제한도액이 1,350달러이고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3만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달러당 4센트씩 공제액이 줄어들어 과세소득이 6만 3,750달러가 되면 저소득층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ITAA36s 159H, 159N). 명목상 소득세 면세점은 6천달러인데 저소득층 공제를 고려하면 과세소득 1만 5천달러가 실질적인 면세점이 된다. 2010/11년에는 공제한도액을 1,50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다.

〈표 2-1-4〉 저소득층, 노년층에 대한 세액공제

(단위: 호주달러)

세액공제 항목	공제한도(2009/10)		면세점 ¹⁾	공제 가능 소득(TI) 한도
저소득층 공제(LIR)	1,350	주 ¹⁾ 참조	15,000	63,750
노년층 세액공제(SATO)				
· 독신	2,230	면세점 초과 소득에 대해	29,867	47,707
· 부부 1인당	1,602	1달러당	25,680	38,496
· 질병(장애)로 별거중인 부부 1인당	2,040	12.5센트씩 감소	27,600	44,920
연금수급자 세액공제(PTR)				
· 독신	2,240	면세점 초과 소득에 대해	20,934	38,854
· 부부 1인당	1,699	1달러당	17,327	30,919
· 질병(장애)로 별거중인 부부 1인당	2,086	12.5센트씩 감소	19,907	36,595
사회보험 수혜자 공제(BR)	0.15×(사회보험수혜액- 소득세 면세점) ²⁾			
노년층 근로자 세액공제 (MAWTO)	500	근로소득 5만 3천달러 초과분에 대해 1달러당 5센트씩 감소		63,000

주: 1) 3만달러 초과 소득에 대해 1달러당 4센트씩 공제액 감소

2) 수혜액이 3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만큼 세액공제 한도 증가

노년층 세액공제(Senior Australian Tax Offsets: SATO)는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제도인데, 독신인지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와 면세점 등이 달라진다. 독신의 경우 공제한도액은 2,230달러이며, 저소득층 세액공제와 노년층 세액공제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면세점이 2만 9,867달러가 된다. 면세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달러당 12.5%씩 공제액이 줄어들어 과세소득이 4만 7,707달러가 되면 SATO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부부의 경우에는 1인당 공제한도가 1,602달러이고 면세점은 2만 5,620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은 3만 8,496달러이다. 노인 부부가 장애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는 등의 이유로 별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에 비해 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독신자에 비해서는 공제한도가 작다(ITAA36 s 160AAAA).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법에 정한 특정 소득만 있는 연금수급자로서

SATO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자에게는 연금수급자 세액공제(Pension Tax Offsets (또는 Rebate): PTO)가 허용된다. PTO는 과세소득이 노령연금, 유가족 지원금, 도우미 지원금, 장애자연금 등 사회보장 수혜로 구성된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데, 통상 SATO가 PTO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SATO와 PTO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SATO를 적용받고 SATO를 적용받을 수 없는 자만 PTO를 적용받는다. PTO를 적용받는 부부의 경우 한 사람에게서 공제한도액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면 남은 공제액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ITAA36 s 160AAAA(1), (2)).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사회보험 수혜자 공제(Beneficiary Rebate: BR)인데, 사회보험 수혜액에서 과세 최저소득 즉, 면세점에 해당하는 과세소득(2009/10년의 경우 6천달러)을 차감한 금액에 최저세율(2009/10년의 경우 1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사회보험 수혜액이 3만 5천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15%만큼 더 공제한다(ITAA36 s 160AAA(1), (3)).

마지막으로 노년층 근로자 특별 세액공제(Mature Age Worker Tax Offset: MAWTO)에 대해 설명하면, 55세 이상 근로자로서 순근로소득이 6만 3천달러인 경우에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공제액은 순근로소득이 5만 3천달러 이하인 경우에 50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만 3천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1달러당 5센트씩 공제액을 차감하여 순소득이 6만 3천달러가 되면 공제액이 0이 된다(ITAA97 s 61-555에서 61-570).

3) 의료비, 교육비, 특정지역 거주자 공제 등

의료비로 지불한 금액이 1,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Medical Expense Rebate: MER). 의료비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치과 치료·안경·장애인 보조기구 등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ITAA36 s 159).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Private Health Insurance Offsets)도 허용되는데, 65세 미만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한 보험료의 30%가 공제

된다. 납세자가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35%로 높아지고,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40%로 높아진다(ITAA97 subdiv. 61-G).

특정지역 거주자에 대한 세액공제(Zone Rebate: ZR)는 벽지나 기후가 부적합하여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을 Zone A와 B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Zone A와 B는 모두 호주의 서부와 북부, 그리고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들이다. Zone A가 B에 비해 생활환경이 더 불리하며, 따라서 Zone A 거주자가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 Zone A와 Zone B 중에서도 특별히 생활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특정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제를 허용하는데, 구체적인 공제내역을 보면 연간 1,173달러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액의 50%를 합한 금액이 총 공제한도가 된다. 특정지역 거주자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여야 한다(ITAA36 s 79A).

〈표 2-1-5〉 의료비 공제, 특정지역 공제 등

(단위: 호주달러)

세액공제 항목	공제한도(2009/10)
의료비 공제(MER)	1,500달러 초과분의 20%
개인의료보험 공제(PHIO)	
· 65세 미만	납부 보험료의 30%
· 65세 이상 70세 미만	35%
· 70세 이상	40%
특정지역 공제(ZR)	
· Zone A 또는 B의 특정 지역	1,173달러 + 부양가족 공제의 50%
· Zone A	338달러 + 부양가족 공제의 50%
· Zone B	57달러 + 부양가족 공제의 50%
해외군복무 공제(ODFR)	338달러 + 부양가족 공제의 50%
임금 체불	체불임금의 지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된 세액
교육비 공제(2008/09)	
· 초등교육	375
· 중등교육	750

해외군복무 세액공제(Overseas Defense Force Rebate: ODFR)는 호주 군인으로서는 해외 현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 최대 338달러와 부양자 공제액의 50%를 더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해외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ITAA36 s 79B). 유엔 방위군으로 복역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동등한 혜택을 제공한다.

임금이 체불되었다가 나중에 지급됨으로 인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은 해에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으로 인해 증가된 세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ITAA36 s 159ZR에서 159ZRD).

교육비 공제는 자녀 교육에 지불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의 형식으로 환불해 주는 것인데, 초등학교의 경우 자녀 1인당 375달러,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 1인당 750달러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다른 세액공제와 달리 교육비 공제는 환급 가능한 공제로서 공제가능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한다(ITAA97 subdiv 61-M). 교육비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컴퓨터 구입비, 인터넷 비용 등도 포함된다.

4) 사업소득자 공제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체를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자 공제를 허용한다.

- (a) 총 매상액이 7만 5천달러 미만인 소규모 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사업체
- (b) 총 매상액이 7만 5천달러 미만인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십의 파트너
- (c) 총 매상액이 7만 5천달러 미만인 소규모 신탁의 수탁인 또는 수혜자

세액공제는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25%까지 할 수 있다(ITAA97 s 61-500에서 61-525까지).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공제액이 축소되는데,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이 7만달러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 1달러당 20센트씩 공제액을 축소한다. 가족(family)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공제대상 소득이 아닌 소득이 1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

우 초과분에 대해 달러당 20센트씩 공제액을 축소한다.

5) 공제한도와 공제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공제가 대부분 소득공제의 형태를 띠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호주에서는 인적공제가 대부분 세액공제의 형태를 띤다. 그러므로 어느만큼 공제를 허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일반적인 원칙은 납부세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첫 번째는 노년층 세액공제와 연금수급자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이다. 이들 항목에 대한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배우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외는 환급 가능한 것으로서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것이다. 인적공제 중에서 개인의료보험 납부액 공제, 첫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가 이 범주에 속하며, 그 외에 뒤에서 언급할 의제배당 세액공제,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영화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이다. 마지막으로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다.

이와 같이 공제 가능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공제항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먼저 적용하여 공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부세액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공제항목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하며, 이월 가능한 공제항목을 세 번째로 공제하고, 환급 가능한 공제항목은 가장 나중에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기부금 공제

인적공제와 달리 기부금 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또는 손금산입)의 형식을 띤다. 호주의 기부금 공제제도는 ITAA97 Div.30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제

도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나 토지신탁의 수탁자, 연금기금, 파트너십, 회사 등이 2달러 이상의 금전이나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국세청의 승인을 받거나 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을 과세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현금이 아닌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구입한 지 12개월 이내의 재산이거나 5천달러 이상의 재산이어야 하는데, 구입한 지 12개월 이내의 재산은 구매가격과 기부 시 가격 중 적은 금액을 기부액으로 인정하고 5천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서면 요청에 의해 국세청 내의 평가실(Australian Valuation Office)에서 가치를 평가한다.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기관은 대체로 호주에 있는 공익단체인데 예외적으로 소수의 국외 단체나 기관에 대한 기부금도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는 과세신고 시 기부금에 대해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국세청에서 요구할 때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현금이나 재산 외에 용역의 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 기부에 대해서는 5년까지 분할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기부, 환경재단에 대한 기부, 문화유산 재단에 대한 기부, 5천달러 이상의 재산 기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술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가 면제되어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비해 유리하다. 기부자가 기부로 인한 세부담 감소 외에 다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 소득 공제를 부인할 수 있다.

손금산입이 가능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단체 목록은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공공 비영리 병원(s 30-20)
- (2) 공공 자선기관(s 30-45)
- (3) 위의 (1)과 (2)에 자금을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금(s 30-20; 30-45)
- (4) 결혼 안내 봉사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금(s 30-70)
- (5) 질병의 원인, 예방, 치료에 대해 연구하는 공공기관(s 30-20)
- (6) 영연방 군인의 위로, 위안 및 복지를 위한 공공기금(s 30-50)
- (7)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 건축을 위한 공공기금(s 30-25)

- (8) 공립대학과 공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공공기금(s 30-25)
- (9) 국공립 대학 부설 기숙학교(s 30-25)
- (10) 공공도서관, 공공미술관, 공공박물관(s 30-100)
- (11) 승인된 과학연구기관((s 30-40)
- (12) 국가와 주정부에 대한 국방비 기부, 국가에 대한 호주 남극지역 연구를 위한 기부(s 30-40(2); 30-50)
- (13) 환경단체 등록부에 등록된 환경단체(s 30-55)
- (14) 고용·교육·훈련·청년부의 승인을 받은 기술교육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시설비 기부(s 30-30)
- (15) 고등교육기관과 부속 기숙학교(s 30-25)
- (16)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유지되는 공공기금(s 30-25)
- (17) 지방 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금(s 30-20; 30-35)
- (18) 특정 해외 자선기금(s 30-80): 저개발국 지원 목적의 자선기금으로 호주 국제청의 승인을 받은 것
- (19) 문화단체 등록부에 등록된 문화단체(s 30-100)
- (20) 유언, 신탁에 의해 설립된 기금으로서 위의 기금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s 30-15)
- (21) 등록된 정당에 대한 기부(s 30-15): 100달러 한도 내 공제, 주 및 준주의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 대한 기부과 기업의 기부는 1,500달러까지 공제 가능(s 30-15)
- (22) 폭력 등 유해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면세단체로서 등록된 것(s 30-45)
- (23) 공공 엠블런스 서비스와 그것을 위한 공공기금(s 30-20)
- (24) 주와 준주의 소방서 조직(s 30-102)
- (25) 공립 장애인학교(s 30-25)
- (26) 손상된 전쟁기념물 모수 기금
- (27) 자연재해 및 인재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립 자선단체를 위한 공공기금
- (28) 동물 단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선기구

(29) 공립 자선단체와 유사한 성격의 자선단체로서 건강 증진과 유해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30) 장학금과 교육에 대한 포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금

이상에서 열거한 특성을 가진 단체들에 2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그 기부금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들 단체 외에도 ITAA97 s 30-15에서 30-100에 열거된 특정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다. 사업 및 고용 관련 비용 공제

1) 사업비용 공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assessible income)의 총액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 등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공제는 일반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되는데, 특별공제는 앞서 설명한 인적공제, 기부금 공제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법률로 정해진 규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공제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업비용 및 고용비용 공제는 일반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과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말한다. 과세대상 소득은 임금, 사업소득, 사용료 등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비용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특정 비용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데, ① 자본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가사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 ② 비과세-비면세 소득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 ③ 그 외에 소득세법(ITAA97과 ITAA36)에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규정된 것이 그러하다. 자본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자본이득세와 관련하여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 공제는 허용되며, 그 외에 특정 자산의 경우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용과

자본비용의 구분은 명확하지만 건물 등 고정자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과 같이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건물의 수리나 개·보수를 통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과 같은 성격의 비용은 자본비용으로 간주되며 사업용 자산을 사업에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리·수선 등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간주된다. 사업용 건물의 구입비는 자본비용이지만 임대료는 사업비용으로 처리된다.

사업비용 공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 시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법인세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기본적 원칙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공제항목별 자세한 내용과 특성은 제Ⅱ장의 법인세에 대한 설명에서 기술한다.

2) 고용 관련 비용의 공제

피용자가 직업을 유지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그 피용자의 과세신고 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은, 과세대상 소득(AI)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본비용이나 사적인 효용 증대를 위한 비용·가사를 위한 비용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생계에 필요한 공구(tools of trade) : 건축 공사장 인부나 목수의 수공구 등
- 설비 : 업무용 계산기, 컴퓨터, 전화 등
- 증정품, 광고비: 부동산업자의 광고용 선물비 등
- 여비, 자기 교육비, 자택사무실 경비 : AI 창출에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자기 교육비의 경우 250달러 초과분만 공제
- 접대비 : 식사비·오락비·스포츠 비용·여행경비 등을 모두 포괄하는데, AI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제 허용(ITAA97 Div. 32: s 32-1에서 32-90)
- 전화비
- 질병보험료

- 조세관련 비용 : 납세협력비용
- 비서 용역 경비

의·식·주에 대한 비용, 자녀양육비, 건강관련 경비는 일반적으로 고용상태 유지를 위해 소요된 경비로 보지 않는다. 단, 의상비의 경우 명확하게 소득 창출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6. 세율체계

헌법에서 각 개별 세법은 하나의 이슈만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ITAA36과 97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소득세율은 독립된 법 ITRA(Income Tax Rate Act)에서 규정한다. 또한 호주에서는 세법상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데, 세율체계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다른 세율체계를 적용한다.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체계를 보면 소득구간을 4개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체계로 되어 있다. 세율체계가 누진세율체계로 되어 있어 납세자는 소득을 분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표 2-1-6〉 개인소득세 세율체계

2009/10년			2010/11년		
과세소득 (A)	A에 대한 세금	A 초과분 세율(%)	과세소득 (A)	A에 대한 세금	A 초과분 세율(%)
6,000	0	15	6,000	0	15
35,000	4,350	30	37,000	4,650	30
80,000	17,850	38	80,000	17,550	37
180,000	55,850	45	180,000	54,550	45

2009/10년의 세율 구간과 세율을 보면 처음 6천달러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3만 5천달러까지는 6천달러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율로 과세한다. 3만 5천달러에서 8만달러의 구간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30%, 8만달러와 18만달러의 구간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38%, 18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11년에는 세율구간과 세율을 약간 조정하여 3만 7천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8만달러 초과 18만달러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3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소득세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위의 세율구간과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득의 변화가 심한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게는 지나친 세부담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 몇 년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납세자가 1차 생산자인 경우 당연도와 이전 4년을 합하여 총 5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작가·발명가·공연예술가·체육인·제작자 조합의 경우에는 4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과세한다¹⁷⁾.

미성년자에게 소득을 분할하여 귀속시킴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10년의 경우 미성년 납세자의 자본이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416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총액에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위 표에 나타난 소득세 외에도 납세자들은 의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과세소득의 1.5%인데, 최저소득층(2008/09년의 경우 소득 1만 7,794달러 이하)에게는 면제하고 그 다음 계층(1만 7,794달러 초과 2만 934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10% 감면한다. 한편 고소득층에게는 가중하여 부담을 하도록 하는데 과세소득이 7만 3천달러(부부 합계소득 14만 6천달러) 이상이면서 개인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소득의 1%를 더 징수한다. 자녀가 있으면 가중 부담하는 기준금액이 올라간다. 2010/11년에는 과세소득이 9만달러(부부의 경우 18만달러)를 초과하고 12만달러(24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의 1.25%를 가산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고소득자에게는 1.5%를

17) 평균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제Ⅱ장의 법인세 조세특례에 대한 설명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가산하여 부과할 예정이다.

7. 소득세 행정

가. 신고납부제도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비거주자를 포함하여 모든 소득 발생의 주체는 납세자번호(Tax File Number) 또는 호주사업자번호(Australian Business Number)를 가져야 하며,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세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월별, 분기별 또는 1년에 한번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반드시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통상적인 과세기간은 당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개인이 다른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신고의무 기한은 과세기간이 지난 후 90일 이내 즉, 10월 31일까지이며,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면 미리 ATO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개인, 파트너십, 신탁은 법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기한 후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호주의 세무신고 제도는 자진신고납부(Self-assessment)를 기초로 하고 있어 일단 신고를 하면 세무당국에서는 신고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성실신고로 간주하고 동 신고내용을 근거로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과세신고 시에는 제한된 정보만 서식에 맞춰 제공하면 되지만 납세자는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근거자료 및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종 공제에 대해서도 공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기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GST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인 납세자는 개인소득세와 별도로 사업체의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를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GST 사업자가 아닌 납세자는 필요한 경우 분납보고서(Instalment Activity Statement: IAS)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납세의무와 납부세액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RBA(Running Balance Account)를 설치·운영하며, BAS나 IAS 보고를 받으면 납부세액과 환급액을 RBA에 기록·수정한다.

나. 소득세 신고

국세청은 법률에 의해 매 회계연도 말에 납세자에게 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한다. 납세자는 이에 부응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개인은 벌금을 납부하거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일정 규모의 과세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2009/10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 과세소득이 6천달러 이상인 호주 거주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특정한 호주 정부 연금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며, 과세소득이 1만 4천달러 이하인 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급여나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자,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이전 연도의 손실을 공제받으려 하는 자, 보고해야 할 부가급여가 급여명세표에 명기된 자, 배당세액 공제한도 초과분의 공제를 받기 원하는 자, 자녀의 보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
- 18세 이하의 미혼자로서 자신이 일하여 벌어들인 소득 외의 소득이 3천달러 이상인 자
-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거주자 여부는 불문)
- 신탁재단의 수혜자로서 소득이나 손실이 있는 개인, 파트너십의 순소득이나 손실에 대해 자신의 지분이 있는 개인으로서 그 신탁재단이나 파트너십이 호주에서 제1차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거주자 여부 불문)
- PAYG 납부요약서에 보고해야 하는 부가급여가 있는 개인
- 1년의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만 호주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인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이 500달러 이상인 개인
- 비거주자로서 이자, 배당, 사용료 등 PAYG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호주 원천의 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개인

-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계좌(First Home Saving Account: FHSA)를 보유한 개인으로서 FHSA에 자신도 자금을 투입하고 정부의 보조금도 받는 파트너십과 신탁의 경우 납세의무는 개별 파트너와 신탁 수혜자가 부담하지만 파트너십과 신탁도 파트너십/신탁 단위에서의 총소득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은 자신의 소득세 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 지급액과 관련된 원천징수 내역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업연금 기금과 ADF(Approved Deposit Funds), PSIS(Public Service Investment Society)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된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고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 개인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드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의 그해 소득에 대한 제출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으나 다음해 5월 15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인회계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액수에 따라 개인별로 신고기한이 다르다. 보통 다음해 3월 31일 또는 5월 31일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6년부터 우체국을 통한 express tax pack이 없어지면서 개인소득세 신고방법은 2가지만 존재한다. 그 중 첫 번째는 신문, 잡지 등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무료 배포하는 세금신고안내책자(tax pack)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안내책자에는 신고양식과 작성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고양식의 기입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처리에 4주 정도 소요된다. 다음으로 온라인 신고 방법인 전자세금신고(E-tax)를 들 수 있는데, 현재 개인소득세 신고의 7할 정도가 전자세금신고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www.ato.gov.au)에 접속해서 무료로 내려받기를 한 후 차례대로 하나씩 기입해 나가면 된다. E-tax는 서류보다 훨씬 쉽고, 처리속도가 빠르며, 오류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오류발생 시 자동으로 적발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시스템이어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으며 2주 내에 환급이 된다. 또 즉석에서 세액과 환급액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직접 소득세를 신고하려는 개인에게는 E-tax가 권장된다. 하지만 모든 오류가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전자신고는 세무대리인이 모뎀을 통해 국세청에 연결하여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하

고 그 외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tax를 통해 개별 납세자가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신고 대상을 보면 소득세의 경우 개인이나 파트너십·신탁·법인 기업연금기금 등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가급여세와 부가가치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예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를 위임하고 전송된 정보에 동의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자신고에는 전자서명이 필요한데, 이 전자서명은 국세청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서 전자서류 작성에 사용되는 유일한 신원증명(identification)이 된다 (*Practical Statement* PS LA 2005/20).

피용자의 경우 급여를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세금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종업원이 실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납세액과 임금수령 시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세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통 원천징수율이 실제 세율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 신고 전에 사업주에게 원천징수내역서(payment summary)를 요구하면 원천징수액과 회사 정보를 비롯한 세금신고에 필요한 각종 기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고용주는 매년 6월 30일 이후에 종업원에게 일한 기간 동안의 총급여와 총세금이 적힌 급여명세서(payment summary)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종업원이 이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신고기간(매년 7월 1일~10월 31일)에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 후 5~10일 이내에 환급이 완료되며 신고기간 전후 즉, Early Leaving Assessment로 신고할 경우에는 약 4~6주가 소요된다¹⁸⁾.

과세신고 시에는 제한된 정보만 서식에 맞춰 제공하면 되지만 납세자는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근거자료 및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종 공제에 대해서도 공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기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세청장은 1년 중 어느 때라도 그 해의 소득에 대해 또는 다른 특정한 기간의 소득에 대해 상세(further and fuller)신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나 자

18) Early Leaving Assessment는 신고서 제출기간 이외에도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서 이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료,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ITAA36 s 162; 163). 납세자는 신고서에 그 해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이익, 그리고 자본이익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부분 적용되는 일상적인 면제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작성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방법을 설명하는 소책자를 만들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데, 개인납세자의 경우 TaxPack에 그러한 내용들과 신고서식이 담겨져 있다. 법인은 Form C를 작성하여 신고하는데, LP(Limited Partnership)와 CUT(Corporate Unit Trade), PTT(Public Trading Trust)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Form C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리고 연금기금은 Form F, 파트너십은 Form P, 신탁은 Form T를 이용한다.

국세청은 사전에 즉, 소득세부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이전에 신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납세자가 제출한 것을 그대로 받으며,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평가 시 신고된 정보를 정확한 정보라고 믿고 평가를 수행한다(ITAA35 s 169A). 신고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예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규 신청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두설명(oral ruling)이나 서면 권고(written advice)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질의를 하거나 예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고서에는 납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서명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public officer)가 서명한다.

개인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그 자료를 근거로 세금평가를 하여 세부담을 결정 통보하게 된다. 그런데 법인과 연금기금, ADF(Approved Deposit Funds)와 PST(Pooled Superannuation Trusts)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담아 세무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신고 자체가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 국세청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고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한 자신이 작성한 신고서에 나타난 세금을 납부한다. 이러한 납세자를 정식신고자(full assessment taxpayers: FAT)라고 한다. FAT의 경우 ① 2년 이상 지속된 법인이나 연금기금은 개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10월 31일까지 납세신고를 해야 하고, ② 중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로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다. 연간 소득이 1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투자액이 5천만달러 이상인 기업과 연금기금, 파트너십, 신탁이 이에 속하며, 규제를 받지 않는 모든 연금기금과 PST도 1월 15일이 적용된다. ③

그 외의 다른 기업과 연금 기금은 2월 28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장은 특정 납세자에게 신고기한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는데, 통상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장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 신고할 수 없는 군인 등이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에 속한다. 특정 납세자에 대한 납세기한 연장과는 별도로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신고기한을 조정한다. 조정·연장된 경우를 포함하여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이 조정·연장된 경우에는 조정·연장된 날로부터 벌과금을 계산한다.

납세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이 도달하기 전에 적절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짧은 기간의 연장은 대부분 허용된다. 예를 들면 세무대리인이 개인 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하는 데 해당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로부터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십과 신탁의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징수제도

호주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는 Pay As You Go Withholding(PAYG W)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한국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는 이 제도에 의해 급여로부터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직원 외에 사업장에 사업자등록번호(ABN)를 주지 않는 공급자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2000년 GST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PAYG 대신 Pay As You Earn(PAYE)으로 불리웠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월별 혹은 분기별 활동보고서 작성 시 고용인과 관련하여 그동안 세무서의 지침서에 따라 고용인에게 지불되어야 할 총 임금에서 공제한 PAYG W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한다.

정확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위해 고용이 개시될 때 고용주는 고용인과 함께 개인 납세자번호 신고서(Tax file number declaration)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인 납세자번호 신고서를 통하여 세무당국은 새롭게 시작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통보받게 되며, 고용주는 고용인의 개인 납세자번호와 여러 가지 원천

징수에 영향을 주는 정보(예를 들어 해당 고용주에게 소득세 면세한도(6천달러)를 신청하는지, 다른 세무상의 혜택을 원천공제 시 신청하는지 등)를 알 수 있게 된다.

고용주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4일 이내에 피고용인에게 지급된 총 임금과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금액이 적힌 지급요약서(Payment summary: 기존 Group certificate)를 교부해야 하며, 8월 14일까지는 총 고용인 관련 PAYG W summary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얻는 납세자는 PAYG Instalment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PAYG Instalment 납부는 연말에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내는 것으로 GAS나 IAS를 통해 지불하게 된다.

라. 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기록의 유지, 정정 및 이의신청

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어느 방법으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든 정확한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

- TaxPack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
- 가족이나 친구 등의 도움을 얻어 작성
- 등록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서 작성(수수료는 세금공제가 됨)
- 소득세 신고를 돕는 TaxHelp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다. 세무서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TaxHelp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가까운 TaxHelp Centre는 132 861로 문의한다.

모든 세무 회계와 관련된 거래내역, 증빙서류, 장부, 신고내용 등은 반드시 영어로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5년간,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진신고(Self-assessment)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모든 신고와 보고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세무당국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기존에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 세무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세법에서 정한 보고·신고의 태만, 허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벌금의 부과 등 제재 조치가 따른다.

이미 신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곧 서면으로 동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한 것과 상이한 ATO의 결정통보(Notice of Assessment)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는 관계기관(The Commonwealth Ombudsman)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II. 법인세

1. 서론

호주의 법인세율은 30%로 거주법인과 비거주법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율은 30%로 유지되어 왔다. 법인은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을 포함한 주식회사와 임의단체를 의미한다.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유한파트너십을 제외한 파트너십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파트너십의 소득은 지분을 소유한 파트너들에게 배분되어 파트너 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법인은 전세계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며, 비거주법인은 호주 원천소득에 한하여 그리고 과세 대상이 되는 호주 부동산(Taxable Australian Real Property: TARP)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한다. 넓은 의미에서 TARP는 호주 부동산과 호주 부동산에 대한 간접 지분(indirect interest)을 포함한다.

호주 법인에게는 법인 간 배당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소득 공제를 허용하며, 자본이득세의 이연이 허용되고, 과소자본세제 등 여러 가지 조세회피 조항이 적용된다.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국외소득에 대해 호주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도 적용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호주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원천소득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 규정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해외지사는 독립된 주체로 보지 않는데, 외국은행 지점과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에 한해서는 지점을 본점과 구분하여 독립된 주체로 보는 특별 규정이 있다(ITAA36 Pt III B).

호주 법인 중 협동조합, 신용조합, 특허권 수집조합, 상호협동조합(friendly society), 유한파트너십, 생명보험회사, RSA 공급자, 피지배 외국법인, SMEs

PDFs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특별히 취급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며, 국외 기업과 호주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신고에 관한 사항은 매년 관보(Gazette)에 공고된다(ITAA36 s 161). 신고대상자는 호주 원천소득이 있거나 해외소득이 있는 호주 법인과, 호주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된다. 비공개 호주법인은 과세소득이 416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납세 신고가 허용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절차가 없고 신고서가 평가서가 된다. 납세신고 기일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2. 납세의무자

법인은 호주의 과세 목적상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거주 또는 비거주 법인과 둘째, 공개 또는 비공개 법인이 그것이다. 호주에 설립하거나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호주에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의결권이 호주의 거주자에 의하여 행사되는 경우에 호주의 거주법인이 된다. 거주법인과 비거주법인의 차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호주 거주자는 전세계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호주원천소득과 호주관련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특정 급여·배당·지점소득을 제외하고, 거주 법인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은 호주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국외소득과 관련된 비용과 공제가 국외원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즉, 손실)은 다른 항목의 국외원천소득과 상계할 수 없으며 구분하여 계산한다. 호주 거주자가 지급한 외국납부세액은 호주에서 공제(Foreign Tax Credit)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액은 국외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호주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즉, 초과공제액은 5년 후까지 이월할 수 있으나, 소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주법인과 비거주법인은 다시 공개법인(public company)과 비공개법인(private company)으로 구분된다. 과세목적상 공개법인은 (i) 주식이 호주 주식시장 또는 다른 곳에 상장한 기업, (ii) 협동조합, (iii) 공익법인, (iv) 상호생명보험회사, 약사협동조합(a friendly society dispensary), 공기업, 공개기업의 자회사 등을 의미한다

(ITAA97 s 995-1(1)). 20명 이내의 주주가 주식, 투표권, 이익배분권의 7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개기업이 되지 못하며, 투표권이나 배당권이 가변적이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공개법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비공개 법인은 공개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비공개법인의 주주, 이사, 주주와 이사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이 적용된다. 더욱이, 비공개법인은 법인에게 지급되는 비공개 배당에 대하여 회사 간 배당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과세소득

가. 과세소득의 정의, 산정체계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로열티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의 과세소득은 총수입에서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 세무상 공제가 인정되고 있는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즉, 재무회계상 손익으로부터 세무상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과세소득 계산상 재무회계 처리와의 일치가 요구되지는 않으나 채권의 대손상각에 대해서는 회계상 손금 처리가 필요하다.

세부담을 계산하는 과정을 도표로 그려서 설명하면 <표 2-II-1>과 같다. 먼저 기업의 회계상 나타나는 순이익을 계산한다. 즉 기업의 회계장부를 종합하여 총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계산한다. 그 다음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더할 것은 더하고 차감할 것은 차감한다. 이러한 조정 항목 중의 중요한 조정이 감가상각인데, 기업 회계에서 계상한 감가상각은 비용에서 제외한다. 이는 순이익에 가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공제한 것 중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순이익에 가산하여 조정된 순이익(adjusted net profit)을 계산한다.

〈표 2-11-1〉 법인에 대한 순세액 계산

	총소득(Total income)
차감(-)	총비용(Total expenses)
=	영업이익 또는 손실(Operating profit or loss)
가감(+, -)	임시 항목 및 조정 항목 ¹⁾ (Extraordinary items and reconciliation items)
=	과세소득 또는 손실(Taxable income or loss)
적용	적정 세율 ²⁾ (Relevant tax rates)
=	총세액(Gross tax)
차감(-)	환급/세액상계,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
=	납부 세액(Tax payable)
차감(-)	기타 환급가능한 세액공제(Other refundable credits)
=	순세액(Net tax)

주: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조정

2) 일반적인 법인세율 30%, 생명보험회사, 퇴직연금, PDFs 등 특정법인에는 다른 세율 적용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 Taxation statistics 2005-06, 2008.3.

조정된 순이익에서 면세 대상 소득을 공제하고 세법상 감가상각 허용액을 공제한다. 그리고 기업회계에 반영되지 않는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소득(TI: Taxable Income)을 계산한다. 과세소득이 결정되면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산출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tax payable)이 된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30%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기업에는 이와 다른 특정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주는 PAYG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분기별로 중간예납 성격의 분할 납부를 하고 연간 납세 신고 시 최종세액을 결정하고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특정 급여, 배당, 지점소득을 제외하고, 거주법인 또는 개인에 의한 국외원천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은 4가지— ① 이자소득, ② 비활동적 소득(배당, 임대료), ③ 해외금융소득, ④ 기타 국외원천소득—로 분류되며, 전세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피지배외국법인과 비거주신탁의 일정소득은 발생주의에 따라 과세된다. 즉, 동 소득이 해외거주법인 또는 신탁의 소득이 되는 시기에, 호주의 주주에 동 소득이 귀속되고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5인 이하의 호주인 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함께 외국법인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 지배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피지배외국법인(CFC)' 이 된다. 호주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은 ① '피지배외국법인' 이 어떤 국가(예, 경과세국)에 거주하는지, ② 어떠한 소득이 적극적 활동소득(active income) 또는 기타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피지배외국법인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피지배외국법인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피지배외국법인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호주거주자에게 귀속된다.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외국투자기금에 투자한 경우, 당해 과세년도에 증가한 투자금액은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투자자금은 외국신탁과 주로 배당, 이자, 기타 비활동적 소득이 있는 외국회사(지배외국회사 제외)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한다. 동 조치에 따라 발행인이 비거주자인 생명보험도 과세된다. 단, 특정 투자업, 부동산업, 금융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을 제외한 활동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투자기금의 지분이 5만달러를 넘지 않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기간 호주 체류자가 취득하는 이자에도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회사가 수령하는 배당금 수입(세금차감 전의 금액)은 과세소득에 산입된다.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거주회사로부터 거주회사에 지불된 세전이익의 배당(unfranked

dividend: 과세되지 않은 이익으로부터 지불된 것)은 2003년 6월 30일까지 100% 소유의 그룹 내에서 지불되는 것 및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세무상 연결그룹과 회사 간에 지불되는 것을 제외하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배당 임putation 제도(dividend imputation system)하에서는 호주의 회사가 호주에서 과세가 완료된 이익을 배당(배당으로 간주되는 주식 배당을 포함)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를 받을 권리를 거주자인 개인주주에 이전하는 것이 인정된다. 즉, 과세가 완료된 이익의 배당인 적격 배당(franked dividend)의 지불을 받은 거주법인 주주는 그 세액공제를 받을 권리를 한층 더 자사의 개인 주주에 이전하는 것이 인정된다. 비거주자에 지불되는 적격 배당은 배당 원천징수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¹⁹⁾.

라. 특정 기업의 과세소득

1) 협동조합(Co-operative companies)

협동조합은 1인당 주식의 소유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상장이 금지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1) 회원들에게 판매하거나 배분하기 위한 상품의 구입
- (2) 회원의 상품 판매 또는 배분
- (3) 회원의 상품 보관, 매매, 포장 및 가공
- (4) 회원에게 용역 제공
- (5) 회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회원에게 대부(주택이나 사무실 등 업무용 부동산 구입자금)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 내용을 보면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수입은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회사와는 달리 과세대상 소득 중에서 일부를 사업 수행의 결과에 근거하여 회원들에게 보너스나 리베이트 지급하는 경우, 또는 이자나 배당을

19) franked dividend는 세후배당 또는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 배당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호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가능한 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필요한 경우에는 뜻을 살려 번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제가 허용된다(ITAA36 s 120(1)). 또는 협동조합의 선택에 의해 과세대상 소득 중에서 회원에게 배분한 금액에 대해 배당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을 합자회사나 주식회사(a joint stock company)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을 민영화하거나 매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원에게 예기치 않았던 지급을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GT를 적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특별 규정이 존재한다.

2) 신용조합(credit union)

신용조합은 명목상 과세소득이 5만달러에 미달하는 경우를 소규모 신용조합이라고 하고, 5만달러를 초과하나 15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중규모 신용조합, 1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대규모 신용조합으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한다.

소규모 신용조합의 경우 회원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하며(s 23G), 대규모 신용조합은 정상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그 사이에 있는 중규모 신용조합의 경우 실효 세율이 0%에서 최대 대규모 신용조합에 대한 세율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슬라이딩 세율체계(a sliding scale)를 적용한다. 이 경우 최대 명목한계세율은 45%가 된다. 중규모와 대규모 신용조합이 협동조합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과세한다.

3) 특허권 조합(copyright collecting societies)

특허권 조합(copyright collecting societies)이란 특허나 면허, 공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나 지급액을 징수하여 그 권리의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말한다(ITAA97 s 995-1(1)). 즉, 조합의 회원인 특허, 면허 등 권리를 가진 자를 대신하여 그것을 관리하는 조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조합은 총수입에서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특허·면허권자에게 배분한다.

특허권 조합은 법적으로 임의 재단(a discretionary trust)으로 간주되지만 세법

에서는 특별한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그 내용을 보면 특허권 수입은 조합의 단계에서는 과세가 면제되고 특허권 수입이 아닌 경우에도 다음 (1)과 (2) 중 적은 것에 한해 조합 단계에서 과세를 면제한다(ITAA97 s 51-43(2)(a)).

(1) 특허권 수입과 특허권 수입이 아닌 수입 합계의 5%

(2) 500만달러 또는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된 금액(s 51-43(2)(a))

특허권 수입이 아닌 수입으로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정상적으로 과세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회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회원에게 배분된 것은 회원에게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협회 이사에게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원에게 배분된 특허권 소득과 그 외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며, 협회는 회원에게 각자에게 귀속되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4)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는 광의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데, 이익은 모든 관리수수료, 보험 수입,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을 포괄한다.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을 종류(class)별로 구분하여 각 종류별로 세부담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는 각 종류별 세부담을 종합한 총 세부담에서 공제한다. 과세소득의 종류는 통상적인 소득과 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연금기금/FHSA 소득으로 구분된다. 통상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기업연금/FHSA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 종류의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은 해당 종류의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ITAA97 s 320-134).

통상적인 소득의 경우 ITAA97 s 320-137(2)에 규정된 기업연금/FHSA 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소득에서 s 320-137(4)에 규정된 기업연금/FHSA 소득 관련 공제가 아닌 다른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경상소득에 대한 조세손실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한다(s 320-139). 과세대상 소득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부과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설정수수료, 시간에 따라 부과하는 회계 수수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법에 의해 설립된 연금기금과 FHSA의 과세소득은 해당 과세대상 소득에서 해당 소

득에 적용되는 공제와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대상 소득은 ① 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연금기금/FHSA 자산의 투자소득, ② 당해 연도에 법에 기업연금기금/FHSA 자산 풀로 이전된 자산의 이전 가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생명보험료, ③ 회사에 의해서 금전이 아닌 기업연금기금/FHSA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ITAA97 s 320-200에 의해 자산이 매각되거나 재구입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그 회사의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 금액, ④ ITAA97 s 320-15(db), (i) 또는 (j)에 의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 것, ⑤ 상장 투자회사로부터의 간접적 배분을 규정한 ITAA97 s 115-280(4)에 의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 것, ⑥ RSA(Retirement Saving Accounts)에 귀속되는 과세대상 소득을 포괄한다. 이들 소득에 대한 공제가능 비용은 위 ①~③과 관련된 비용과 s 115-280(1)에 규정된 비용으로서 상장회사 주식인 기업연금/FHSA 자산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액의 1/3, 회사가 ITAA97 s 115-215(6)에 의해서 기업연금/FHSA와 관련하여 획득한 자본이득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순 자산이득에 귀속되는 신탁 금액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위 과세대상 소득 중 ④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통상적인 소득 외에 당해 연도의 생명보험료, 재보험을 통해 수취한 금액으로서 기업연금/FHSA를 제외한 생명보험 보상금 청구 위험요소와 관련된 것, 재보험 계약하에서의 재보험료 및 재보험 수수료 환급액, 회사에 의해 기업연금/FHSA로 이전된 자산의 이전 가치, 과세대상 기여금에 대한 세부담의 이전에 대해 규정한 ITAA97 s 295-260하에서 합의서에 규정된 금액, 규정된 상환연장 금액(1983년 6월 이후의 ETP 상환연장 금액으로서 비과세된 부분)으로서 거치연금이나 즉시연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금액 등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생명보험 회사의 소득 중 1998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연금/FHSA가 된 자산에 귀속되는 경상소득 또는 법정소득은 면세된다. 그리고 즉시연금을 지급하는 RSA에 입금된 금액은 면세된다.

또한 일부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도 아니고 면제소득도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별도의 비과세 자산 즉, 즉시연금과 현행 연금사업,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업

연금기금을 뒷받침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경상소득 또는 법정소득

- (2) PST(Pooled Superannuation Funds)의 단위를 처분하여 받는 금액
- (3) 호주 펀드나 국외 펀드로부터 발생한 국외 원천소득 중 외국의 고정사업장이 발행한 보험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국외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부분
- (4) 공제회에 의해 창출된 소득으로서 수익증권·사망보험·질병보험·대부분의 장학보험으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귀속되는 소득

5) RSA 공급자

승인된 예금수취 기관(ADI:Approved Deposit Taking Institute)으로서 개인 연금 저축(Retirement Savings Account)을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

- (i) 소득 중 개인연금계좌 소득은 15%,
- (ii) FHSA 부분도 15%,
- (iii) 그 외 일반적인 소득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RSA 소득이 기업연금/FHSA와 함께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6) 국외 다국적 기업(Foreign Multinational Enterprise)

국외 거주자인 모회사에 지급한 배당 중 포트폴리오 배당이 아닌 배당으로서 프랭크되지 않은 지급액은 공제가 가능하다(ITAA36 s 46FA). 프랭크되지 않은 것이란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배당액을 말한다. 포트폴리오 배당이 아닌 배당이란 지분이 10% 이상인 주주에게 배당되는 배당을 말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호주 기업이 '프랭크되지 않은 비직접투자 배당 계정'을 만들어 기장을 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지원 제도가 있다. 이 지원을 받는 지역본부는 설립비용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이 때 설립비용은 자본적 비용과 수입 비용(revenue costs)을 모두 포괄한다.

7) 분할소유법인(strata title bodies corporate)

분할소유 법인은 과세목적상 공개법인으로 본다. 건물을 층별로 또는 같은 층의 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8) 클럽, 협회(club, association)

법인으로 설립된 클럽이나 조직, 협회는 과세목적상 법인으로 본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클럽이나 조직, 협회로서 파트너십이 아닌 것도 역시 과세목적상 법인으로 본다. ATO의 오래된 관행에 따르면 회원이 납부한 불입금·기부금·클럽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회원이 납부한 대가 등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은 클럽이나 조직·협회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상호성 원칙에 근거하여 외부로부터 투입된 금액만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3. 비용, 손실의 공제

가. 사업비용 공제

1) 사업비용 공제의 기본 원칙

법인세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과 소득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과세대상 소득은 임금·사업소득·사용료 등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비용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특정 비용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데, ① 자본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가사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 ② 비과세-비면세 소득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 ③ 그 외에 소득세법

(ITAA97과 ITAA36)에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규정된 것이 그러하다. 자본비용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자본이득세와 관련하여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 공제는 허용되며, 그 외에 특정 자산의 경우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비용과 자본비용의 구분은 명확하지만 건물 등 고정자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과 같이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건물의 수리나 개·보수를 통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과 같은 성격의 비용은 자본비용으로 간주되며 사업용 자산을 사업에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리·수선 등을 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간주된다. 사업용 건물의 구입비는 자본비용이지만 임대료는 사업비용으로 처리된다.

독립적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그 거래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진 거래인 경우, 그리고 사업 또는 상업적 과정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공제가 허용된다. 비상업용 사업 활동에 소요된 경비는 공제할 수 없는데,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과세가능 소득이 2만달러 이상이거나 사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50만달러 이상인 경우, 사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가치가 10만달러 이상인 경우, 지난 5년 중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개 연도 이상에서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활동이 상업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는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공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나중에 수행할 용역에 대해 미리 지불한 비용을 10년에 걸쳐 분할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외 항목에 대해서는 ITAA36 s 82KZL에서 82KZO에 규정되어 있다.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가지 이상의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중 공제규모가 큰 것을 선택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용으로 공제된 것은 자본이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세액공제와 비용공제의 중복은 허용된다.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여 발생한 사업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는 기한 없이 무한정 허용된다.

공제제도의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회피 전략이 포함된 경우에

비용공제를 부인하는 규정이 있는데, 조세회피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포함된다.

- 과세이연전략(ITAA36 s 82KK) :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납세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미래에 수행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하여 납세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선지급 전략(ITAA36 s 82KJ) :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자본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자, 임대료, 기타 비용을 선지급하여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출보상체계(expenditure recoupment scheme)(ITAA36 s 82KL) : 비용을 지불하고 그 지불에 대해 비용공제를 한 후 나중에 보상을 받음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 공제항목의 내용과 특징

다음에서는 주요 항목별로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항목들에서 사업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내용들을 모두 열거하지 않고 호주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사업비용이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상경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보면 재고 판매, 재산 임대, 직원채용, 회사이미지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광고비도 사업비용에 포함되며, 광고·선전을 위한 유흥오락비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기업 결합과 관련된 재평가 비용은 사업비용이라기보다는 조세비용(tax expenditure)으로 간주되며, 입찰비용은 통상적인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비용에 포함된다.

자산을 구입하거나 재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데 사용된 비용은 자본비용으로 간주되어 통상적으로 사업비용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없는데, 몇 가지 예외가 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감가상각비와 투자공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비용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유형자산을 구입한 경우 즉, 10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유형자산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비용

은 자산비용이 아니라 사업비용으로 간주하여 공제한다. 그 외에도 재산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감가상각제도를 설명할 때 보다 자세하게 검토한다.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지불한 보수는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경우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과도한 지급에 대해서는 공제가 부인된다. 통상 고용주가 피용자를 위해 지불한 보험료도 공제가 허용되며, 자영업자가 자신을 위해 가입한 개인 질병보험의 보험료도 공제할 수 있다. 그 외에 고용주가 피용자를 위해 지급한 연금기여금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임대료도 공제할 수 있는 비용에 포함된다. 투자경비나 손실의 경우 배당과 같은 투자소득이 있으면 관련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경비란 징수비, 회계 관련 비용, 비서에 지불한 비용 등을 의미한다. 투자손실은 투자를 업으로 하는 투자업자의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되며 단순투자자의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이자지급액은 공제가 허용되며,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종업원 급여와 관련하여 납부한 급여세 및 기타 사업 관련 세금, 정부에 납부한 관세, 지방정부에 납부한 토지세는 소득세 등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나. 감가상각

1) 감가상각 대상 자산

호주에서는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자본비용으로서 사업비용과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목적상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호주 세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모아 UCA(Uniform Capital Allowance) 제도라는 명칭하에 ITAA97 Div 40에서 규정하고 있다. UCA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감가상각인데, 감가상각은 자본지출로서 일반적으로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 자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목적(taxable purpose)으로 사용되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자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함은 과세대상 소득(AI)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탐사·시추, 광산 개발,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AI를 창출하는 데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과세대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도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되며, 피용자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여 보유하는 자산도 감가상각비 공제 대상이 된다. 여가 시설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는데,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부가급여세 대상이 되는 부가급여를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시킨다.

감가상각 자산은 사용 가능 헛수가 제한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으로서 토지와 재고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형재산 외에도 채광·채석·채굴 권리 및 정보, 지적재산, 내부개발 소프트웨어, IRU(Indefeasible rights to use a telecommunication system), 방송주파수 면허, 데이터캐스팅(datacasting) 면허, 통신시설 접근 권한 등이 감가상각 재산에 포함된다. 건물도 사용 가능 헛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비용은 자본비용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장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본다. 토지에 부착된 고정물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상각자산으로 본다. 상각자산의 가격은 ① 구입 가격과 ② 자산을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②에는 수송비 수입관세, 개·보수 비용 등이 포함된다.

2) 사용 가능 헛수와 상각방법

감가상각 자산의 사용 가능 헛수는 상각자산을 처음 사용한 연도에 과세신고를 하기 전까지 결정하면 되는데, 납세자가 사용 가능 헛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이 권고하는 사용 가능 헛수를 적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장은 매년 각 자산별로 사용 가능 헛수 권고안을 발표한다. 아주 예외적으로 법률에 사용 가능 헛수를 정해놓은 경우도 있다. 납세자가 사용 가능 헛수를 결정할 때에는 동일한 자산을 다른 납세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 가능 헛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실제 자산의 사용 가능 헛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여건이나 기타 환경이 변화되면 사용

가능 했수도 조정할 수 있다.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했수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인 특허의 사용 가능 했수는 20년이며, 이노베이션특허는 8년, 소특허는 4년이다. 이노베이션특허는 일반적인 특허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1년에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고안이나 기술공정의 개발 등에 대하여 보다 쉽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특허는 통상 특허발명만큼 고도의 발명성을 갖고 있지 않은 소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보호제도이다. 등록디자인에 대한 사용 가능 했수는 15년이다.

영화필름을 제외한 저작권의 사용 가능 했수는 저작권이 남은 기한이 되며, 남은 기한이 25년을 넘을 경우에는 25년이 된다. 일반적인 면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내부개발 소프트웨어의 사용 가능 했수는 4년이고, 주파수 면허와 통신설비 접근 권한의 사용 가능 했수는 그 면허의 기간이 된다. 데이터캐스팅 면허의 사용 가능 했수는 15년이다.

〈표 2-11-2〉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사용 가능 했수

상각 대상자산	사용 가능 했수
일반특허	20년
이노베이션특허	8년
소특허(petty patent)	6년
등록디자인	15년
저작권(영화필름 제외)	(a)25년과 (b)저작권의 남은 기간 중 짧은 것
면허	(a)25년과 (b)면허의 남은 기간 중 짧은 것
내부개발 소프트웨어	4년
방송주파수 면허	면허기간
데이터캐스팅 면허	15년
통신설비접근권한	권리기간

감가상각은 상각대상 자산의 가치를 사용 가능 했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각기간 동안 매년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상각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상각방법은 정액법(prime cost rate)과 정률법(diminishing value rate)으로 구분되고, 납세자가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선택은 대상 자산을 처음 사용할 때 하여야 하며,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다. 정액법은 상각자산을 처음 사용할 때의 가치(prime cost)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감가상각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매년 상각금액은 최초의 가치를 사용 가능 했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정률법은 매년 초의 감가상각 자산의 가치에서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상각자산의 잔존가치에 일정 비율 즉, 상각률을 곱하여 상각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상각률은 200%를 사용 가능 했수로 나눈 것이 된다. 2006년 5월까지 150%를 사용 가능 했수로 나눈 것을 상각률로 하였었는데, 이후 상각률을 상향 조정하였다. 2001년 이전에는 특별 가속상각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져 그 이후 구입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의 상각법 선택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당해 연도에 상각이 시작되는 자산의 상각법을 선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할 것인지, 정률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는 그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 (1)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이전 소유자의 상각법을 따라야 한다.
- (2) 소유권을 보유한 자는 바뀌었지만 이전 소유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가 계속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의 상각법을 유지하여야 한다. 판매후 리스(sale and lease back)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 (3) 저가 자산 풀(low-value pool)에 포함된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 (4) 저비용 자산(low cost asset)은 즉시 상각한다.
- (5) R&D에 사용된 자산은 별도로 정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한다²⁰⁾.
- (6) 앞의 <표 2-Ⅱ-2>에 나타난 무형자산은 이 표에 나타난 사용 가능 했수를 적용

20) R&D 자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즉시상각이 허용되는 저비용 자산이란 구입 가격이 300달러 이하인 것으로서 주로 사업수입 외의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ITAA97 s 40-80(2)). 즉시상각을 하려면 동 자산을 가치가 300달러를 초과하는 다른 자산의 부품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납세자가 보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과 합하여 총 가격이 300달러를 넘어서도 안 된다.

탐사 및 시굴 장비의 경우에도 그 장비가 광산 및 채석장의 탐사 및 시굴에 처음 사용되는 것인 경우 즉시상각이 허용된다(ITAA97 s 40-80(1)). 그러나 석유개발 시추에 사용되었거나 광산, 채석장, 유전에서 사용되는 것은 즉시상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일반적인 상각자산과 다를 바가 없으며, 소프트웨어는 내부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목적으로 개발한 경우에 모두 종합하여 풀(pool)을 형성하고 그 풀에 사용된 비용을 비용이 지불된 연도를 포함하여 2년에 걸쳐 40%씩,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20%를 상각한다. 소프트웨어가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 공제가 가능하며, 일단 소프트웨어 풀이 형성되면 그 이후에 지불되는 비용도 풀에 포함시킬 수 있다. 풀을 형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과세대상이 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해부터 4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저가 자산 풀은 가격이 낮은 자산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종합하여 하나의 풀을 형성하고 그 풀에 대해 일률적인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치가 1천달러 미만인 자산과 저비용 자산을 모아서 풀을 형성할 수 있으며, 풀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비용 자산을 풀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단 풀이 형성되면 이후 구입하는 저비용 자산도 모두 풀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시상각되는 저비용 자산과 원예식물, 소기업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R&D 자산은 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GST 대상 자산의 경우 자산의 가치는 매입세액공제 후 가격으로 한다. 매 자산별로 과세대상 목적에 사용되는 비율을 산정하여 그 비율만큼만 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며, 상각률은 37.5%이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풀에 포함된 자산의 경우에는 상각률을 50%(즉, 18.75%p) 가산한다. 전년도에 편입된 자산과 금년도에 편입된 저가 자산의 경우에는 상각자산의 가치에서 상품가격을 제외한 두 번째 요소가격(상품을 사

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소요된 운송비, 개보수비용 등)의 18.75%를 상각액에 가산한다.

다. 손실의 공제

1) 당해 연도 손실의 공제

금년도 손실에 대한 공제 제한은 ITAA97 Subdiv 165-B 즉, s 165-23에서 165-90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동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은 ① 소유권 지속 조건을 불만족하거나 동일사업 조건을 불만족하는 경우, ② 기업이 소유권이나 투표권을 획득하는 이유가 조세혜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²¹⁾.

1단계 : 지배권 변경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두 개의 기간으로 구분한다.

2단계 : 각각의 기간을 과세연도로 간주하고 해당기간의 손실을 공제하여 기간별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3단계 : 두 기간의 과세소득 합계에다 과세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적용해야 하는 소득과 비용을 가감한다.

그 외 금년도 손실의 공제를 제한하는 내용은 ITAA97 Subdiv 175-B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제를 부인한다.

- (1)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이 회사에 투입된 경우
- (2) 공제가 회사를 통해 동 연도에 취득한 소득을 은폐하는 데 사용된 경우
- (3) 회사가 소득이나 공제 혜택을 위해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회사 외의 자가 혜택을 받은 경우

초과 배당세액공제액을 조세 손실로 전환하는 경우는 s 36-55(2)에 규정되어 있다. 배당세액공제를 규정한 ITAA97 Div 207에 의하면 배당세액공제액이 당해연도의 동 세액 공제 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

21) 소유권 지속조건과 동일사업 조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전 연도 손실공제를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한다.

는데, 이러한 상황을 초과공제 상황이라고 한다. 초과공제 상황에서 초과공제액을 당해연도의 조세손실로 간주하는 것인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면제소득을 제외하고 해당 기업의 과세손실을 계산한다.
- (2) 배당세액공제액의 한도 초과액을 법인세율로 나눈다.
- (3) 위 (1)과 (2)의 소득을 합산한다.
- (4) 위 (3)의 결과에서 순면제소득을 차감한다. (3)의 결과가 순면제소득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당해 연도의 과세손실이 되어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 해에 과세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그룹 회사 간 손실의 이전

그룹 내 회사 간 손실의 이전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2003년 6월 30일 연결납세 제도의 도입으로 그룹 회사 간 손실의 이전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적자가 발생한 기업이나 순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외국 은행이거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호주 지점이면 아직도 손실의 이전이 가능하다. 이 규정하에서는 100% 지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기업의 집단 내에서 호주 기업의 손실이 다른 호주 기업의 공제가능 비용으로 이전될 수 있다(ITAA97 SubDiv 170-A). 그룹 내 기업 간 손실의 이전이 허용되는 조건을 보면, A 기업의 손실을 B 기업의 공제가능 비용으로 이전하는 경우

- (1) A와 B가 모두 호주 기업이면 둘 다 이중 거주자이어야 한다.
- (2) A나 B 중 어느 하나가 외국 은행이거나 비은행 금융기관의 호주 지점이어야 한다.
- (3) B의 과세소득이 0보다 커야 한다.
- (4) A와 B가 100% 지분소유로 규정된 기업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이는 두 기업 지분의 100%를 수익적으로 소유한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 전 기간에 걸쳐 소유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6) A와 B가 이익의 이전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3) 이전 연도 손실의 공제

손실은 일반적으로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전년도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데 있어 공제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ITAA97 Div 36). 손실의 이월공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 순면제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순면제소득이 있는 경우 면제소득에서 이전의 손실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면제소득이 0보다 크고 과세대상 소득이 과세 손실을 제외한 공제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면제소득에서 이월공제를 하여야 하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④ 위 (1)과 (2)에서의 선택이 초과배당세액공제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의 (i) 또는 (ii)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전 연도에 발생한 과세손실의 공제가 불가능하다.

- (i) ITAA97 s 165-12에 규정된 조건 즉, 기업의 소유주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Continuity of Ownership Test: COT)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ii) ITAA97 s 165-12에 규정된 조건 즉, 같은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Same Business Test: SBT)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COT 조건은 투표, 자본, 배당에 대한 권리의 50%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테스트 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테스트 기간은 조세 손실이 발생한 년도의 시작하는 시점부터 손실 공제가 이루어지는 연도의 말까지를 말한다. 기본적인 테스트는 투표권과 자본, 배당에 대한 권리 각각에 대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수익적 소유자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데, 좀 더 완화된 수정 테스트(alternative test)에서는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한 개인 또는 여러 명의 개인이 지배회사의 지분을 통한 간접소유를 통해 전체적으로 투표권과 자본, 배당에 대한 권리에 대해 50%의 지분을 소유하면 간접소유를 인정한다. 이 때 비영리법인이나 정부기관, 법적인 주체, 자선단체는 개인으로 본다.

SBT가 만족되면 COT가 만족되지 않더라도 이전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SBT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테스트 기간이 시작하기 직전에 운영 하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SBT 기간 중에 SBT를 시작하기 직전에 수행하지 않았던 사업으로부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거나(신사업 테스트(new business test), ② 이전에 하지 않았던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신거래 테스트(new transaction test)에는 SBT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SBT 기간은 ① COT를 충족시킨 가장 마지막 시기와 ② COT가 충족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i) 기업이 계속 존재한 경우에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시작부터 (ii) 손실 발생연도에 기업이 신설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소유가 분산된 기업은 COT와 관련하여 Division 166에 규정된 특별 규정이 적용 되는데, 여기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이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로서 주주가 50명 이상 이고 20명 이하의 주주가 투표권, 자본, 배당에 대한 권한의 75%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소유가 분산된 회사 외에 Division 166의 적용이 가능한 기업은 투표권, 배당에 대한 권리, 자본에 대한 지분의 50% 이상을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 ① 소유가 분산된 기업
- ② 간주 수익적 보유자(a deemed beneficial owner):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complying) 연금기금,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ADF, 특정 회사, MIS (managed investment scheme), 기타 s 166-245의 목적으로 규정된 기관
- ③ 비영리법인
- ④ 자선단체

이와 같은 소유형태를 테스트하는 시점은 손실이 발생한 연도가 시작하는 시점, 손 실을 공제하는 연도의 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중간 연도의 말, 그리고 기업 구조변화 가 있는 경우 그 변화 후가 된다. 여기서 기업의 구조 변화란 (i) 성사 여부와 관계없 이 기업 매수사자가 선언되는 것, (ii) 지분의 50% 이상을 포함하는 계약, (iii) 자본 의 20% 이상 증자, (iv) 대주주의 변경 등을 말한다.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경우 소유권 변화를 추적하는 규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 (1) 10% 미만의 직접 소유 지분은 하나의 가상(notional) 주체에게 귀속시킨다(s 160-225).

- (2) 10% 미만의 간접 소유 지분은 중간에 개입된 주체 중 최고의 지분을 가진 주체에게 귀속시킨다(s 160-230).
 - (3) 소유권이 분산된 회사가 전체적으로 10~50%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그 회사를 최종적 소유자로 하여 그 회사에 해당 지분을 귀속시킨다(s 160-240).
 - (4) 간주 수익적 보유자가 보유한 지분은 그 보유자를 최종적 소유자로 보고 그 소유자에게 귀속시킨다(s 160-245).
 - (5) 비거주 상장회사가 무기명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은 특정 조건하에서 가상 주체에게 귀속시킨다(s 160-255).
 - (6) 예금 기관이 비거주자인 상장회사의 주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은 특정 조건하에서 그 예금 기관을 최종 소유자로 보고 귀속시킨다(s 160-260).
- 이러한 소유권 추적 방법에도 불구하고 (i) 한 명 또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기업을 충분히 통제하는 경우 또는 (ii) 테스트 대상 기업이 분산 소유된 기업이지만 한 개인과 그 관계자가 20% 이상의 투표권을 가지거나 하나의 신탁과 그 관계자가 50%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경우에는 분산소유 기업에 대한 규정을 무시하고 그 기업을 통제하는 주체, 자연인, 신탁 또는 회사의 소유권만을 추적한다.

라. 주식의 발행

자산이나 용역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것은 손실이나 금전의 지급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ITAA97 s 8-1). 예를 들면, 한 회사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용 재고자산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 매입에 대한 비용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공급은 공급한 회사의 손실이나 지출, 비용의 지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ITAA97 s 70-15).

기존 주주에게 보너스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비용이 일반적으로 기존주식과 보너스 주식에 분산된다(ITAA36 s 6 BA). 단, 보너스 주식이 ITAA36 s 45, 45A, 또는 45B에 규정된 반조세회피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간주된 경우는 예외이다.

마. 배당과 배당세액공제제도

호주에서는 프랭킹이라는 독특한 임퓨테이션 제도를 통해 배당세액공제를 한다. 이 방법은 배당을 지급하는 자가 그 배당에 대한 세금 납부액을 프랭크 계좌에 기장하고, 배당 시 배당액과 프랭크 계좌에 기입한 세액을 합한 총금액 즉, 세전 배당액을 배당을 수취한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프랭크 계좌에 기입된 세액을 배당에 더하는 것 즉, 임퓨테이션을 호주에서 프랭크한다고 부른다. 배당을 수취한 주주는 이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프랭크된 세액을 공제받는다.

기업이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프랭크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대변에 기입하고 세금의 환불을 받은 경우 또는 수취한 배당에 대해 프랭크를 하는 경우가 차변에 기입된다. 연말에 기업의 프랭킹 계좌를 결산하여 차변이 대변보다 많은 경우에는 프랭킹 적자 세금(franking deficit tax)을 납부하여야 한다. 특정 기관에 대해서는 프랭킹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 PDF(Pooled Development Funds)에 의한 벤처캐피탈 프랭킹, 생명보험회사, 협동조합, 법인세 면제기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범 타스매니아 임퓨테이션 규정(Trans-Tasmania Imputation Rule)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뉴질랜드 회사가 호주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호주의 프랭킹 계정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호주의 법인은 뉴질랜드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뉴질랜드의 임퓨테이션 규정을 적용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프랭킹을 할 수 있는 배당과 프랭킹을 할 수 없는 배당으로 구분해 보면, ITAA97 s 202-45에 규정된 프랭킹을 할 수 없는 배당은 다음과 같다.

- (i) Norfolk Island 거주 기업이 Norfolk Island 원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
- (ii) ITAA36 s 159GZZZP에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는 주식 매매의 경우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구매가
- (iii) 자기자본 주식이 아닌 주식(non-equity share)에 대한 배당
- (iv)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자본에 원천을 둔 배분
- (v) 호주의 ADI가 지급하는 주식에 기반을 두지 않은 배당, 그리고 프랭킹이 가능한 이익을 초과하는 주식에 기반을 두지 않은 배당
- (vi) ITAA36 Pt III Div 7A(p. 141 참조)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 배당으로 간주되

는 분배

- (vii) ITAA36 s 45와 45c(Dividend substitution arrangements)하에서 프랭크되지 않은 배당으로 인정되는 금액
- (viii) 기업분할에 따른 배당
- (ix) ITAA97 a 152-125(exempt payment to CGT concession stakeholder) 또는 220-105(certain distributions by a New Zealand franking company)에 의해서 프랭킹할 수 없다고 규정된 금액

프랭킹 공제의 최대 한도는 프랭킹 배당액을 (100%-법인세율)로 나눈 금액 즉, 수취배당액과 납부한 법인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배당액으로 보고 그 배당액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text{프랭킹공제한도} = (\text{프랭크된 배당액}) \times \frac{\text{법인세율}}{(100\% - \text{법인세율})}$$

프랭킹 세액공제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환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ITAA97 s 67-25). 그러므로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할 때는 환불이나 차기 이월이 불가능한 것을 먼저 차감하고 차기 이월이 가능한 것과 프랭킹 세액공제와 같이 환불이 가능한 것은 나중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거주자로부터 이익을 배분받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을 수취한 배당액에 더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프랭크되지 않은 배분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며, 프랭크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배분액은 과세대상 소득도 아니고 면제소득도 아닌 것으로 정의된다. 프랭크되지 않은 배분이란 기업의 이익으로부터 배분되는 배당으로서 기업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주주의 단계에서 주주의 한계세율로 과세되는 배당을 말한다.

임퓨테이션 제도는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의무 조항(integrity measure)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반 스트리밍 규정이 프랭킹 혜택이 회원들 사이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회원이나 다른 회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한다.

- (2)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이 프랭킹 세액공제제도에도 적용된다.
- (3) 보유기간 및 관련 지불에 대한 규정이 납세자가 주식 겸 배당을 획득하여 배당 세액공제를 받은 후 처분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거래 전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4) 배당과세면제를 방지하는 규정이 있다.
- (5) 자기자본부인규정(share capital tainting rules)은 배당을 조세 측면에서 유리한 자본계정으로부터의 자본의 배분으로 속이는 것을 방지한다.
- (6) 부채/자본 비율에 대한 규정은 이자의 성격이 있는 지급액을 배당으로 취급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방지한다.
- (7) '면세기관'과 '이전의 면세기관'에 관한 규정들도 임퓨테이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ITAA97 Subdiv 207-F(s 207-140에서 207-160)에 의하면 임퓨테이션 관련 성실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프랭킹을 허용하지 않고 세액공제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 분배에 따른 조세혜택을 무효화하고 평가결과의 수정 기한 2년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 보유기간 및 관련 지불 규정에 의하면 주주가 프랭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최소한 45일(우선주 90일)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주주는 해당 주식을 최소한 45일(우선주 90일)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지불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프랭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 세율

현재 호주의 법인세율은 30%로 이익 규모나 기업 형태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법인세는 없다. 1995년 36%에 달했던 법인세율은 2000/01 과세연도에 34%, 2001/02 과세연도에 30%로 2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인하되었으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호주의 법인세율은 아직도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재계에서는 끊임없이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²²⁾.

〈표 2-Ⅱ-3〉 연도별 법인세율

(단위: %)

1993	1995	2001	2002
33	36	34	30

자료: 2007 KPMG International.

개인연금계좌 등 특정 기관의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30%)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Ⅱ-4〉과 같다. 대부분은 특정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개인연금계좌(RSA)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저축계좌(First Home Saving Account)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및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도 해당 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기업연금(superannuation) 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²³⁾.

22) 2008년 현재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4.4%(중앙정부 최고세율 기준)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로 보면 호주는 뉴질랜드·스페인·일본과 함께 법인세율 30%로 미국(35.0%), 프랑스(34.4%), 벨기에(33.0%)에 이어 세율이 높은 순서로 공동 4위를 기록하였다. 반면 스위스의 법인세율은 8.5%로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아일랜드가 12.5%, 2008년 법인세율을 10%포인트 대폭 인하한 독일이 15.0%로 낮은 편에 속했다. 조세일보 2008. 6. 5 참조.

23) 호주에서 Superannuation은 통상적으로 기업이 피용자 보수에 추가하여 기여금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기업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1-4〉 특정 금융상품 취급 기관에 대한 법인세율

기관 및 소득의 특성	세율(%)
RSA(Retirement Saving Account) 공급자	
일반적인 과세소득	30
RSA 요소	15
FHSA 요소	15
ADI(Australia Deposit Institute): FHSA 취급, RSA는 비취급	
일반적인 과세소득	30
FHSA 요소	15
생명보험회사	
일반적인 과세소득	30
연금(superannuation)/FHSA 요소	15
비영리법인	
416달러 미만의 과세소득	0
과세소득이 416달러 이상 915달러 미만인 경우(과세소득-416달러)	55
과세소득이 915달러 이상인 경우 과세소득 총액	30
PDFs(Pooled Development Funds)	
중소기업 소득	15
규제받지 않는 투자소득(unregulated investment income)	25
PDF의 범위를 넘어서는 소득	30
신용조합(Credit Union)이 수취한 이자소득	
소규모 신용조합(이론적인 과세소득 < 50,000달러)	30
중규모 신용조합(49,999달러 초과분에 대해)	45
대규모 신용조합(과세소득 ≥ 150,000달러)	30

그 외에 특정 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적 성격으로 책정된 낮은 세율제도가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 416달러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세소득이 916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총과세소득에 대해 30%의 정상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소득이 416달러를 초과하고 915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서 416달러를 차감한 금액에 55%의 세율을 적용하여 평균세율이 0%(과세소득 416달러)에서 점차 증가하여 과세소득이 915달러가 되었을 때 30%가 되도록 한다.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PDF(Pooled Development Fund)의 경우 중소기업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과세하고 규제받지 않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도의 중간에 PDF가 된 경우 PDF의 범위를 벗어나는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정상세율을 적용한다. 신용조합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신용조합과 과세소득이 15만달러 이상인 대규모 신용조합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정상과세하고 그 사이에 있는 중간규모의 신용조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중간규모의 신용조합에 대해서는 5만달러를 넘는 과세소득에 대해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중규모 신용조합의 과세소득에 대한 평균세율을 0~30%로 소득규모에 따라 균등하게 분포시키는 것으로서 중규모 신용조합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6. 연결납세제도

ITAA97 Pt 3-90에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와 같은 100% 지분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연결납세제도라고 한다. 호주 연결납세제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집단 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지주회사(head company)가 연결납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 일단 선택하면 그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며,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둘째, 연결납세 집단은 과세목적상 하나의 기관으로 취급된다.

셋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업 간 손실의 이전, 기업 간 배당 등과 관련된 기업집단에 대한 과세규정은 폐지되었다.

넷째, 과소자본규정은 연결납세 기업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 적용하고 이전의 규정은 폐지한다.

다섯째, GST, FBT와 같은 소득세 외의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연결납세 규정을 적

용하지 않는다.

여섯째, 자회사의 원천징수 의무에도 연결납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곱째, 연결납세제도는 호주의 기업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여덟째, 지주회사가 연결납세를 선택하여 국세청에 처음으로 연결납세 신고를 하기 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집단 전체의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지주회사는 세금 납부 의무를 분담하기 위해 자회사와 세금 분담 약정(Tax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호주의 연결납세제도에는 단일 독립체 규정(single entity rul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연결납세 기업집단은 매년 하나의 세금 신고만 하면 되며, 연결납세 분납액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여 하면 된다. 프랭킹(franning) 계정도 하나만 유지하면 되고, 손실과 프랭킹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처럼 적용하고, 모든 구성 기관들에게 공통의 세무회계 기간을 적용한다.

7. 조세특례

가. 투자공제

투자공제는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인데, 호주에서는 이를 감가상각과 결합하여 UCA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투자에 대해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임시투자공제 제도로써 2008년 12월 3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유형의 상각자산에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경우 또는 기존 자산에 새로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동 자산이 호주에서 사용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형자산이나 토지·채고 자산·상각대상이 아닌 자산 즉, 자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혜택은 2008/09년에서 2011/12년까지 주어지는데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의 투자시기와 투자 자산의 설치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II-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투자공제 혜택은 소기업과 기타 기업으로 구분하여 주어지는데 소기업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투자를 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면 50%의 투자공제

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기업의 경우 2009년 6월 이전에 투자하여 2010년 6월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면 30%, 그 외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10%의 공제를 허용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제도가 세액공제제도인 것과는 달리 호주의 투자공제 제도는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표 2-11-5〉 투자공제제도의 공제율

설치시기	투자시기와 공제율	
소기업	2009. 12. 31 이전 투자	
2009. 6. 30 이전	2008/09년에 50%	
2010. 6. 30 이전	2009/10년에 50%	
2010. 12. 31 이전	2010/11년에 50%	
기타 기업	2009. 6. 30 이전 투자	2009. 12. 31 이전 투자
2009. 6. 30 이전	2008/09년에 30%	2009/10년에 10% 2010/11년에 10%
2010. 6. 30 이전	2009/10년에 30%	
2010. 12. 31 이전	2010/11년에 10%	

나. 소기업에 대한 지원

호주는 2007/08년 이후 세법상 소기업(Small Business Entities)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여 동일한 기준을 소득세와 GST, FBT의 소기업 지원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 정의에 따르면 (i) 사업을 영위하고, (ii) 연간 총 매출이 2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한다. 소기업은 소득과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15년 보유한 자산에 대한 CGT 면제(ITAA97 Subdiv 152-B) : 개인의 경우에는 (a) 55세 이상으로서 퇴직과 관련하여 CGT가 발생하였거나 (b) 항구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CGT를 면제한다.

- (2)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자산(active asset)으로부터 발생한 CGT 50% 감면(ITAA97 Subdiv 152-C)
- (3) 자본이득이 퇴직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CGT 면제(ITAA97 Subdiv 152-D) : 개인의 평생 면제한도는 50만달러이며,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면(위의 (2))을 먼저 적용하고 나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 (4) CGT 납부연기(roll over)(ITAA97 Subdiv 152-E)
- (5) 부분적 공제만 허용되는 수입과 구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1년에 걸쳐 배분(GST Act s 131-5) : 부분적 공제만 허용된 경우에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사적 용도와 사업용이 혼합된 매입의 경우에 유리하다.
- (6) 현금주의에 따른 GST 회계 허용(GST Act s 29-40)
- (7) GST 분기별 분할납부(GST Act s 162-5) : GST 신고는 연도별로 하지만 분기별로 GST 예상액을 납부하고 연말에 연도별 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할 수 있다.
- (8) 선지급 경비에 대한 공제 허용(ITAA36 s 82KZM과 82KZMD)
- (9) 자동차 주차비에 대한 FBT 면제(FBTAA s 58GA)
- (10) 단순화된 감가상각규정의 적용(ITAA97 Subdiv 329-D): 1천달러 미만 자산에 대해서는 즉시 상각을 허용하며,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자산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상각액을 계산하는 폴링방법을 적용한다. 폴링방법이란 가치가 1천달러 이상인 자산을 종합하여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소기업 풀은 사용 가능 했수 25년 미만의 자산을 종합하여 형성한 것으로 연간 30%의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사용 가능 했수가 25년 이상인 상각자산으로 구성된 장수명(long-life) 소기업 풀에는 정액법으로 연간 5%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 (11) GDP를 고려하여 조정한 가상의 세율로 PAYG 분할납부(TAA Sch 1 s 45-130)

다. 1차 산업 생산자에 대한 조세지원

1차 산업의 생산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균등한 자본비용 공제의 내용에 포함되어

ITAA97 s-44-590에서부터 40-675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화선을 도입한 데 대한 비용은 10년에 걸쳐 공제할 수 있다.
- 새로운 원예식물이나 포도넝쿨에 대해서는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 상수도 시설 비용은 3년에 걸쳐서 상각할 수 있다.
- 토지관리 작업비용은 즉시 상각한다.
- 삼림의 감모자산에 대해서는 특별공제가 허용되며, 그 외에 임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있다.
- 양모 생산량 배가 및 가축 및 임업 손실에 대한 보험지급액의 분산과 관련된 과세를 이연한다.
- 가축의 강제 처분 또는 강제 도살에 의한 과세대상 이익을 분산시키거나 이연할 수 있다.
- 개인납세자의 경우 소득 평형화가 허용된다.
- 농업경영예금제도하에서 소득 평균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납세자가 1차산업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규모 기업인 경우 양자에 대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ITAA97 s 995-14에 의하면 1차산업 생산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1) 특정한 물리적 환경하에서 식물이나 버섯을 재배하거나 번식시키는 사업
- (2) 육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사업
- (3) 납세자가 생산한 원재료로부터 생산된 낙농제품을 유지·보관하는 사업
- (4) 물고기, 바다거북, 듀공, 해삼, 갑각류, 또는 수중 연체동물을 채취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의 운영
- (5) 진주나 진주조개를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의 운영
- (6) 조림지나 숲에서의 벌목
- (7) 조림지나 숲에서 벌채된 목재나 목재의 일부를 제재·가공하는 장소 또는 제재·가공 장소로 이동하기 전단계의 장소로 운송하는 사업

낙농 가공업은 원료 생산자가 직접 수행할 때만 1차 산업이며, 제재업은 조림과 벌

목을 하는 자가 직접 수행하더라도 1차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종 특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화선 관련 공제 내용은 ITAA97 s 40-645에서 40-650에 규정되어 있다. 1차 생산에 사용되는 부지까지 전화선을 연장하거나 그 부지에 전화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른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한 10년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공제할 수 있다. 전통적인 유선전화를 연결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무선전화도 전화선으로 인정한다. 전화선 비용은 그 비용을 지분소유자나 공동생산자가 지불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종 원예상품에 대한 지원은 ITAA97 s 40-515에서 40-575에 규정되어 있는데,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데 소요되는 자본비용은 그 작물이 원예업에 이용되는 장소 또는 그렇게 이용되도록 준비되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즉시 비용으로 상각할 수 있다. 원예작물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는 파종비용 등이 포함된다. 원예작물(horticulture plant)은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또는 그 자체로서 또는 일부분이 판매될 수 있도록 재배되거나 번식된 살아있는 식물이나 버섯을 의미한다. 신종 원예작물에 대한 조세지원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1) 납세자가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여야 하며, 임차인이나 허가받은 다른 자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적은 다른 자가 해당 토지에서 원예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 (2) 호주의 면세기관이나 외국정부기관으로부터 임대나 허가를 받아 원예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 (3) 납세자가 원예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토지의 경작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예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3개 연도에 걸쳐 공제할 수 있다(ITAA97 s 40-515에서 575). 그리고 토지관리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연도에 즉시 상각할 수 있다(ITAA97 s 40-630에서 675).

수목의 감모상각(ITAA97 s 70-120)에 대한 특별상각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수목이 심어져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벌목할 권한을 취득하고 수목의 양을 고려하여 대금을 지불한 경우 수목의 감소에 대한 감모상각이 가능하다. 이는 납세자가 수목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순이익에만 과세함을 의미한다.

또한 수목조림지에 대한 조세지원(ITAA36 s 82KZMG)이 있는데, 수목조림지가 관리하는 투자상품(Timber plantation managed investment scheme)에 투자한 특정 사전지출액은 사전지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래의 작물경작 활동에 투입될 자금의 투입에 대해서 즉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용공제 관련 특혜 외에 변동이 심한 수입과 관련된 조세지원이 있다. 이중양모생산(double wool clips)에 대한 조세지원(ITAA97 s 385-135)은 가뭄이나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해 양모를 일찍 수확하는 경우에 호주의 양을 방목하는 1차 생산자들에게 적용되는 조세지원이다. 양모 재배자들은 조기 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조기생산이 없었다면 해당 소득이 귀속되었을 다음 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과세이연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기수확을 한 당해 연도에 두 번의 수확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거나 당해연도의 조기수확에 따른 소득과 전년도의 수확에 따른 소득이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을 하게 된다.

가축과 임업손실에 대한 보험료 수입은 과세소득 평가 시 5년에 걸쳐 동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가축이 호주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업인 경우에 적용된다(ITAA97 s 385-130). 가축을 강제로 살처분하게 된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즉, ① 과세소득을 5년에 걸쳐 분산시키거나 ② 비용의 배분을 통해 과세소득의 발생을 이연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ITAA97 s 385-90에서 385-125).

소득의 평균화(income averaging) 규정에 의하면 호주에서 1차 생산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들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6단계를 거쳐 소득을 평균화할 수 있다(ITAA97 s 392-1에서 392-95).

1단계 : 당해연도의 기본적인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기본적인 과세소득(basic taxable income)이란 1차 생산업자의 과세소득에서 ① 특정 기업연금과 퇴직금, 그리고 순자본이득을 제외하고 ② 평균을 초과하는 특정 전문인력 용역 소득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단계 : 비교대상 세율을 계산한다. 비교대상 세율이란 1차 생산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평균소득에 대해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소득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을 의미하며, 평균소득이란 당해연도와 최대 이전 4개연도(도합 5개연도)

의 기본 과세소득 평균치를 의미한다. 기본세율은 호주 거주자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정상적인 한계세율체계를 말한다.

3단계 : 평균화 대상 요소를 산출한다. 평균화 대상 요소란 1차 생산자의 과세소득 중에서 평균화를 통한 조정이 필요한 소득을 말한다. 평균화 대상 요소에는 과세대상 1차 생산 소득 전부와 그 외 과세대상 소득 중 일부를 포함한다. 1차 생산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소득이 5천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포함시키고, 1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다. 1차 생산 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소득이 5천달러 이상 1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만달러에서 해당 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평균화 대상 요소에 포함시킨다.

4단계 : 다음 (a)와 (b)를 비교한다.

(a) 당해연도의 기본 과세대상 소득에 비교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b) 당해연도의 기본 과세대상 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이 세액의 계산에 있어 의료 부담금과 각종 세액공제 환급 등 조세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파트너십의 소득이나 미성년자의 불로소득(earned income)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세액의 비교 결과 기본 과세대상 소득이 평균화된 소득보다 많아서 (a)가 (b)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형식으로 평균화 조정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본 과세대상 소득이 평균화된 소득보다 적어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생산자의 평균화 요소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평균화 조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5단계 : 평균화 조정액을 계산한다. 평균화 조정액은 총 평균화 금액에 기본 과세대상 소득에서 평균화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총평균화 금액은 위의 4단계에서 계산한 (a)와 (b)의 차액 즉, 비교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의미한다.

6단계 :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다. 5단계에서 계산된 평균조정금액(세액공제

또는 추가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납부대상 세액을 계산한다.

납세자가 원하면 평균화 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선택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ITAA97 s 392-25).

농업경영예금(FMD)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ITAA36 Sch 2G의 s 393-1에서 393-65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세금을 평균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1차 생산소득이 아닌 소득이 일정액(6만 5천달러) 이하인 1차산업 생산자에게 적용된다. 해당되는 생산자는 소득이 많이 발생한 해에 FMD에 예금을 하고 그 금액을 당해 연도에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PAYG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FMD 예금액이 인출되었을 때는 예금할 당시에 공제받았던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다.

라. 광업 및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지원

1) 광업에 대한 특별 지원 개요

UCA(통일된 자본지원, Uniform Capital Allowance)는 또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비용, 환경보호 사업 비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광업에 종사하는 납세자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유전을 포함한 광업, 채석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에 대해 특별한 공제가 허용된다. 특별공제란 일반경비 공제와 특정 사업비용 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탐사·탐광 비용
- 광산, 유전, 채석장 등에서 발생한 총 공사비(pooled project expenditure)
- 이전의 광산이나 유전·채석장을 재활성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석유자원렌트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납부액

채광·채석·채굴에 대한 권리나 정보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여기서 정보는 지리적, 지구물리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로서 특정 지역에 광물이나 채석물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존재하는 경우 매장량의 규모 등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석유

자원렌트세(PRRT: Petroleum Resource Rent Tax)는 연안 석유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세금을 납부한 연도에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조세지원의 적용을 받는다.

원주민의 토지를 채광이나 탐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주민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분배집단에게 지불한 지급액에는 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ITAA36 s 128V). 그리고 소득을 수취한 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 비면제 소득으로 취급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광산지급액(mining payments)'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된다.

- 원주민 토지에서의 채광에 대해 호주 정부에 지불한 사용료
- 원주민토지위원회(Aboriginal Land Councils)에 지불한 특정 지급액
- 원주민 토지와 관련하여 채굴권 또는 채굴 지분을 발행하거나 채굴이나 탐사를 허용한 것과 관련된 지급액과 원주민 토지와 관련된 광산 사용료의 지급액

이러한 지급액에 대해서는 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대신 소득을 수취한 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 비면제소득으로 취급된다.

2) 탐사비용

광산이나 유전 등 천연자원 탐사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연도에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ITAA97 s 40-730). 이 규정은 국내에 있는 광업 재산에도 적용되며, 자본지출뿐만 아니라 수익성 지출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감가상각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광산이나 채석에 있어서 탐사란 다음과 같은 활용을 의미한다.

- (a) 지질도의 작성, 지리적 조사, (석유 외의) 광물이나 채석재료가 매장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 조사, 그리고 굴착이나 다른 방법을 통한 매장지역에서의 조사
- (b) 광체가 있는 지역 또는 인근에서의 광석 조사 또는 채석물질 조사, 또는 드라이브, 샤프트, 가로 켜는 톱, 갱정(winzes), 라이즈(rises), 굴착기 등을 이용한 조사

석유채굴의 경우 탐사는 지질학적·지리학적·지구화학적 조사와 탐사시추 및 평가시추를 포함한다. 탐사 이후의 경제성 분석, 평가·분석을 위한 광물의 채취도 탐사

비용에 포함한다.

3) 광업 또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사업 풀

특정 광업 사업비용과 관련된 운송비, 그리고 다른 사회간접시설 지출은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통합하여 공제할 수 있다(ITAA97 s 40-830에서 40-885). 공제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text{공제액} = (\text{투자액 총계}) \times \frac{150\% (\text{또는 } 200\%)}{\text{통합사업기간}}$$

여기서 통합사업기간은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지출은 지급액에서 제외하고, 2006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시작한 사업은 투자액에 150%를 곱하고, 그 이후에 시작한 사업은 200%를 곱한다. 총 투자액에서 GST 납부액은 제외한다. 그 외에 다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았을 모든 경비를 공제한다.

마. 환경보호에 대한 지원

자본적 지출이건 수입 지출이건 불문하고 지출의 유일한 목적 또는 주 목적이 환경보호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다면 그 지출액은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ITAA97 s 40-755에서 765). 그러나 환경보호가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다른 공제항목과의 중복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환경보호활동이란 (i) 납세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 (ii) 납세자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또는 납세자의 전임자가 사업을 수행한 장소에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iii) 그러한 장소로부터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배출물의 배출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부가 인정한 카본싱크 삼림(carbon sink forest)을 형성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도 공제가 허용된다(ITAA97 s 40-1000에서 40-1025). 2007/08년 이후 2011/12년까지는 즉시상각이 가능하고 2012/13년 이후에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 부분적인 공제만 허용된다. 그 외에도 호주 정부는 2009년에 탄소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회에서 그 안을 거부하였는데, 2010년에 안을 수정하여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도시 상수도 세액공제(urban water tax offset)제도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로써 도시 상수도 및 담수화에 대한 국가계획에 따라 승인된 사업에 대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ITAA97 Subdiv. 402-w). 관계 장관이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지불하는 공제 가능한 초기 자본 비용에 대해 10%의 세액이 공제되며, 공제한도액은 1억달러이다. 빗물 채취사업(stormwater harvesting project)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50%, 공제한도는 2천만달러이다.

지역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지불한 연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다(ITAA97 s 40-735에서 745).

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1)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개요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임금·급여 및 기타 노동비용,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직접비용, 그리고 외부에 지불한 특정 비용은 2만달러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가속상각(일반적으로 125%)이 허용된다. 2만달러 기준이란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2만달러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6년 8월 20일 오후 7시 30분(EST) 이후 발생한 지원대상 연구개발 지출에 대해서는 125%의 가속 공제가 허용된다. 그 전에 체결한 연구개발 계약(용역계약 제외)에 의해 지불되어야 하는 지원대상 연구개발 지출에 대해서는 150%의 비율로 가속공제된다.

기존의 핵심기술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1996년 7월 23일 오후 5시(EST) 이후 체결한 계약으로서 총지급액에 대한 한도액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전액을 연구개발활동의 전 기간에 걸쳐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연도의 공제액이 그 핵심기

술과 관련되어 당해 연도에 지급한 연구개발 지출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해 지급한 핵심기술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연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핵심기술에 대한 지출이란 기업이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또는 그 기업을 대신하여 핵심 기술을 취득하거나 핵심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데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기술이란 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술, 새로운 소재·상품·기구·공정·기법·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법인이 연구개발 지출액을 증가시킨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175%의 공제가 허용된다. 이는 125%의 공제에 더하여 50%가 추가 공제됨을 의미한다(ITAA36 s 73P에서 73Z). 2007년 7월 30일부터는 지적재산권을 누가 소유하는지에 관계없이 호주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모두 동등한 지원제도가 적용된다(ITAA36 s 73B(14c)).

2001년 1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지출은 사용 가능 했수 기간 동안 125%의 상각이 허용된다. 이러한 지원은 건물 외의 자본재에도 적용된다(ITAA97 Div 43). 그러나 저가자산 풀에 포함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 특례 지원대상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지출은 40년에 걸쳐 지불한 금액 전액을 공제한다.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공제의 가치에 상응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리고 특정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 지출액이 2만달러 이상 2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2007/08년부터는 등록된 연구기관(RRA: Registered Research Agency)의 경우에는 2만달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부의 연구기관에 연구개발을 의뢰한 경우 사전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공제한다. 이 때 외부의 연구기관은 회사와 관계없는 등록된 연구기관(RRA)이거나 석탄연구트러스트(Coal Research Trust Account)이어야 한다. RRA 목록은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ITAA36 s 73B(13)). 이와 같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내용은 호주 국세청에서 발행한 "Guide

to the R&D Tax Concessions”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안내책자는 호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다.

호주 정부는 2009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은 호주 법인으로서 유한책임 파트너십 및 특정 파트너십을 포함하지만 개인과 신탁은 동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구개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원회(Innovation Australi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몇 개의 독립된 기업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합체(syndicate)로서 연구개발 활동을 등록할 수 있다(IRAA36 s73B).

2) 세액공제안

정부가 2009년 제시한 세액공제방안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업에 지원 대상 지출을 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가치 하락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 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간 매출액이 2천만달러 미만인 기업은 45%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150%의 비용공제에 상응하는 지원이다. 그러나 비용공제와는 달리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이므로 적자상태의 기업에게도 적용되며, 연구개발 지출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다.

매출액이 2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40%의 세액공제가 허용되는데, 이는 133%의 비용공제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이 경우에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며, 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호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지만 그 결과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외국에서 소유하는 경우에도 40%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 호주의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2007년 7월 1일 이후에도 적용되는 영화산업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세 가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다(ITAA97 Div 376).

- 호주 영화를 만들기 위한 호주에서의 지출(제작자 세액공제)
 - 호주에서의 제작에 따른 비용(로케이션 세액공제)
 - 호주에서의 PDV 효과(post, digital visual effects) 제작비용(PDV 세액공제)
- 이 세액공제 제도들은 기업에만 적용되며, 적용대상 호주 제작비에 적용된다. 적용대상 호주 제작비란 (i) 자본적 성격의 지출과 수익적 성격의 지출을 모두 포함하며, (ii) 영화 제작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iii) 영화의 제작을 위한 장비·시설의 사용에 따른 비용도 포함한다. 그리고 (iv) 호주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제작자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제작이 완료된 영화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비용 지출액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원 기준이 되는 비용 지출액의 규모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른데, 다큐멘터리가 아닌 장편 극영화나 일회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최소한 100만 달러를 지출하여야 적용대상이 된다.

세제지원은 세액공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장편 극영화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호주 제작비용의 40%가 세액공제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20%가 세액공제된다. 40%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편 극영화는 최초의 배포가 극장에서 되는 것으로서 본영화 상영 전에 상영되는 단편이 아닌 영화상영의 주된 목적이 되는 본영화를 말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호주 기업에는 호주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기업으로서 호주의 납세자 번호를 가진 기업을 포함한다.

로케이션 세액공제제도는 주된 장면의 촬영이나 애니메이션 영상이 2007년 5월 8일 이후에 제작된 영화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 (i) 적용대상이 되는 호주 제작비 지출이 5천만달러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제작비 지출이 당해 연도에 종료되는 기업
- (ii) 적용대상이 되는 호주 제작비 지출이 5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지원 대상 호주 제작비 지출이 당해 연도에 종료되는 기업
- (iii) 예술부 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기업

- (iv) PDV 효과의 생산이 종료된 해의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
- (v) 호주 기업 또는 호주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기업으로서 호주의 사업자번호 (ABN)가 있는 기업

장편 극영화나 그와 유사한 영화, TV의 미니시리즈 드라마, 또는 다른 지원을 받지 않는 TV 시리즈가 지원대상이 되며 다큐멘터리나 광고, 상업용, 토론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 훈련프로그램 등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지원을 받는 기업의 지원 대상 호주 제작비는 (i) 총 5천만달러 이상이거나, (ii) 1,500만달러 이상 5천만달러 미만으로서 지원대상 호주 제작비가 그 기업의 총 제작비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되는 기업은 총지원대상 호주 제작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영화가 최종적으로 제작자 세액공제나 PDV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면 로케이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PDV 세액공제는 PDV 효과 제작을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한 영화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i) PDV 비용 지분이 완료된 이후
- (ii) 예술부 장관이 인정한 기업으로서 PDV에 대한 호주 제작비가 500만달러 이상인 경우
- (iii) 호주 기업이나 호주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서 호주의 사업자번호를 취득한 경우

다큐멘터리나 광고, 토론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공공행사 촬영, 연속방송극의 일부를 형성하는 촬영에 대해서는 PDV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 규모는 기업이 지불한 지원대상 호주 제작비의 15%이며, 영화의 PDV 효과를 제작하는 데 소요된 호주 제작비만 지원대상이 된다. 영화가 제작자 세액공제나 로케이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PDV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 건축물·구조물 개량에 대한 지원

ITAA97의 Div 43(s 43-1에서 43-260)에는 건축물과 구조물의 개량에 대한 지

원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고 자본공사(capital works)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2.5% 또는 4%의 공제가 허용된다. 여기서 자본공사란 광범위한 구조물과 그러한 구조물의 증축 및 개보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본공사는 크게 (a) 건축물, (b) 구조물 개량, (c) 지구환경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제액은 자본공사의 공제받지 않은 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다.

자본공사 비용 공제는 자본공사가 당해 연도에 공제가 가능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1997년 7월 1일 이후 시작된 공사의 경우에는 완료된 이후에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공사는 각 개별 공사별로 구분해서 공제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 건축물이 특정 시점에 건축되고 나중에 증축되었다면 증축 공사에 대한 공제액은 건축공사와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자본공사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형성하지만, 동 규정에서는 이러한 자산의 가치 하락을 계산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본을 소유하는 자는 자본공사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ITAA97 s43-115).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후속 소유자도 본래의 건축비용을 근거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건축비용에 적용비율을 곱한 후 1년(365일) 중 구조물이 공제가 허용되는 방법으로 사용된 날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비율은 자본공사가 시작된 시기와 구조물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2.5%와 4%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ITAA97 s 43-25). 1992년 2월 27일까지는 자본공사가 1984년 8월 21일 이후 1987년 9월 16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에는 4%가 적용되었고, 1984년 8월 22일 전 또는 1987년 9월 15일 이후에 시작된 경우에는 2.5%가 적용되었다. 1992년 2월 27일 이후에 시작된 공사의 경우에는 2.5%가 기본 적용률이 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4%가 적용된다. 과세소득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i) 주로 산업활동,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편의시설 제공, 생산 근로자의 직속상관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사용되는 것 (ii) 주로 호텔·모텔·게스트하우스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단기 여행자들에게 제공되는 방이 10개 이상인 경우 또는 (iii) 단기여행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10개 이상의 아파트먼트로 구성된 건축물, 그리고 단기 여행자의 숙소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한 건물 등이 있다.

자. 국가 임대주택 공급 지원(NRAS: National Rental Affordability Scheme)

이 제도는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중·저소득층의 임대료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중·저소득층에게 새로운 주택을 시장가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세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운영을 시작한 첫 번째 과세기간에는 주택당 5천달러, 그 후에는 6천달러의 환불 가능한 세액공제를 한다. 또한 주정부나 준주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이나 현물지원 형식으로 연간 2천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의 지원을 추가한다. 지원규모는 2008/09년도 기준이며, 소비자물가지수의 임대료 항목에 연동하여 지원액을 조정한다. 지원기간은 10년이다.

국가의 임대료 지원제도(NRAS)에 참여하는 기업은 2008/09 과세연도부터 매년 소득세 신고시 환급 가능한 NRAS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ITAA97 Div 380). 2009/10년의 세액공제규모는 6,504달러이고 주와 준주정부의 지원액은 2,168달러이다.

8. 법인세 행정

앞서 호주의 세법체계를 설명할 때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호주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와 관련된 제도는 그것이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법인세에도 적용되며, 반대로 법인세 제도도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개인소득세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율의 경우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다른 세율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이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I장에서 개인소득세 행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특별히 개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 행정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려면 제I장의 소득세 행정에 대한 설명을 보기 바란다. 소득세 행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법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필요한 내용들은

법인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또한 호주는 TAA(Tax Administration Act)에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무행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뒤의 제4편에서 국세행정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법인세 행정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법인세 행정에 대한 호주의 규정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앞서 설명한 제2부 제I장의 소득세 행정에 대한 내용과 제4부 국세행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Ⅲ. 국제조세

1. 서론

개인이건 기업이건 납세자가 호주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진다. 거주자인 경우 소득의 원천지가 호주는건 아니건 불문하고 경상소득과 법정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ITAA97 s 6-5에서 6-10). 호주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통상적으로 소득이 거주자에게 귀속되었을 때 과세되지만 특정 외국 기업이나 비거주자 신탁을 통해서 취득한 소득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거주자에게 귀속시키고 과세한다. 즉, 소득이 해외에서 호주로 송금되었을 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였을 때 과세한다. 다른 해외투자로부터 발생한 특정 소득도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원칙에는 물론 상당히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납세자가 호주 거주자인지 여부와 소득의 원천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소득의 원천지와 납세자 거주지가 다르고 원천지와 거주지에서 모두 과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중과세방지 조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2. 거주자의 개념

개인의 경우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통상적 의미로 호주에서 거주하면 거주자가 되며 그 외에도 법률에 정해진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주자가 된다. 통상적인 의미의 거주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거주로 해석되며, 본적지·국적·시민권 등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관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나타난 세 가지 거주자 결정 기준은 ITAA36 s 6(1)에 규정되어 있는데, (i) 주소지/상주하는 거주지 기준, (ii) 183일 기준, (iii) 호주 기업연금 기준의 세

가지이다. 이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거주자 조건을 충족시키면 세법상 호주 거주자가 된다. 주소지/상주하는 거주지 기준은 주소지나 상주하는 거처가 호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183일 기준에 의하면 1년 중 183일 이상을 호주에 체류하는 경우에 호주 거주자가 된다는 것이다. 거주자 중에서 호주에 거주하는 기간이 183일 이내인 경우에는 거주기간 동안만 거주자가 된다. 기업연금 기준에 의하면 호주 정부 공무원을 위한 연금기금에 기여를 하는 자는 호주 거주자가 된다. 소득세 목적상 Norfolk Island와 Cocos(Keeling) Island, 그리고 Christmas Island는 호주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한다(ITAA36 s 7A)²⁴⁾.

법인의 경우 호주에서 설립된 법인은 호주 거주자가 된다. 호주에서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중심이 되는 경영·통제가 호주에서 일어나거나 투표권이 호주 주주들에 의해 지배된다면 그 법인은 호주 거주자가 된다(ITAA36 s 6(1)). 중심이 되는 경영·통제가 발생하는 곳은 통상적으로 이사회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으며 이중거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특정 법인이 중심적인 경영·통제 장소가 호주에 있다는 이유로 호주 거주자가 되는데, 그 법인의 경영이 이분화되어 다른 국가에서도 중심적인 경영·통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중 거주자가 된다. 특정 이중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조세혜택이 거부되는데, 조세조약에 의해 호주가 아닌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는 특정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이연혜택과 소득과 자본 손실의 그룹 내 이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내법을 적용하여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판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호주는 40개 이상의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였다.

3. 소득의 원천

특정 소득이 어디에 원천을 두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소득의 종류별

24) 개인납세자의 거주자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 I 장 제2절에서 납세의무자를 설명하면서 자세히 정리하였다.

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임금과 급여, 전문가 수당 : 임무나 용역이 수행된 장소
- (2) 사업소득 : 사업자가 거래를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를 참조하여 결정되는데, 주요 사업 내용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가 원천지가 되고 주요 사업 내용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용역을 제공하는 곳이 원천지가 됨
- (3) 이자 : 지급 의무가 발생한 지역 즉, 자금의 차입이나 대여 계약이 이루어진 곳
- (4) 배당 : 주식의 등록지가 아니고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배당하는 소득을 수취한 지역
- (5) 사용료 : 특허권·상표권·의장권·광산권 등의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가에 재산 소유자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원천지이며, 기술적 노하우,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국외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국외 원천소득임
- (6) 연금소득 : 연금이 지급되는 국가
- (7) Norfolk Island 주민에 의해 발생한 소득 : Norfolk Island 원주민이나 그 원주민들이 지배하는 기업의 소득은 Norfolk Island의 세금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 (8) 비거주자에 대한 천연자원 지급 : 호주의 천연자원 개발 및 탐사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은 천연자원의 생산과 복구(recovery)의 정도에 따라 천연자원 소득을 지급하는 호주가 원천지임(ITAA36 s 6CA)

4. 거주자의 국외 소득에 대한 과세

가. 국제소득에 대한 특례(Special Concessions)

국제소득에 대한 몇 가지 특례 규정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직접투자 배당에 대한 면세이다. 비거주자가 호주 거주자인 기업에게 지급한 배당으로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 직접투자에 대한 배당인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호주의 과

세대상 소득(AI)에 포함하지 않는다(ITAA36 s 23AJ). 여기서 직접투자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배당을 수취한 자가 신탁관리자나 파트너의 자격으로 배당을 수취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전에 과세한 소득에 대한 면세이다. 여기서 이전에 과세한 소득이라는 것은 CFC 규정에 따라 실제 배분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즉시 호주의 납세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하였던 소득이 나중에 실제로 배분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소득은 과세가 면제된다(ITAA36 s 23A2).

세 번째는 해외지점소득에 대한 면세이다. 호주에 거주하는 기업의 국외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그 소득은 대부분 과세가 면제된다(ITAA36 s 23AH).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특정 국가 목록에 있는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적극적 사업소득기준(active income test)을 통과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네 번째는 도관해외소득(conduit foreign income)이다. 호주 법인이 세금 공제전의 배당 중 일부가 '도관해외소득(CFI)'에 해당된다고 선언한 경우 그 소득은 국외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 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ITAA97 s 802-105). 이 제도는 해외투자를 함에 있어 국외 투자자가 직접 하기보다는 호주 기관을 통해서 할 경우 조세가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CFI는 국외 거주자가 호주 법인을 통하여 취득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하며, 호주 법인은 배당 증명서에 그 배당이 CFI인지를 명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외금융기구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역외금융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금융기구의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the effective tax rate)은 10%이다. 즉, 세율은 정상적인 세율에 10%를 정상적인 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역외금융기구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자본이득은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나. 발생주의 과세제도

1)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호주 거주자가 CFC 등 특정 외국기관을 통해 취득하는 소득은 그 소득이 외국에서 유사한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 호주에서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과세한다.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CFC이다(ITAA36 Pt X(s 316에서 468)).

CFC 규정에 의하면 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사업을 통해 얻어진 소득이 아닌 경우에 그 소득 중 호주 거주자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호주에서는 호주와 상당히 유사한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어 CFC 소득에 대해 호주에서의 과세와 유사한 수준의 과세를 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의 목록을 발표하는데,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캐나다·뉴질랜드·프랑스·영국·독일·일본·미국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국가들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주의 과세가 적용된다. 목록에 포함된 국가의 CFC 소득은 특정양허소득에 포함된다. 특정 양허소득(eligible designated concession income)은 자본이득과 같이 전혀 과세되지 않거나 특정 형태의 사업이나 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을 말한다.

CFC는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기업을 지배하는 지분의 50% 이상을 5인 이하의 호주 거주자가 보유하며 그 5인 각인의 지분소유비율이 1% 이상인 경우; ② 하나의 호주 기관이 기업을 지배하는 지분의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관이 문제가 되는 CFC가 실질적으로 다른 주주에 의해 지배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③ 지분소유비율에 관계없이 5개 또는 그 이하의 호주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적극적 사업소득 기준은 소득의 95% 이상이 적극적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일 것을 요구하며, 호주 국세청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극적 사업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ITAA36 s 432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동적 소득, 위법한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통해 취득한 소득을 불법·불

로소득(tainted income)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사업소득은 적극적인 사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으로 본다. 사업소득을 각 개인에게 귀속시킬 때는 지분소유비율에 따라 귀속시킨다. 드미니미스 규정(de minimis rule)에 의하면 열거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총 매출액이 100만달러 미만이고 위의 세 가지 요소의 합계가 총 매출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된다. 총매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소의 합계가 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 드미니미스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손실은 이월이 허용되며, 자본양도차익에 대해서는 CFC의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하는 목적으로 수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CFC의 소득을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발생 당시에 과세하고 소득이 거주지 국가로 환수될 때 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CFC에 귀속되어 과세된 소득은 소득의 국내 이전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ITAA36 s 23AI). 이를 위해서 납세자는 환수되는 소득과 이전에 과세되었던 소득의 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CFC의 소득을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자신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납세자는 귀속소득 계정을 설치·운영하여 소득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두 가지 소득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ITAA36 s 264A에 의거하여 납세자에게 90일 내에 역외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통보를 할 수 있다. 이 통보서에서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그 통보에 응답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납세자가 그 통보에 불응하여도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그 통보에 불응한 데 대한 유일한 제재조치는 증거의 입증과 관련된 것으로서 납세자가 국세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았던 정보나 증거서류는 뒤에 이어지는 과세소득 관련 분쟁 절차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납세자는 과세소득의 귀속에 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양도인 신탁(Transferor Trust)

기관이 재산이나 용역을 비거주자인 임의신탁에 이전하였거나 비거주자이지만 임의

신탁이 아닌 신탁에 적절한 보수를 받지 않고 이전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과세소득 귀속 대상이 된다. 비거주자 신탁이란 호주 거주자로 인정되는 신탁이 아닌 신탁을 의미한다.

귀속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ITAA36 s 102AAZD(4)에 규정된 간주수익률(deemed rate of return)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 규정에 나타난 간주수익률은 법정이자율의 가중평균치보다 5%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전에 발생하여 축적된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이자가 가산된다.

3) 국외투자펀드(Foreign Investment Fund: FIF)

ITAA36 Pt XI(s 469에서 624)에는 국외투자펀드 소득에 대한 발생주의 과세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FIF 소득으로서 호주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모두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납세자의 과세대상 소득(AI)에 포함된다. FIF 소득 중 호주의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세 가지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 (1) 시장가치법
- (2) 간주수익률법
- (3) 추산법(Calculation Method)

시장가치법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에 호주 납세자가 보유한 지분의 시장가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해당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으로 보고 그 수익에 대해 연도에 배분된 금액을 더하여 당해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간주수익률법은 TAA s 8AAD에 규정된 GIC(General Interest Rate Charge)에서 3%p를 차감한 비율을 수익률로 보아 FIF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추산법은 납세자가 그 방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하는데, ITAA36 s 557에서 583에 규정되어 있다. 이 방법은 과세기간 동안의 FIF 이익이나 손실을 직접 계산하여 호주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미국 FIF에 대해서는 면세규정이 적용되는데, 미국 소재 FIF가 (i) 미국의 국내 세법에 의해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의무를 지는 법인으로 간주되는 기관 또는 (ii) 미국 세법에서 RIC(Regulated Investment Company)나 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로 인정되는 기관인 경우에 그 FIF에 대한 호주 납세자의 지분과 관련된 소득이 조건 없이 면제된다. 미국 세법에 규정된 RIC와 REIT는 미국에서 집합 투자기구로 넓게 활용되는 것으로서 수익 전액을 배당하는 투자펀드이다. FIF의 소득이 납세자에게 귀속되었을 때는 귀속회계(Attribution Account)의 차변에 기입하고 지급되었을 때는 대변에 기입하여 기록한다.

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호주는 외국에서 납부한 호주 거주자 소득에 대한 세액을 동 거주자의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ITAA97 Div 770의 외국납부세액 규정에 나타나 있다. 국외 원천소득이 호주 거주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모는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며, 과거의 다른 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도 허용된다. 그러나 공제세액이 호주에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는 해당 납세자의 호주 세액에서 국외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 즉, 국외소득에 대해 호주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된다. 외국납부세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납부세액은 이월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납세자에게 이전할 수도 없다(ITAA97 s 6370).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세자가 꼭 호주 거주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호주 국세청은 호주의 주요 국제거래 파트너 국가들의 세목 중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세목의 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물론 그 목록이 완전히 포괄적인 것은 아니므로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공제가 허용될 수도 있다. 또한 그 목록에는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5.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가. 배당소득

비거주자는 호주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 호주 정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ITAA 97 s 6-5(3)에서 6-010(5)).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도 호주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호주 거주자와 동등한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면세나 공제 등 규정도 특별히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본이득세와 관련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의료 부담금이 면제되나 FBT는 과세되고, 인적 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외국은행의 호주지점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ITAA36 Pt IVB).

배당소득의 경우를 보면, 비거주자가 호주에서 배당을 수취한 경우 원천징수세를 납부함으로써 호주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료되는데, 호주 세법상 세율은 30%이다(ITAA36 s 128B(1)).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이 적용되는데 대체로 15% 수준이다.

특정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① 세후 배당(frunked dividend), ② 세전 배당으로서 '도관해외소득(conduit foreign income)', ③ 특정 해외 자선기관, 공공병원, 그리고 비영리 문화·스포츠 공제회로서 호주 소득세 및 소득을 수취하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관에 대한 배당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 번째의 면세기관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a) 그 기관이 호주에 있거나, (b)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기부금 수취기관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c) 면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d) 지정된 종교·자선기관으로서 주 목적이 해외 선교·자선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 외에도 비거주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대체로 외국의 면세기관에 대한 배당액 지급, 통과기관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해서 원천징수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의 호주 내 지점에 지급한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순소득을 평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나. 이자소득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호주의 원천징수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 국외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것은 호주의 원천징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호주 내에서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지급액도 호주 원천징수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거주자의 명의로 호주에서 재투자되었다고 과세대상이 된다. 이자가 할인되었거나 이연된 증권에도 원천징수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은 10%인데, 이중과세방지조약에서도 대체로 제한세율을 10%로 정하고 있어 이중과세방지조약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는 무기명 차입증서에 대한 이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지점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특정 공채 이자, 특정 자선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채에 대한 이자 면세제도는 2008년 12월 9일 이후 지급분부터 주 정부와 준주 정부의 채권에 적용되었는데, 2009년 12월 4일부터는 국채 이자도 면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공개시장에서 다수의 채권자에게 매각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국내 원천징수세를 면제한다(ITAA36 s 128F).

다. 사용료

사용료에 대한 국내 세법상 세율은 30%인데 이중과세방지조약상 세율은 대체로 10%로서 조약체결 대상 국가 거주자는 적용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기업의 호주 지점에 귀속되는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고 지점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사용료에는 산업·상업·과학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는데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이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미국 및 영국과 체결한 조약에서는 산업·상업·과학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보지 않으며, 사용료 원천

징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라. 원천징수세의 징수

호주의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PAYG 원천징수로서 소득이 지급될 때 징수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원천징수세가 호주에서의 최종적 납세의무가 된다. 이는 해당 소득이 소득을 수취한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AI)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적절한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는 경우 과오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GIC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ITAA36 s 128D).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에 해당되며, 최대 10단위(penalty unit)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주의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세무대리인(agent)은 통상적인 의미 외에도 ① 해외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자금의 수취 및 지불을 담당하는 자, ② 해외에 있는 자가 예금 계좌를 설정한 호주 은행 등 국세청장이 대리인이라고 인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대리인이 해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때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금액을 지급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금전을 수취할 때는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비거주 신탁의 수혜자가 호주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탁이 납부한 호주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호주에서 관리되는 투자신탁의 특정 배당에 대해서는 할인된 세율이 적용된다(TAA Sch 1 Subdiv 12-19, s 12-375에서 12-420).

투자자가 과세자 번호(TFN)를 제공하지 않은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투자기구가 지급하는 경우에 그 투자기구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를 위하여 소득을 보관하고 집행을 대리하는 자도 PAYG 원천징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천연자원의 생산 및 복원 규모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천연자원 지급액(Natural Resource Payments)도 PAYG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마. 특정 범주의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외국정부의 대표에 대한 급여는 호주 과세가 면제되며, 다른 특정 비거주자나 호주 방문자 역시 호주 과세가 면제되는데, 면제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문가 자문에 대해 호주 정부 기관이 지급한 금액
-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취득한 소득
- 언론사 대표가 호주에 방문하여 컨퍼런스나 연구에 참여하여 취득한 소득
- 군 대표들에게 다른 국가가 지급한 소득(호주 정부가 지급한 소득은 과세함)
- 방위 전문가가 호주를 방문하여 취득한 소득으로 그 전문가의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되는 경우
- 비거주자가 호주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장학금을 호주정부가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보험업자가 호주에 지점을 두지 않고 호주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간주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간주수익률은 호주 사업에서 발생한 총 프리미엄의 10%가 된다.

주된 사업 장소가 국외인 자가 배를 소유한 경우 승객이나 우편, 화물을 호주에서 해외로 수송을 하여 받은 운임 총액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ITAA36 s 129에서 135A).

바. 일시적 거주자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호주에서 비과세한다. 그러면 단기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이 경우에도 배당·이자·임대료 소득·연금소득은 비과세한다. 그러나 피용자보수나 독립적 인적용역 보수·순자본이익은 과세대상이 된다. 일시적 거주자가 취득하는 CFC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자본소득이나 손실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비거주자로 본다.

6. 이중과세방지조약

호주는 <표 2-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45개국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로 OECD 모델조약을 기본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조세조약에 정보교환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국세청장이 JITSIC(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라는 모임을 만들어 국제조세 회피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다. 2009년 3월에는 캐나다와 정규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뉴질랜드와도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공동으로 협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버뮤다와는 특별 정보교환조약(TIEAs: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을 체결하여 2007년 9월 20일에 발효되었으며, 네덜란드 앤틸리스와의 TIESAs는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외에도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영국령 버진 제도(the British Virgin Islands), 맨 섬(the Isle of Man), 저지(Jersey), 지브랄터(Gibraltar), 건지(Guernsey), 쿡제도(the Cook Island), 아루바(Aruba), 사모아(Samoa)와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OECD 비회원국 중 여러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호주 정부는 홍콩, 싱가포르, 리투아니아와는 최대한 빨리 조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Australia Treasurer's Media Release, No. 16, 13 March 2009). 이런 국가들과 정보교환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은 조세피난처(tax havens)의 목록에서 빠지게 되고 이들 국가의 거주자들도 관리되는 투자신탁배분에 대해 낮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표 2-III-1〉 호주의 이중과세협정 체결 국가와 제한세율

(단위: %)

체결 국가	배당 제한세율	이자 제한세율	사용료 제한세율
아르헨티나	10/15	12	10/15
오스트리아	15	10	10
벨기에	15	10	10
캐나다	5/15	10	10
중국	15	10	10
체코	15	10	10
덴마크	15	10	10
피지	20	10	15
핀란드	0/15	0/10	5/10
프랑스	0/15	0/10	5/10
독일	15	10	10
그리스	-	-	-
헝가리	15	10	10
인도	15	15	10/15
인도네시아	15	10	10/15
아일랜드	15	10	10
이탈리아	15	10	10
일본	15	10	5
키리바시	20	10	15
한국	15	15	15
말레이시아	15	15	15/30
몰타	15	15	10
멕시코	15	10	10
네덜란드	15	10	10
뉴질랜드	15	10	10
노르웨이	15	10	5/10
파푸아뉴기니	15/20	10	10
필리핀	15/25	15	15/25
폴란드	15	10	10
루마니아	5/15	10	10
러시아	5/15	10	10/30
싱가포르	15	10	10
슬로바키아	15	10	10
남아프리카공화국	5/15	0/10	5
스페인	15	10	10
스리랑카	15	10	10
스웨덴	15	10	10
스위스	15	10	10
대만	10/15	10	12.5
태국	15/20	10/25	15
영국	0/15	0/10	5
미국	0/30	0/15	5
베트남	10/15	10	10

호주가 이중과세 방지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목록과 각 조약에 나타난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보면, 배당의 경우 대부분 15%의 단일세율로 세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두 개의 세율이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루마니아와 체결한 조약에서는 지분소유비율이 10% 이상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필리핀과 체결한 조약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수익적 소유자의 단계에서 세액공제되거나 환급되는 경우에는 15%, 그 외의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10%의 세율로 제한되며, 일부 경우에 12%, 15% 등 그보다 높은 세율로 제한하고 있다.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은 비교적 다양한데, 대체로 10%가 기본이 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1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7. 이전가격과세제도

호주의 이전가격과세제도는 OECD의 『다국적 기업과 과세관청을 위한 이전가격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and Tax Administrations)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ITAA36 PtⅢ Div 13에 규정된 호주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개인 독립된 기관 사이에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 따라 용역이나 재산을 공급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또는 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 즉, 본사와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 간의 거래나 지점 간 거래에 있어서 독립기업가격 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기업가격을 적용하지 않아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이전가격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Div. 13에 규정된 이전가격과세제도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GAAR)과 함께 ITAA36의 일반적인 규정보다 우선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GAAR은 조세상의 혜택을 주된 목적 또는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데 비해 이전가격과세 규정은 목적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전가격과세 규정과 이중과세방지조약의 관계를 보면 모든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이전가격 과세

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서로 일관성이 유지된다.

호주 국세청은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단계는 납세자 간의 거래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적합한 독립기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규정된 납세자 간의 거래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 독립기업 가격을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상의 결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즉, 재검토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조정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인하는 것이다.

독립기업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거래기준법으로 비교가능거래법(CUP), 재판매가격법(RPM), 원가가산법(CPM)이 있고 이익기준법으로 이익배분법(Profit Split Method)과 순거래이익법(TNMM)이 있다. 호주의 이전가격과세 규정에서는 이 방법 중 특정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어떤 순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 방법들만으로 적절한 독립기업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즉, (a) 비교가능 기준을 확장할 수도 있으며, (b) 극단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을 얻기 위해 내부수익률을 사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특정한 하나의 가격만을 고집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로 제시되는 독립기업가격 범위도 인정한다. 호주 국세청은 이전가격 조정에 있어 OECD 지침에 나타난 것에 비해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간접적인 가격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공식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이나 자산수익률 접근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TR 97/20). 그러나 일반적인 공식을 적용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 method)은 독립기업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외의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납세자들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 Schedule 25A를 함께 작성하여 독립적 기업가격 원칙을 적용하였는지, 적용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 국가에 소재하는 본사와 다른 국가에 있는 그 기업의 고정사업장이나 지점 간의 이익 배분, 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동일 기업의 고정사업장이나 지점 간의 거래와 같이 동일 기업 간 이익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이전가격과세제도가 적용된다

(ITAA36 s 136AE). 즉, 호주의 거주자인 납세자가 외국에서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반대로 다른 국가의 기업이 호주에서 지점이나 고정사업장을 수행하는 경우도 이전가격과세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에 독립기업 가격 결정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Taxation Ruling TR1999/1에 정리되어 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PA: Advanced Pricing Arrangements)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과세당국도 포함하여 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APA에는 독립기업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중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발생할 거래나 협약·협정과 관련하여 동합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납세자의 특정 거래나 협약·협정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소득과 지출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여기서 선정되는 방법은 호주의 이전가격과세 규정과 호주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의 독립기업가격 결정 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이어야 한다.

APA는 물론 호주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일방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쌍방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나타난 상호합의 규정을 따라 거래 상대국의 과세당국을 포함하여 쌍방 간 합의를 하여야 한다.

APA의 진행과정을 보면, 먼저 납세자가 적절한 독립기업 가격 결정 방법을 호주 국세청에 제시하고 그 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입증 자료에는 산업·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국세청이 그 방법에 동의하여 APA가 체결된 이후에는 매년 납세신고서에 APA를 적절하게 적용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번 체결된 APA는 그 후에 발생하는 거래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지만 이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V. 파트너십 · 신탁 등에 대한 과세

1.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 서론

가. 파트너십의 창립 및 존속

ITAA97 s 995(1)에 규정된 파트너십의 정의를 보면 세법상 파트너십은 수익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연대(association)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품앗이를 하는 농부들이 후자에 포함된다. 또한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의 공동 입자인도 일반적인 개념의 파트너십은 아니지만 세법상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 또한 무한책임 파트너와 유한책임 파트너가 공존하는 파트너십도 과세목적상 파트너십에 해당한다.

파트너십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파트너들이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파트너십의 설립에 대해 상호 동의를 해야 한다. 파트너십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파트너들의 의도를 입증하는 최종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합의서 외에도 파트너들은 행동으로 그 의도를 입증해야 한다.

파트너십의 존재 확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재산의 공동소유
- (2) 순이익의 공유(필수적인 요소임)
- (3) 공동의 은행계좌
- (4) 파트너십 계정 운영에서 파트너의 역할(권한)
- (5)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이름의 등록 및 그 이름하에서의 사업 운영

- (6) 채권자, 공급자, 고객의 파트너십 인정
- (7) 사업에 대한 기록 : 회계장부 및 파트너십 회의록
- (8) 파트너의 사업 참여
- (9) 자본금에 대한 공동 기여
- (10) 사무실의 공동 소유 또는 임대
- (11) 사업운영에 있어 각 파트너들의 재정적 이해에 대한 확인
- (12) 각 파트너들의 이익 배분액 인출 증거

나. 과세소득의 신고 및 세금의 납부

CLP(Corporate Limited Partnership)를 제외한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파트너십의 소득을 모두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파트너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파트너십도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파트너십에 적용되는 신고양식은 Form P이고, 신고서에는 파트너십 단위에서의 순소득·손실 및 순소득·손실을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근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때 배분은 실제로 그 소득이 분배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파트너십의 당해연도 소득에서 해당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너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서 PAYG 분할납부를 해야 할 의무도 갖지 않는다. 과세목적상 CLP는 법인으로 취급되며, 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양식 Form C를 이용하여 신고한다.

파트너십의 신고의무는 모든 파트너가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호주 거주자인 특정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신고의무를 이행해도 된다. 파트너 중에 호주 거주자가 없는 경우 호주에 있는 파트너십의 대리인이 신고의무를 갖게 된다.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십을 호주 거주자인 하나의 주체로 보아 계산한다. 파트너십의 소득세 신고에는 호주에 원천을 둔 소득과 손실의 배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 자본이득은 무시한다. 그리고 (a) 이름과 TFN, (b) 임금 및 급여를 포함하여 해당 파트너에 대한 호주 원천 소득 및 손실의 배분액, (c) 프랭킹 크레딧 중 해당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부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배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파트너십이 납부한 외

국납부세액은 파트너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그 공제를 위해 국외원천소득의 배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 명의 파트너가 세금 신고를 부정확하게 하여 세금을 과소납부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모든 파트너가 행정벌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파트너의 지분에 따라 분할 부담한다.

유한책임 파트너십(LP 또는 CLP)은 Part III Div 5A에 의해 과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벤처자본투자를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유한책임 파트너십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파트너십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VCLP라고 한다. VCLP는 유한책임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손실을 그 파트너의 파이낸셜 익스포저(financial exposure)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여기서 파이낸셜 익스포저란 해당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기여한 기여금에서 (i) 상환된 부분과 (ii) 이미 공제된 파트너십 손실, (iii) 파트너의 파트너십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발행한 파트너의 채무 지분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ITAA97 Div 830에 규정된 외국 하이브리드(Foreign Hybrid)는 다른 국가의 과세목적상 파트너십으로 인정되지만 호주에서는 법인으로 간주하는 외국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규정과 외국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단, 일반적인 파트너십에 적용되는 파트너십의 손실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s 94D(5), (6)). 외국 하이브리드에 대한 손실공제 제한규정은 VCLP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파트너들의 익스포저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해 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손실은 이월 공제가 가능하므로 나중에 파트너의 익스포저가 변경되어 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때 공제할 수 있다. 그 외에 외국 하이브리드는 CFC 규정이나 FIF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CGT는 국외 하이브리드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된다.

다. 파트너십 구성원의 변경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파트너의 구성이 바뀔 때 일반적으로 기존의 파트너십이 해체되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ATO는 파트너가 한 명뿐이었던 기간

이 없으며, 최소한 한 명의 파트너가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파트너십 구성원의 변화가 계약서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변화이고, 파트너십의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파트너십이 재구성(reconstitute)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새로운 파트너십이 하나의 신고서만 작성하면 재구성이 인정되며, 이 때 이전의 파트너를 포함하여 모든 파트너에 대한 이익 배분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도 (i) 해산시기, (ii) 재형성시기, (iii) 모든 파트너의 이름, (iv) 신규 파트너에 대한 인적사항(TFN, 주소, 생년월일 등), (v) 파트너십 대표자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파트너십이 이익을 발생 기준이 아니라 현금 기준으로 분배하는 경우에 한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은퇴하고 그 파트너의 장부상 부채를 포함한 파트너십 지분이 매각되면 그 파트너나 파트너의 상속인이 판매 가격 중 장부상 부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한편 지분을 매입한 자 즉, 새로 가입하는 파트너는 그 부채가 실현되었을 때 그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는 그 부채와 관련된 세금은 이전의 파트너십을 대체하여 생성된 새 파트너십의 자본 출자 시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라. 순소득·순손실의 계산과 배분

파트너십 단계에서 순소득 또는 손손실을 계산할 때 파트너십을 하나의 거주자인 납세자로 보고 계산하므로 국내·외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순소득과 손손실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CGT 규정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순자본이익은 파트너의 수입에 반영된다. 파트너십에서 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손실도 파트너에게 배분하여 파트너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전년도 손실 중에서 파트너십 단계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외국의 손실과 기업연금기여금뿐이며, 그 외에는 파트너십 단계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외에 많은 특별 조세지원제도도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파트너십 단계에서 적용된다. PAYG 분할납부는 경상소득만을 근거로 납부액을 계산하며, 법정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은 파트너십의 이자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파트너십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투자재산의 공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무신고 과정에서 해야 하는 선택사항으로서 파트너십의 소득과 손실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파트너가 아니라 파트너십 단계에서 한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가치 평가,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하는 자산의 가치 계산, 1차 산업의 비정상적인 거액의 수입과 관련한 선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파트너십이 선택한 것은 모든 파트너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피고용인이 될 수 없으므로 파트너십의 파트너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이익을 분배하는 수단으로 본다. 그러므로 파트너에게 지급한 급여는 파트너십의 비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파트너십의 계약서에 파트너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항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파트너의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본다. 파트너의 친지나 관계된 기관에 대한 지급의 경우 지급액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국세청장이 공제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금액은 파트너십의 소득에 가산하여 파트너십의 순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손손실을 감소시키도록 하지 않고 파트너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

파트너십의 손실은 파트너에게 배분되어 파트너의 개인소득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다. 2008/09년 이전에는 국외 손실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안에서 차기 이월을 허용함으로써 완전한 공제를 보장하였으나 2009/10년부터는 당해연도에 파트너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즉,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차기 이월이 허용되지 않는다. 파트너에게 배분된 손실은 파트너 단계에서 차기 이월이 가능하다.

파트너십의 면제소득은 파트너십을 거주자인 납세자로 보고 호주에 원천을 두고 있는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파트너가 호주 거주자인 경우 파트너십에 면제소득이 있고 동시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면제소득에서 손실을 공제하지 않고 면제소득은 면제소득대로, 손실은 손실대로 파트너에게 배분하고, 파트너 단계에서 소득세 신고 시 면제소득에서 손실을 공제한다.

파트너십의 소득 중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것은 배분받은 파트너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이 때 배분은 실제로 파트너에게 지급되었는지와는 관계 없이 파트너에게 배분되어야 할 몫을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너가 파트너십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도 포함하며, 자본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본을 환수한 것은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파트너는 과세대상 소득에

서 자신에게 배분된 파트너십의 손실을 공제한다. 면제소득과 과세대상도 아니고 면제대상도 아닌 소득도 과세대상 소득과 동일한 근거에 따라 배분한다.

파트너에 대한 소득 배분비율은 통상 파트너십 계약서에서 규정하는데, 그 배분비율이 실제 지분과 판이하게 다른 경우 실질을 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트너십 계약에 나타난 배분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별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에 허용된 세액공제에 대해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예를 들면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이에 해당한다. 파트너십이 CGT를 납부한 이후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각각의 파트너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 단계에서도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외에 몇 가지 공제 관련 규정을 보면 파트너를 위해 파트너십이 지불한 생명보험료는 파트너십 단계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파트너 단계에서는 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파트너의 개인연금 기여금도 마찬가지이다. 파트너 중에서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그 파트너는 비거주자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s 92).

파트너는 파트너십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파트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배분되도록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분에 귀속되는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이 때 소득의 배분을 지정받는 사람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한계세율이 높은 납세자가 자신의 가족 중 한계세율이 낮은 자에게 소득을 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 소득을 배정하게 되면 손실도 비례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연방대법원 판례 *Everrett's Case*).

가족 파트너십(Family Partnership)의 경우 가족 간 소득의 분할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되지 않는(uncontrolled)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한다. 통제되지 않는 파트너십 소득이란 파트너에게 배분되어야 할 파트너십의 순소득 중에서 그 파트너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실질적인 통제의 가능 여부는 ① 파트너십 계약서, ② 경영과정과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드러난 파트

너십 운영에 대한 영향력, ③ 파트너십 사업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통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의 세율은 45%에서 그 납세자가 납부한 것으로서 세액공제와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통상적인 세금의 평균세율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개인소득세 최고 한계 세율인 45%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신탁과 수혜자, 상속신탁

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의무

재산 또는 소득의 신탁이란 특정 목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특정인(수탁자, trustee)에게 재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수탁자가 명목상 재산을 보유할 수는 있으나 수탁자는 신탁 조건에 따라 그 재산을 활용해야 한다. 사망자의 재산관리인은 일반적 의미의 수탁자는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수탁자로 취급한다(ITAA36 s 6(1)). 사망한 자의 유언에 따라 수탁자가 설립한 회사는 세법상 수탁자가 아니다. 세법상 신탁은 수탁자에게 맡겨져 재산을 창출하는 소득을 말한다.

신탁의 수익에 대해 매년 Form T를 사용하여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신고는 호주 거주자인 수탁자 중 한 명이 하면 된다. 단 법인단위 신탁(Corporate Unit Trust)이나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신탁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Form C를 사용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 중에 호주 거주자가 없는 경우 신탁 관리인(public officer)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탁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호주의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은 과세연도가 종료된 해의 10월 31일이다. '투명 신탁(transparent trust)'이나 '담보구매신탁(Secured Purchase Trust)'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수혜자에게 분배하고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Practical Statement PS LA2000/2). 신탁자가 신고 시 오류를 범하여 수혜자가 세금을 과소납부하게 되는 경우 신고한 수탁자가 행정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망자 신탁의 수탁자는 사망자의 사망 시까지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와 신탁에 대한 Form T 신고를 병행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사망 후 발생한 재산소득과 사망 후 수탁자가 수취한 소득으로서 사망자가 생전에 수취하였다면 그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었을 소득도 포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지불한 고인의 의료비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신탁의 대표자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자로서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세청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혜자에게 이익을 분배할 때 벌금을 포함한 세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전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충분한 금전을 유보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납세의 무가 없다.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호주 원천소득이 있는 국외 신탁은 신탁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탁자의 납세 관련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일과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 발생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나.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신탁은 독립된 별개의 과세대상 주체가 아니다. 즉, 수혜자가 신고의무를 수행하고 세금 납부를 대행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납세자는 최종 수혜자가 된다. 수탁자는 수혜자에 즉시 배분되지 않은 소득, 수혜자에게 배분되었지만 법적인 이유—미성년자 등—로 수혜자가 즉시 소득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의무를 가진다(ITAA36 s 96). 세금은 신탁소득이 발생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혜자가 그 소득을 당해 연도에 실제로 분배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다(Pt III Div 6(s 95에서 102까지)).

신탁의 해외소득은 (a) 수혜자가 비거주자이거나 (b) 즉시 배분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특정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볼 때 그 신탁이 당해연도에 비거주 신탁인 경우 당해 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에게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세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또한 해외소득을 발생 즉시 귀속시킬 수 있는 수혜자가 없는 경우에도 그 신탁이 호주 거주자인 신탁이면 당해 연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s 99 또는 99A). 이 경우 나중에 비거주자인 수혜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납부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한 수탁자가 여러 개의 신탁을 받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신탁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에 수혜자가 미성년자로서 특별한 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한 신탁에서의 소득이 416달러 미만이라도 모든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하여 416달러 이상이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호주인이 지배하는 비거주 신탁은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과세대상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신탁의 순소득

총 과세대상 소득에서 허용되는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순소득이 되는데, 총 과세대상 소득에는 신탁을 하나의 거주자인 납세자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도 모두 포함된다. 공제액이 과세대상 소득보다 많이 발생하는 신탁의 손실은 차기 이월이 가능하다. 즉, 파트너십과는 달리 손실은 당해연도에 신탁의 수혜자나 집합체로서의 수탁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와 유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당해 연도 손실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세손실이 면제소득보다 적으면 손실을 면제소득에서 공제하고 면제소득과 과세손실의 차액만 수혜자의 면제소득으로 배분된다. 신탁소득의 성격은 수혜자 단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며 과세손실이 면제소득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수혜자 단계에서 다른 소득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탁자는 PAYG 분기별로 분할납부액을 계산하여 수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의 원천의 신탁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그 소득을 즉시 배분받을 수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탁이 국내 신탁인 경우에만 그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이 소득이 나중에 수혜자에게 배분되고 그 소득이 수혜자가 비거주자인 기간에 수혜자에게 귀속된다면 그 수혜자는 신탁 단계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s 99D).

즉시 배분받을 수혜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대법원 판례 Whiting; Tayloe; Union Fidelity Trustee Co. of Australia).

- (1) 수혜자가 신탁의 소득에 대한 파기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보장된 수혜적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 (2) 수탁자가 신탁의 소득을 수혜자에게 즉시 분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수혜자가 법적으로 그 소득을 분배받을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 배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손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신탁의 손실과 특정 채무의 공제는 특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i)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과세손실(s-271-140)
- (ii) '채무공제' 중 악성채무 공제와 부채/자본 스왑 공제

이들 손실과 채무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위해 만족시켜야 할 조건은 ① 소유권 또는 통제와 관련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② 신탁의 단위 내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없어야 한다. 소유권 또는 통제와 관련된 규정은 <표 2-IV-1>에 나타난 바와 같다.

50% 지분소유 조건은 테스트 기간 중 동일인이 50% 이상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SBT 조건은 테스트 기간 중 동일한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리고 배분방식 조건은 매년 50% 이상의 소득을 동일한 개인에게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자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통제 조건은 어떤 신탁집단이 비고정 신탁을 지배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며, 소득투입 조건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다.

〈표 2-Ⅳ-1〉 신탁의 손실 공제를 제약하기 위한 소유권·통제 관련조건

신탁의 종류	조건	50% 지분소유	SBT	배분방식 조건	통제	소득 투입
(1) 고정신탁-분산소유신탁 제외		√				√
(2) 비상장 분산소유신탁		√				√
(3) 상장 분산소유신탁		√	√			√
(4) 비상장 광범위한 분산소유신탁		√				√
(5) 대규모 분산소유신탁		√				√
(6) 비고정신탁		√		√	√	√
(7) 가족신탁						√
(8) (7)을 제외한 ET(Excepted T)						

자료: CCH(2010)

라. 법인단위신탁(Corporate Unit Trust) 등

공개 신탁으로서 기업의 조직변경 계약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업이나 다른 재산이 단위신탁으로 이전되고, 그 기업의 주주에게 그 단위신탁의 단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를 세법에서 법인단위신탁이라고 한다. 공개신탁이란 (i) 신탁의 어떤 단위가 주식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ii) 50명 이상이 그 단위신탁을 보유하거나, (iii) 어떤 단위가 대중에게 매각하기 위해 제공된 신탁을 말한다. 단위신탁 지분의 75% 이상을 20명 이하의 사람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개단위신탁이 되지 못한다. 공개 단위신탁은 법인으로서 과세된다.

PTT(Public Trading Trust)도 법인으로서 과세되는데, 공개단위신탁으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신탁(trading trust)이고, 해당 연도에 호주의 거주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전년도에도 공개거래신탁이었던 신탁을 말한다. 법인단위신탁은 PTT가 아니다. 단위신탁이 트레이딩 신탁이라는 의미는 신탁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한다(s 102N).

MIT(Managed Investment Trust)는 일종의 PUT와 같은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로서 과세상 MIT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신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 MIT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기업연금기금 및 기여금에 대한 과세

가. 기업연금기금에 대한 과세

호주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에 기업이 기업연금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여 노후 연금의 기본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기업연금 기금에 대한 과세와 기업연금 기여금에 대한 조세지원, 그러한 조세지원에 대한 제약, 기업연금기금에 대한 SIS(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감독체계에 대해 정리한다.

기업연금기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면 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연금 기금이 수취한 인정된 기여금(concessional contribution)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인정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혜자인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되며, 인정된 기여금도 연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과세한다. 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연금기금은 자금을 적립하는 단계에는 그 수입에 대해 1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현재의 연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기업연금기금이 정액으로 또는 연금의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정액퇴직금이나 이와 관련된 지급을 하는 경우에 이들 지급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통해 조세지원을 한다.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호주의 기업연금기금은 45%의 세율로 과세하며, 외국의 기업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연금 기금은 두 가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하나는 모든 기업연금기금이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독비 부담(Supervisory Levy)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지원기금 부담(Financial Assistance Funding Levy)이다. 이 기여금은 통제를 받는 기업연금기금과 ADFs가 납부하는 것으로 SISA Pt 23에 규정된 사기나 절도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규모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다.

나. 기업연금 기여금에 대한 과세

기업연금기금에 대한 기여금은 의무기여금과 자발적 기여금, 그리고 금지된 기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주는 피용자를 대신하여 기업연금기금에 의무기여금을 기여하여야 하는데, 75세 이하 피용자에 대해 지급한 의무기여금은 전액 무제한으로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기여금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여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기여금에 대한 세금은 그 혜택을 받는 개인이 납부한다.

공제금액의 한도는 2009/10년 2만 5천달러였는데, 이것은 2008/09년의 5만달러에서 줄어든 것이다(ITAA97 s 292-20). 이 한도금액은 AWOTE의 증가에 연계하여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해당 연도에 50세 이상이 되는 개인의 경우 2008/09년에는 공제한도가 10만달러였는데, 2009/10년부터 2011/12년까지는 5만달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기여금은 기업연금 기금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초과 비지원 대상 기여금에 대해서는 개인 단계에서 46.5%의 세율로 과세된다.

65세 이하 개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연금기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연령이 65세에서 75세 사이인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공제가 허용되거나 정부가 공동기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 초과기여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의 연금에 대한 기여는 배우자를 위한 기여도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다. 연금 혜택

기업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으며, 연금 형식으로 매년 지급받을 수도 있다. 펀드 운영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혼합도 가능하다. 기업연금 펀드의 이익은 펀드 내에 유보되어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 지급도 가능하다. 기업연금 혜택은 이전이 가능하다. 즉, 조세 혜택에서의 불이익 없이 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러한 이동이 이전하는 펀드와 이전을 받는 펀드 그리고 SISR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연금기금은 기업연금 산업법에 규정된 대로 퇴직이나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SISA s 10; ITAA97 s 995-1(1)). SISA에 의하면 기업연금 펀드는 (a) 무한정 지속되는 펀드로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의 퇴직연금 또는 (b)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기업연금제도를 말한다. SMSF(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s)는 5인 이하의 회원이 자신들의 연금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형성한 펀드를 말한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펀드들이 SISA와 RASS(Retirement Savings Account Act 1997)에 규정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ITAA97 Div 295에 규정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ADFs(Approved Deposit funds), PSTs(Pooled Superannuation Trusts), RSA(Retirement Savings Accounts)를 공급하는 금융기관.

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연금 기금이란 (a) 기금이 존재하였던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전 기간에 걸쳐 호주의 기업연금(일정 기간 동안 호주 거주자인 ADF인 경우 포함)으로서 호주 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연금기금이어야 하며, (b) 규제조항들의 요구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규제를 받는 기업연금(regulated superannuation funds)은 ① 펀드를 설립한 후 60일 이내에 APRA에 (또는 규정에 나타난 다른 자에게) 적절한 승인된 양식으로 SISA의 적용대상이 됨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② 그리고 펀드 관리 규정이 호주의 법인 수탁자를 요구하거나 (‘the corporations route’) 펀드의 주된 목적이나 유일한 목적이 고령연금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것(the ‘pension route’)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SISA s 19; SISR Reg 1.04A)

라. 과세소득과 납부세액

기업연금기금의 과세소득 및 세부담액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다.

1단계 : 기업연금기금은 납세자 번호가 없는 기여금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ITRA86 s 29에 나타난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에 의해 설립된 펀드의 경우 15%, 그 외 펀드의 경우 31.5%의 세율이 적용된다.

2단계 : Div 295에 나타난 특별 규정을 적용하여 기관(entity) 단위의 과세소득과 공제액을 계산한다.

3단계 : 수탁자가 호주 거주자인 것으로 가정하여 과세소득(TI)을 계산한다. 국외 기업연금으로서 호주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펀드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4단계 : 과세소득 중에서 기관의 저율 과세요소와 비독립가격요소(non-arm's length components)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5단계 : 각각의 소득에 대해 ITRA에 나타난 각 요소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즉, 저율 과세요소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비독립가격 요소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연금 기금이나 ADF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6단계 : 5단계에서 계산된 세액으로부터 기관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액을 차감한다. 개별 펀드의 경우 위 1단계부터 5단계를 거쳐 계산한 세액에서 펀드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액을 산출한다(ITAA97 s 295-10(1)).

기업연금 펀드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다른 경우와 같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ITAA97 s 295-85와 295-90).

- 기업연금 기관에 대한 자본이득세 납부연장 : 1994년 1월 11일 이후 행해진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규제를 받는 기업연금 기금이 SISA의 규정에 맞도록 신탁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 수정으로 인하여 펀드의 자산과 회원들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된 조치이다.
- 현행 연금 지급 펀드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제 : 현재 발생한 연금지급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정상적인 과세대상 소득은 과세를 면제한다.
- 이중과세 방지 : 기업연금 기금의 수탁자가 자산을 처분하였고 (결과적으로 자본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자산의 시장가치는 ITAA97 s 295-325(규제받는 펀드가 비규제 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와 ITAA s 295-330(비거주자인 펀드가 거주자인 펀드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에 의해 전년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전년도의 순소득으로 반영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CGT

규정에 의해 계산한 자본이득을 축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규제를 받는 기업연금 기금에 대한 특별 면세 규정 : 펀드가 PSTs(Pooled Superannuation Trusts)나 생명보험에 투자한 경우 발생한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한다. PST의 단위를 처분하거나 생명보험 증권을 처분하여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CGT를 면제한다.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처분손실은 다른 자본이득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연금 지급을 지지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마. 허용되는 공제, 세액공제, 조세지원 등

ITAA97 s 8-1에 의하면 기업연금 펀드는 과세대상 소득을 형성하는 데 소요된 비용만 공제할 수 있다. 기업연금 펀드에도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데, Superannuation Funds, ADFs, PSTs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Taxation Ruling TR 93/17에 의하면 기업연금 기금의 경우 (1) 과세대상 소득에 필수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서 (2) 사업의 영업비용이나 운영비용, 또는 펀드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자본적 성격, 사적비용을 제외한 모든 것이 공제 가능한 비용이 된다.

가능한 세액공제의 내역을 보면 기업형 기업연금기금(Corporate Superannuation Funds)은 배당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기업연금기금이 배당을 수취한 경우에 연금기금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배당을 지급한 기업이 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위한 프랭킹이 허용되지 않는다. 생명보험이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증권의 몰수, 권리의 포기 등으로 인하여 증액배당(reversionary bonus)이 된 경우 ITAA36 s 160AAB(5A)의 규정에 의해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 환불금액은 모든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세액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비독립거래 소득은 ①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취급하지 않아 독립적인 거래의 경우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② 독립적인 거래와는 차이가 나는 비공개 기업의 배당, ③ 임의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과 고정된 자격을 유지함으로 인

해 신탁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이 해당된다.

납세자번호가 없는 기여금일 때 통상적인 세금에 더하여 규제를 받는 펀드의 경우 31.5%, 규제를 받지 않는 펀드의 경우에 1.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세율이 46.5%가 된다. 이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5%에 의료 부담금 1.5%를 더한 것과 같다. 즉, 펀드가 수혜자의 납세자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을 의미한다.

국의 기업연금 펀드는 규제대상이 아닌 펀드로서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즉, 호주 원천의 이자 및 호주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소득세가 면제되며, 펀드가 거주지 국가에서 면세기관이면 호주의 원천징수세도 면제된다(ITAA36 s 128B(3)(jb); s 128B(3)(a); ID 2009/67). 정부나 준정부 펀드는 민간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ADF가 기업연금의 혜택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져서 ADF로부터 기업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기업연금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규제순응 요소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의 요소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PST(Pooled Superannuation Trusts)는 규제를 받는 기업연금펀드(regulated SF)나 ADF, 또는 다른 PST의 자산이나 기업연금/FHSA 자산, 생명보험회사의 분리된 면세자산을 투자하는 데 활용된다.

RSA(Retirement Savings Account)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사업으로서 기업주가 기업연금 대신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에게 공개된 연금계좌를 말한다. 개인도 개인 연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세금은 연금기금에 적용되는 ITAA97 Div. 295 규정을 따른다. 단, 생명보험회사의 RSA에 대해서는 Div 320의 규정이 적용된다. RSA 요소/FHSA 요소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업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의 RSA에 대한 기여금은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금과 동등하게 비용공제가 허용되며, RSA 혜택에 대해서도 기업연금 혜택과 동등하게 과세된다.

4. 개인연금(RSA) 계정에 대한 과세

개인은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나 실업자, 은퇴자 등이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연금 불입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피용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공동기여금 형식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기업연금기금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된다.

개인연금 기여금 중 공제 가능한 기여금을 수취한 펀드는 펀드 단계에서 15%의 세율로 과세된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31.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총 세율이 46.5%가 됨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개인적 기여금은 그 납세자의 과세대상소득과 신고대상 부가급여(fringe benefits)의 합계의 10%를 한도로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것을 10% 룰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9/10년부터는 납세자의 피용자로서의 활동에서 비롯된 피용자의 기업연금만 신고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고용관련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적 기업연금 기여금은 당해연도 소득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배우자를 위한 기여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배우자의 과세대상 소득과 부가급여, 신고대상이 되는 고용주의 기업연금 기여금의 합계가 1만 3,800달러 미만인 경우에 세액공제가 허용되는데, 다음 (1)과 (2) 중 작은 것의 18%가 공제된다(ITAA97 s 290-235).

- (1) 3천달러를 최대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의 과세대상 소득과 부가급여, 신고대상이 되는 고용주의 기업연금 기여금의 합계가 1만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1달러당 1달러씩 차감한 금액
- (2)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기업연금 기여금

5. FHSA와 동 계정 소유자에 대한 과세

FHSA의 경우 개인은 세후소득으로부터 기여하므로 FHSA 공급자의 단계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정부가 FHSA에 가입한 개인을 위해 지급하는 기여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FHSA로부터 발생한 개인의 소득은 과세대상 소득도 아니고 면세소득도 아니다.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FHSA로부터 인출한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FHSA의 소득은 FHSA 단계에서 15% 세율로 과세되며, FHSA가 기업연금기금에 기여한 지급액은 그 지급을 받은 펀드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금액은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개인의 기여금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그 지급액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동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FHSA에 대한 과세를 보면 FHSA 계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FHSA 수탁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ITAA36 Pt III Div6에 규정된 신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FHSA 신탁 자산은 CGT가 33.3% 할인되며, ADIs의 FHSA 활동은 RSA와 유사한 기준으로 과세된다. FHSA를 공급하는 ADIs는 FHSA에 크레딧을 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RSA와 마찬가지로 ADIs는 그들의 FHSA 활동과 관련하여 CGT 할인을 받을 수 없다. FHSA를 공급하는 ADIs는 그 소득 중 FHSA 요소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프랭킹 크레딧이나 데빗(debit)을 받을 수 없다.

V. 기타 과세

1.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ITAA97 Pt 3-1과 3-3에 규정되어 있다.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는 순자본이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각 실체(개인, 법인 또는 기금)의 소득세 신고서상에 포함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상 세율로 과세된다. CGT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본이득은 순자본이득이며, 자본손실은 당해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다음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자본이득 외의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자본이득세는 자본이득이 실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과세가 발생하는데, 자본거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시한이 되었을 때 과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파트너십은 자본이득과세 목적상 통과기관이다.

순자본이득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계산한다.

1단계 : 자본 이득에서 당해 연도의 자본 손실 차감

2단계 : 전년도에 공제되지 않은 자본 손실 차감

3단계 :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

4단계 : 중소기업(SMB)에 대한 조세지원 적용

5단계 : 4단계 이후에 남은 자본 이득을 모두 합산

3단계의 할인율은 개인과 CSF(Complying Superannuation Fund), ADFs(Approved Deposit Funds), PST(Pooled Superannuation Trusts), 신탁,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의 기업연금/FHSA(First Home Saver Account) 자산 관련 자본이득으로서, 1999년 9월 21일 이후에 이득이 발생하였으며, 기준비용이 물가에 연동하여 계산되고, 납세자가 12개월 이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12개월 미만 보유한 자본이득의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만족되어도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할인율은 자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과 신탁의 경우 50% 할인율이 적용되고, CSF, FHSA 신탁,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연금/FHSA 자산인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이득과세 대상 자산의 경우에는 33.3%가 할인된다.

이전 연도에 발생한 기업의 손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될 때만 이월할 수 있다. 즉, 동일인이 주요 소유자인 경우 또는 손실의 발생에서부터 공제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아무도 기업의 투표권을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 손실의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금년도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연도 중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본이득과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다.

- 자본이득과 손실을 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공제 부인
- 연결기업의 자본이득과세
- 기업의 미실현 손실에 대한 제약
- 기관 간 손실의 중복공제

자본이득과세 대상 자산은 재산, 재산이 아닌 법적인 권한 또는 이와 동등한 권한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s 108-5).

- (i) 재산이나 재산이 아닌 법적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의 권한의 일부 또는 그에 대한 지분
- (ii) 영업권(goodwill) 또는 영업권에 대한 지분
- (iii) 파트너십 자산에 대한 지분
- (iv) 파트너십 자산이 아닌 파트너십에 대한 지분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식, 미술품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500달러 미만의 재산은 제외하며, 개인적인 용도의 재산의 경우 1만달러 이하는 과세를 면제한다.

자본이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품목이 있는데, 감가상각 자산 및 R&D에 대한 규정에 따라 손익조정(balancing adjustment)이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손익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본비용만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지 않는다. 토지 개발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자산 및 R&D에 대한 규정에 따라 손익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준비용은 ① 취득비용, ② 부대비용, ③ 소유권 비용, ④ 개량비용, ⑤ 면허비용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순비용에서 자본이득을 차감한다. 그리고 Div 114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요소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자본이득과세 면제/공제 규정을 보면, 자동차, 오토바이, 무공훈장, 500달러 이하의 수집품, 특정한 인적 용도의 자산, 면제 소득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 PDF의 지분은 면세자산이 된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본이득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도 면제된다. 그리고 자본이득세가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를 축소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주(主)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거주 주택의 인접토지 및 관련 건축물은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주택과 분리하여 처분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 군데만 주거주 주택으로 인정받으며, 주택이 소득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부분적인 면제만 허용된다.

2.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 Tax: FBT)

가. 서론

호주의 부가급여세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복리후생비 및 각종 보조비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호주에서 현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직원에게 보상하는 것은 이런 부가급여세 때문에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부가급여세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혜택에 대해 세전금액으로 환산하여 46.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소득세를 납부한 후 각종 비용을 종업원 월급에서 지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누락된 세금을 부가급여세(FBT)를 통해 징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부가급여에 GST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분리하여 기록해야 소득세를 계산할 때 편리하다. GST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가급여로 고용주가 종업원의 의료보험이나 교육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때는 세전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가 GST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수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은 수령한 부가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신탁, 법인, 법인이 아닌 협회(unincorporated associ-

ations) 또는 정부기구 중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급여세는 고용주에게 납세의무가 지워진다.

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부가급여세는 Fringe Benefit Tax Assessment Act 1986에 의해 고용주가 종업원 및 그 관계자(배우자와 자녀 포함)에게 현금 이외의 현물 또는 이익을 공여했을 경우 고용주에게 과세된다. 부가급여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된다. 또한 부가급여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부가급여란 고용의 대가로 제공되는 혜택으로서 고용주나 고용주의 관계자 또는 고용주와 합의된 제3자가 피고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급여는 급여 또는 임금을 대신하거나 추가하여 피고용자에게 제공되며, 부가급여에 해당되는 혜택은 자동차나 주택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특권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가급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 회사 명의의 차량을 피고용인이 사용하였을 때
- 무이자 또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회사에서 대출을 해 주었을 때
- 회사가 주차장을 제공하거나 주차비를 부담했을 때
- 주택·숙박 시설을 제공해 주었을 때
- 무료 혹은 할인 항공료를 지급했을 때
- 각종 오락 시설을 제공했을 때
- 각종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을 때

직업의 특성상 업무와 관련된 다음의 항목은 부가급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휴대용 전자기기장치에 대해서는 고용인 1인당 1대만 부가급여세 면제가 가능하다.

- 휴대용 전자기기장치
- 컴퓨터 소프트웨어
- 보호의류 및 장구류

- 서류가방
- 영업을 위한 장비류
- 특정 금액 이하의 부수적인 혜택들

다. 세율

부가급여세는 그로스업 원칙(gross-up rules)에 입각하여 ‘부가급여세 과세대상 급여의 세전금액(fringe benefits taxable amount)’에 부가급여세 세율인 46.5%를 적용함으로써 계산된다. 부가급여는 종업원이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된 세액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납부한다.

종업원에 의해 수령되는 부가급여는 해당 급여가 ‘GST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급여(GST-creditable benefit)’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유형 1 급여는 급여 관련 조항에 의해 또는 부가급여로서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이기 때문에 부가급여 제공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이다. 유형 2 급여는 본질적으로 유형 1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다. 부가급여세는 고용주가 제공한 부가급여가 배당가산(그로스업, gross-up)된 과세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데, 유형별 그로스업(배당가산) 계수는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한다. 이 산식대로 FBT 세율과 GST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유형 1의 그로스업(배당가산) 비율은 0.4420, 유형 2는 1.8692가 된다.

$$\text{(유형 1) 그로스업(배당가산)비율} = \frac{\text{FBT 세율} + \text{GST 세율}}{(1 - \text{FBT 세율}) \times (1 - \text{GST 세율}) \times \text{FBT 세율}}$$

$$\text{(유형 2) 그로스업(배당가산)비율} = \frac{1}{(1 - \text{FBT 세율})}$$

납부된 부가급여세는 소득세 공제 항목 중 하나로 차감 계산이 허용된다. 하지만 종교기관, 상인조합(trade unions) 및 과학, 자선 또는 공공교육 기관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 고용주들은 부가급여세를 소득세 공제 항목으로 차감 계산할 수

없다.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이들에 대해서는 부가급여세 총액의 48%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일부지만 종업원이 부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조로 고용주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이를 '종업원 분담금'(employee contributions)이라고 한다. 종업원 분담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차량과 관련된 법정 비용이다. 이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종업원 분담금은 전액 부가급여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며, 고용주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라. 신고와 세금의 납부

부가급여세 과세연도(FBT year)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다. 부가급여세 신고서는 매년 5월 2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데 다른 세목들에 비해 제출 기간이 짧은 편이다. 부가급여세 신고서는 고용주에 의해 작성되며 여기에는 과세기간 중 얼마나 많은 수의 종업원이 부가급여를 수령했는지 명시해야 한다. 부가급여세는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세무당국의 부과결정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부가급여세 과세연도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분기별 분할납부가 이루어진다.

〈표 2-V-1〉 FBT 분할납부일 및 금액¹⁾

	GST 분기별 신고자	GST 월별 신고자	금액
제1회차	2007년 7월 28일	2007년 7월 21일	각 회차마다 2006/07년도 FBT 총액의 25% ¹⁾
제2회차	2007년 10월 28일	2007년 10월 21일	
제3회차	2008년 2월 28일	2008년 1월 21일	
제4회차	2008년 4월 28일	2008년 4월 21일	

주: 1) 기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에 기재된 다른 세금과 합산하여 납부.

2006/07년도의 FBT 총액이 3천호주달러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필요.

3천호주달러 미만이면 신고서 제출 시에 납부. 신고기한은 2008년 5월 21일.

자료: KPMG(2007).

제3편 소비과세 및 지방세

I. 부가가치세

1. 서론

호주 정부는 1998년 8월에 혁신적인 조세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1999년 6월에는 상원에서 GST(Goods and Service Tax)의 도입과 개인소득세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계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930년대 완성된 소득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GST라는 간접세를 도입함으로써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였다. 이에 따라 1930년에 도입하여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도매거래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종의 부가가치세인 10%의 GST를 부과하게 되었다.

기존의 연방정부의 주요 간접세인 도매거래세는 도매 단계의 재화 매출에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개혁 당시 도매거래세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보츠와나(Botswana),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 가나(Ghana), 요르단(Jordan), 파키스탄(Pakistan), 스와질랜드(Swaziland) 6개국에 있었을 정도로 소수의 나라에서만 시행되던 조세제도였다. 도매거래세의 면세품목은 대부분의 식품, 옷, 책, 잡지, 신문, 건축가재, 약품, 식물, 장비, 1차 생산에 사용되는 소모품(비생산적인 행정, 판매, 물류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제외)이다. 재화에만 과세되고 용역에는 과세되지 않아 과세기반이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각 재화별로 면세부율 최고 45%(0%, 12%, 22%, 32%, 37%, 41%, 45%)에 이르는 7가지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율구조도 복잡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1930년대에는 거래단계가 단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거래단계가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과세시점인 도매 단계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이런 점을 악용하여 조

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도매거래세는 대부분 다른 제조업자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제품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더러 수출업자의 경우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었다. 기업의 투자결정에 있어서도 수익성보다는 세금처리를 우선시하는 행태가 조장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호주 정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신 조세체계에 따라 현행 연방 또는 주 정부의 간접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로 단일화하였다. 새로운 GST 제도에 의해 연방정부 관할 간접세인 도매거래세 및 주정부가 징수하는 9종의 간접세가 통합되는데 이는 <표 3-I-1>에 제시된 바와 같다²⁵⁾.

주정부도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과세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과세권은 헌법에 의해 그 종류와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소득세도 과세할 수는 있으나 연방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주정부의 소득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간접세도 재화, 수출입품 그리고 연방정부 재산에 대해 과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재정관계는 과세권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결과 주정부는 간접세 및 연방정부의 보조금(Grant)에 재정을 의존하였고, 세수 확보를 위해 비효율적인 세목을 통해 재정조달을 도모하였다.

이런 이유로 연방정부는 그들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것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이는 반면 주정부는 항상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수직적 재정불균형(vertical fiscal imbalance)이라고 부른다. 그 결과 주정부의 세입은 지출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연방정부의 세입은 운영과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GST를 도입하면서 그 세수입을 전액 주정부에 배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에 제공되던 다른 보조금(Financial Assistance Grants)은 폐지되었다.

25) 주정부 관할 존속 세제로는 급여세, 토지세, 주거용 주택 취득세 등이 있다.

〈표 3-1-1〉 GST 도입에 따라 폐지된 간접세

연방정부 (1가지)	도매거래세(Wholesale sales tax)
주정부 (9가지)	숙박세(Bed tax: 숙박비에 부과하는 세금) 금융기관세(Financial institution duty: 은행거래관련세금) ¹⁾ 인지세(Stamp duty: 유가증권거래) 은행이용세(Bank account debits tax) ²⁾ 부동산양도수속관련세금(conveyancing duty) 사업관련인지세(Business stamp duty: 대출계약, 할부구매계약, 월세계약, 리스, 양도증서, 수표, 약속어음 등)

- 주: 1) 금융기관 계좌에의 입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정부 세목으로 세율은 각 주의 규정에 따
 림.
 2) 금융기관세와 마찬가지로 주세이며 수표인출 기능을 갖는 계좌로부터의 인출액 전체에 대
 해서 부과됨.

자료: 호주국세청(<http://www.ato.gov.au>)

GST 세수입이 주정부에 배분되므로 GST 세율의 변경은 주정부의 의사를 반영하
 여 이루어진다. 즉, 모든 주정부가 만장일치로 GST 세율 변경을 연방정부에 요청하고
 연방정부가 이를 승인한 뒤 연방의회 상·하 양원을 통과해야 한다.

2. 납세의무자

GST는 2000년 7월 1일부터 호주 내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
 하여 생산자 또는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
 으로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품류, 교육, 의료서비
 스 등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 생산자나 중간 공급업자는 판매 시에 징수한
 GST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생산과 판매를 위해 투입된 비용과 관련해서 부담한
 GST는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공급자 또는 과세공급을 의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
 여 등록하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자이다. 즉,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하
 고자 하는 자로서 개인과 기업·법인격 없는 단체·법인·기타의 단체를 포괄한다.

호주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7만 5천달러 이상인 사업자 또는 15만달러 이상인 비 영리 단체는 반드시 GST 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후 21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누락하였을 경우에는 GST 세목에 해당되지 않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해당일로부터의 모든 매출액에 대해서 GST를 부과한다. 등록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의로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12개월 동안만 등록이 허용된다.

GST 등록에는 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신청도 포함이 된다. ABN은 모든 사업자들이 반드시 정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할 사업자 고유 번호로서 세무당국과 모든 정부기관의 세무 및 행정상 필요한 납세자 ID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ABN이 없을 경우에는 각종 공제 및 GST 환급이 불가능하다.

3. 과세거래

과세대상 거래에는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이 포함되며, 그 외에도 대가를 창출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가 포함된다. 과세대상 거래에 포함되는 사례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품 및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이라고 하여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금전적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와 공급자와 수령인이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개인, 각종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일련의 활동이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연방법 또는 지역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집단일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호주와 관련된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는 GST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호주로 수입되는 상품과 호주에서 조립된 상품도 포함되며 호주 내의 모든 부동산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 외에도 호주 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수입품이 GST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세율의 적용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각종 세금을 포함한 금액에 10%의 단일세율을 부과한다. 영세율 및 면세 규정은 국내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화폐의 경우에는

호주로 유입되는 경우에 GST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입품에 대한 GST 환급은 기업 활동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활동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환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와 면세대상인 상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에 대해서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GST(Input GST)를 판매 시에 징수하는 GST(Output GST)에서 차감하며 그 차액만큼만 호주 국세청에 납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매입을 포함한 매입 시 부담하는 GST를 거의 대부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접대비 등과 같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매입 시 부담한 GST를 차감할 수 없다.

4. 과세표준과 세율

GST의 등록사업자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매출총액에 대해서 GST를 납부해야 한다. 즉, 면세·영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매출이 과세표준이 된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GST를 지불하지만, 호주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의 각 매매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GST를 징수한다.

세율은 1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면세나 영세율 적용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의 매 거래단계마다 GST가 과세된다.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GST가 적용되는데 이때의 GST는 수입품의 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가격(CIF)을 기초로 산출한다.

5. 영세율·면세제도

가. 영세율 제도(GST-free sales)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영(0)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 제도는 해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시에 소비

자로부터 GST를 징수하지 않지만, 매입 시 부담한 GST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등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이유로 부가가치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면세제도를 활용하는 데 비해 호주에서는 면세보다 영세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호주의 영세율 제도 적용대상 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수출

(ii) 건강·의료 관련 : 대부분의 의료용역

- 개업의사나 병리학자가 제공하는 용역
- 물리치료사, 자연요법사, 간호사, 검안사 등 건강관리사들이 제공하는 용역
- 병원에서의 치료
- 거주보호, 사회적 보호(community care), 장애인 전문가 제공 용역
- 의료보호기구
- 의약품, 건강상품
- 건강보험

(iii) 교육 및 보육 : 대부분의 교육 용역

- 교육과정
-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특정 교재, 임대하여 사용하는 상품, 견학여행 등
- 특정 학생숙박시설
- 직업강좌
- 승인된 보육서비스

(iv) 음식물

- 인간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음식물
- 식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
- 조리된(hot) 테이크아웃 음식
- 조리된 식사 또는 기타 조리된 음식
- 제빵
- 과자류, 스낵, 아이스크림, 비스킷 등
- 주류, 대부분의 청량음료, 기타 다른 음료수

- (v) 자선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 (vi) 국제운송 및 여행 : 일반적으로 국내 여행은 과세대상임
- (vii) 기타
 - 사업이 지속되는 기업의 매각
 - 왕실소유지의 불하
 - 특정 농지의 매각
 - 특정 귀금속 거래
 - 상·하수도, 배수시설
 - 장애인용 차량

나. 면세제도(Input-tax supplies)

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자의 GST를 면제하는 것이다.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GST를 징수하지 않으며, 매입 시 부담한 GST를 환급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매입세액만 납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주에서는 면세거래를 매입세액 납부거래(input tax supplies)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면세제도를 생필품,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비해 호주에서는 이런 목적의 지원은 영세율 제도를 통해서 하고 면세제도는 금융용역의 제공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용자, 화폐의 거래, 증권의 발행 등 금융용역
- 민간 주택의 임대
- 주택의 판매
- 학교 구내식당에서의 음식물 공급
- 특정 귀금속의 거래

다. GST 그룹(GST Group)

GST 면세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 중에서 특기할 만한 제도로 GST 그룹 제도를 들 수 있다. GST 그룹 제도는 특정 집단에 속한 관계 기업, 신탁, 개인, 파트너십, 비영리단체, 그리고 정부단체를 GSP 과세목적상 하나의 납세자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Div 48). GST 그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주체들이 GST 그룹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주체들 중 어느 하나를 구성원을 대표하는 납세신고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GST 그룹의 구성원은 각각 GST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과세연도와 회계 기준이 다른 구성원과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각 구성원이 소유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구성원이 기업인 경우에는 그룹 내 각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함께 '90% 지분 소유 그룹'에 포함되어야 한다. 90% 지분 소유 그룹이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는 경우 또는 제3의 기업이 다른 두 기업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GST 그룹이 되면 그 그룹은 하나의 주체로 간주되므로 그룹 내에서의 거래는 GST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공급 기업이 GST 그룹 내 기업이면 그 공급에 대해서 GST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급 기업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공급에 대해서는 GST를 납부하여야 한다. GST 그룹은 대표기업이 그룹 외부로의 모든 공급에 대하여 GST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룹 외부로부터의 모든 구매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을 계산할 때는 그룹 구성원이 각자 GST를 납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처럼 처리한다(ITAA97 s 17-20; 27-25).

6. 부가가치세 행정

가. GST 사업자 등록

개인, 기업 또는 기타 단체로 GST 관련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GST 사업자

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1년간 매출액이 일정한도(7만 5천달러, 비영리단체의 경우 1만 5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와 같이 매입에 관련된 GST는 부담하여야 하나, 판매분에 대하여는 GST를 징수할 수 없다.

GST를 납부하거나 환급받기 위해서는 ABN이 있어야 하며, GST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 호주 비거주자가 호주와 사업거래를 하려면 호주 거주자를 에이전트로 선임하여 GST 처리를 하면 된다.

나. 신고서 작성 및 세금의 납부

연간 매출액이 2천만호주달러 이상인 등록 사업자 또는 회계연도를 세무연도로 하고 있는 등록 사업자는 매월 GST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연간 매출액이 7만 5천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월별 신고납부와 분기별 신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7만 5천달러 이하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15만달러 이하의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월별, 분기별, 연별 신고납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Option 1 : 다음 항목별로 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뒤 온라인으로 납부한다.

- 판매단계에서의 GST
- 구매단계에서의 GST
- 총매출액
- 수출
- 면세대상
- 자본구매, 비자본구매

Option 2 : 다음의 세 가지 항목에 맞게 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뒤 납부한다.

- 판매단계에서의 GST
- 구매단계에서의 GST
- 총매출액

Option 3 :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연도별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한다.

- 매출총액이 200만달러 미만의 소규모 법인 또는 매출액이 200만달러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 기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 BAS)를 월별로 제출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지난 2분기 또는 지난 4개월간 매달 BAS를 제출한 경우
- 이전의 BAS를 빠짐없이 제출한 경우
- 이전 연도에 GST를 다시 환급받지 않은 경우

일단 Option 3을 선택하여 GST를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남은 회계연도에서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GST 납부가 끝난 뒤에 환급이 가능하다.

〈표 3-1-2〉 기업 규모별 GST 신고납부 주기

보고 기간	GST 매출액		
	7만 5천달러 이하 (비영리단체 1만 5천달러 이하)	7만 5천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	2천만달러 이상
월	가능	가능	가능
분기	가능	가능	불가능
연	가능	불가능	불가능

매월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기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와 세액을 매월 말일이 지나고 2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표 3-I-3〉에 나타난 다음의 기한에 따라서 제출 및 납부한다. 연간 신고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추어 신고하면 되며, 소득세 신고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2월 28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사업자가 환급을 요구할 경우 호주 국세청은 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환급을 해주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환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환급을 신고하

는 사업자는 호주 국세청에 납부할 다른 종류의 세금(법인세, FBT 등)과 상계할 수 있다.

〈표 3-1-3〉 분기별 GST 신고기한

분기	기한
9월(7, 8, 9월분)	10월 28일까지
12월(10, 11, 12월분)	2월 28일까지
3월(1, 2, 3월분)	4월 28일까지
6월(4, 5, 6월분)	7월 28일까지

다. 세금 계산서

GST가 포함된 가격이 82.50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환급이 가능하다. 호주는 세금계산서의 서식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급일로부터 28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ABN)와 GST가 포함된 판매가격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판매가격에 따라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상이하다. 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Tax invoice)'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하며, 그 외에 판매가격이 1천달러 미만의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판매자의 이름
-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ABN)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판매된 재화 및 서비스명
- GST를 포함한 해당 상품의 가격
- GST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

판매가격이 1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판매자의 이름
-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ABN)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구매자의 이름
- 구매자의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ABN)
- 판매된 재화 및 서비스명
- 각 재화 및 서비스의 개별가격과 개별가격에 부과되는 GST
- GST를 포함한 해당 상품의 가격
- GST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

라. 매입세액 환급

GST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업활동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의 신고를 통해서 GST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면세 대상이거나 소득세액 공제와 같이 다른 항목에서 공제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생산을 위해서 구매한 금액을 포함하여 GST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GST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사업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거나 혹은 일부 사업적 목적을 위해서 구매한 재화의 경우
- GST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하였을 경우
- 타인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사업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도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GST 300달러를 포함하여 3,300달러에 컴퓨터를 구매한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60%를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40%를 사용할 경우 환급액은 GST 매입세액 300달러의 60%인 180달러가 된다. 원래의 목적과 사용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추후에 조정을 통해서 환급 변경을 해야 한다. 연간 매출액 2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용도에 따른 비율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이때 연간 총 GST 세액에서 해당되는 비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차량도 업무용 차량이면 GST 환급이 가능한데, 고급승용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고급차량 과세 최저점(tax threshold)의 11분의 1 만큼 환급이 가능하다. 고급승용차의 과세최저점은 2009/10 회계연도 기준으로 5만 7,180달러이며, 연료효율이 높은 차량(fuel efficient car)은 7만 5천달러이다.

그러나 면세품목(input taxed)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나 면세품목(input taxed)을 구입한 경우,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GST 환급을 받을 수 없다.

Ⅱ. 개별소비세

1. 주류에 대한 소비세

소비세(Excise Tax)는 호주 내에서 제조, 생산된 특정 재화에 대해 부과된다. 부과 대상 품목으로는 주류, 담배, 석유 관련 제품들이 포함된다. 이 중 주류에 대한 세금을 보면, 맥주, 주정(酒精) 및 기타 알코올 음료에 대해 <표 3-Ⅱ-1>에 정리된 바와 같은 소비세가 부과된다. 주류와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정량세로서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반영하여 한해에 두 번(2월과 8월) 조정할 수 있다.

<표 3-Ⅱ-1> 주류 관련 소비세(2010/11년)

(단위: 달러/리터)

과세대상	종량세액		
맥주	알코올함량 3% 이하	용기가 48ℓ 이하	36.31
		용기가 48ℓ 초과	7.25
	알코올함량 3% 초과~3.5% 이하	용기가 48ℓ 이하	42.31
		용기가 48ℓ 초과	22.76
	알코올함량 3.5% 초과	용기가 48ℓ 이하	42.31
		용기가 48ℓ 초과	29.78
	알코올함량 3% 미만	비상업목적의 시설에서 생산	2.55
	알코올함량 3% 미만	비상업목적의 시설에서 생산	2.55
	브랜드		65.93
	증류주(면세대상이 아닌 것)		70.61
기타 알코올 음료		70.61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 Internet Home Page, 2 August 2010.

주류에 대한 소비세 세율을 보면 맥주의 경우 알코올 함량과 판매용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용기가 48ℓ 이하인 경우 알코올 함량이 3% 이하이면 2010년 8월 기준 세율이 36.31달러/ℓ이고 3%를 초과하면 42.31달러/ℓ이다. 용기가 48ℓ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알코올 함량이 3% 이하인 경우 7.25달러/ℓ, 3~3.5% 22.76달러/ℓ, 3.5% 초과 29.78달러/ℓ이다. 대형 용기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판매 목적의 주류 구입과 자가 소비 목적의 구입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상업용 시설에서 또는 비상업용 목적으로 알코올 함유량 3% 미만의 맥주를 생산한 경우에는 리터당 2.55달러의 세율이 적용된다. 브랜드에는 리터당 66.92달러의 세금이 부과되고, 증류주 및 기타 알코올 음료에 대해서는 71.67달러/ℓ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가양조(home-brewed)된 맥주와 알코올 함유 음료 중 포도주(wine)는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포도주에 대해서는 WET(wine equalisation tax)라는 일종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그 세율은 29%이다.

2. 담배에 대한 소비세

호주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2010년 8월 기준 한 개피당 0.33267달러로 담배 1갑(20개피)에 부과되는 세금은 6.6534달러이다. 이는 개피당 실제 담배의 무게가 0.8그램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그 외 담배는 킬로그램당 415.86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호주 정부는 2010년 4월 30일부터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소비세를 25% 인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50억달러 세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의료시스템 개혁에 투자할 계획이다.

〈표 3-11-2〉 담배소비세

(단위: 달러)

과세대상	중량세액
개피당 담배 무게 0.8g 미만	0.33267/개피(stick)
기타담배제품	415.86/kg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 Internet Home Page, 2 August 2010.

3. 유류관련 소비세

휘발유, 등유, 중유, 디젤 등 유류에 대한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항공기용 휘발유와 등유는 리터당 세율이 0.03556달러로 다른 품목에 비해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② 그 외 대부분의 연료에는 리터당 0.38143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③ 윤활유(lubricant)와 유압유(hydraulic fluids), 브레이크 오일 등에도 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킬로그램당 0.05449달러이다.

〈표 3-11-3〉 유류관련 소비세

과세대상	종량세액
항공기용 휘발유, 등유	0.03556달러/ℓ
항공기용을 제외한 휘발유, 등유, 중유, 디젤, 바이오디젤 등	0.38143달러/ℓ
각종 윤활유 및 유압유	0.05449달러/kg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 Internet Home Page, 2 August 2010.

4. 와인균등세

와인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 WET)는 와인의 마지막 도매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서 보통 도매판매자가 소매판매자에게 와인을 판매할 때 부과된다. 만약에 호주 내에서 소비되는 와인을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수입한 것을 도매로 판매할 경우에는 WET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WET가 과세되는 제품은 알코올 함유량이 1.15% 이상 되는 주류로서 다음과 같다.

- 발포주(sparkling wine)와 강화와인(fortified wine)을 포함한 포도주
- 포도주 관련 제품군
- 과일과 식물류 원료의 와인
- 사과주(cider), 배주(perry), 벌꿀주(mead), 사케(sake)

〈표 3-Ⅱ-4〉 WET와 GST의 계산사례

매매내용	가격 / 세금
제조업자가 제조한 1박스(12병)의 가격	120.00달러
WET 부과 29% (120달러 × 29/100)	34.80달러
계	154.80달러
GST 부과 10% (154.80달러 × 10/100)	15.48달러
총 도매판매가격	170.28달러

WET는 보통 와인 제조업자, 수출업자, 도매업자들에게 부과되며 소매업자에게는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 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상품의 구매가격에 WET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원가의 일부분인 WET를 소매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에게 넘겨주는 형식을 띤다. WET의 세율은 29%로 도매판매자 또는 공급자의 판매금액에서 계산하게 된다. 이때 GST는 WET를 포함한 금액에 10%의 세율로 부가가 된다.

5. 고급자동차세

호주는 고가의 승용차에 대해 33%의 세율로 소비세인 고급승용차세(Luxury Car Tax: LCT)를 부과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승용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2009/10년에 5만 7,180달러이며, GST를 포함한 자동차 가격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승용차를 거래할 때 LCT를 부과한다. 연료절약형 자동차(Fuel-efficient cars)는 GST를 포함한 가격 7만 5천달러가 고급승용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2010/11년에는 이 기준이 각각 5만 7,466달러와 7만 5,375달러가 된다. GST에 등록된 사업자인 소매업자, 도매업자, 제조업자 등이 고급승용차를 판매하거나 수입할 때 세금이 부과되며, 고급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구매자일지라도 LCT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산업 생산자의 경우에는 차량 1대에 대해 매년 3천달러까지 LCT 환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행사업자는 고급승용차 전체에 대해 총 3천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Ⅲ. 지방세

1. 급여세(Payroll Tax)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연금, 실업급여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재원은 정부의 세입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고용주도 종업원도 따로 사회보장기여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각 주의 주정부는 사회보장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와 임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상당의 급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각 주마다 다양한 감면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단일 또는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급여세는 사용자가 피고용인 또는 피고용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에 과세하는 주세(State tax)이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란 'Payroll Tax Act 2007'에 규정되어 있는데, 매우 폭넓게 정의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괄한다. 임금(wage); 보수(remuneration); 봉급(salary); 위탁수수료(commissions); 보너스(bonuses); 세전의 연금 수혜금; 각종 수당(allowance); 고용자에게 대가성으로 지급되는 각종 현금혜택; 비현금성 급여(퀵랜드 주).

급여세는 주정부 세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이며, 고용주가 각 주에서 규정하는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한도액은 각 주마다 다르며 그 세율은 5~12%에 이른다. 연방정부는 1971년에 급여세의 징수를 주·특별지역 정부에 위임했는데, 그 후 각 주별로 면세 한도, 세율 및 급여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다. 급여세에 대한 면세 항목 역시 각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원주민 : 주 또는 지방정부에서 승인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 면세
- 주거수당 : 매 연도마다 규정으로 정해진 수당의 총합계 이내에서 면세
- 입양휴가 : 입양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된 수당 및 현금성 급여에 대해서 면세(최대

14주까지)

- 출산휴가 : 출산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된 수당 및 현금성 급여에 대해서 면세(최대 14주까지)
- 배당금 : 과세대상이 아닌 투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 면세
- 투자이자 : 과세대상이 아닌 투자에 대한 이자는 면세
- 교통수당(자가 차량) : 매연도마다 규정으로 정해진 수당의 총합계 이내에서 적용되며, 업무용으로 이용한 자가 차량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면세(내부규정으로 거리 또는 수당의 한도 제한이 있어야 함)
- 군인휴가 : 군인들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된 수당 및 현금성 급여에 대해서 면세
- 자원봉사 : 2006년도 11월 1일부터 화재 또는 비상사태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들은 직장에 결근한 기간 동안에 지급된 수당 및 현금성 급여에 대해서 면세
- 자발적 정리해고(Bona fide redundancy) 또는 조기 은퇴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면세
- 근로자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면세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수당은 과세대상이지만, 직장과 자택의 거리가 멀어서 수당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해서 면세
 - 교통수당의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75센트 주거수당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에서 1박당 227.35달러까지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 면세

2010년 7월 1일에 시작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각 주별 세율 및 연간 임금 최저한은 <표 3-Ⅲ-1>과 같다.

고용주나 기업에서 월간 임금 최저한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일정 기한까지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세는 고용주의 소득 계산상 손금 산입 항목이다. 신고기한은 월간 임금최저한을 초과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연말신고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매해 7월 2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표 3-III-1〉 각 주별 급여세 세율

(단위: %, 호주달러)

지역	기간	세율	월간 임금 최저한	연간 임금 최저한
NSW ¹⁾	2010. 7. 1~2010. 12. 31	5.50	55,885	658,000
VIC	2010. 7. 1~현재	4.90	45,833	550,000
QLD	2010. 7. 1~2011. 6. 30	4.75	83,333	1,000,000
SA	2010. 7. 1~현재	4.95	50,000	600,000
WA	2003. 7. 1~현재	5.50	62,500	750,000
Tasmania	2010. 7. 1~현재	6.10	19,423	1,010,000
ACT	2008. 7. 1~2011. 6. 30	6.85	125,000	1,500,000
NT	2010. 7. 1 ~ 현재	5.90	104,167	1,250,000

주: 1) NSW의 2011. 1. 1 ~ 2011. 6. 30 세율은 5.45%로 낮아질 예정

NSW의 월간최저한은 31일 기준이며, 30일 5만 4,082달러, 28일 5만 477달러

자료: 각 주의 Revenue Office.

2. 토지세(land tax)

각 주와 특별지구는 특정일 현재(통상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토지의 가치 및 면적이 일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토지세를 부과한다. 토지세는 소득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에는 자가주거용 및 경작용이 아닌 대부분의 부동산이 포함되며, 다음에 열거한 부동산들이 이에 해당된다.

- 유희농지(vacant rural land)를 포함한 공터(vacant land)
- 단독주택 · 아파트 · 타운하우스 등 주거용 건물이 지어진 대지
- 주말별장/휴양지주택(holiday house)
- 주식매입형태와 유사한 과거 아파트소유권인 컴패니타이틀유닛(company title units)
- 주차공간을 포함한 주거용 · 상업용 · 사업용 유닛

- 상업용 부동산(공장, 상점, 창고 등)
- 주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임대한 토지

과세대상의 토지를 한 구획 이상 소유한 소유자는 토지세를 납세할 의무를 지닌다. 여기에는 토지 단독 소유자, 토지 공동 소유자, 법인, 트러스트의 수탁자 및 수익자, 면세대상이 아닌 토지를 소유한 사회단체 및 기구, 연금의 수탁자(superannuation)가 모두 포함된다. 공동소유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자들이 소유한 토지만큼 신고하여 토지세를 납부한다.

특정의 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납세자의 주된 자가 거주용 주택(principal residence)은 면세된다²⁶⁾. 1차 생산물 경작용 토지도 과세가 면제되며,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업용 및 투자용 부동산은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면세 조항의 적용은 각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 NSW 주를 예로 들면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토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유주(자가) 주거용 부동산(principal place of residence)
-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는 농목축생산용 토지(land used for primary production)
- 노인전용주택(retirement villages)과 노인보호시설(aged care) 및 양로원(nursing homes)
- 허가받은 하숙집(boarding houses)
- 카라반파크(caravan parks)
- 종교기관 및 (비영리) 자선단체

대부분의 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요 면세대상인 자가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주거용(owner-occupied) 부동산 소유주는 토지세 면세 대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보유 토지가치와 상관없이 면세혜택을 받는다. 18세 미만의 미성년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세대별로 한 채의 주택을 자가주거용 부동산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가주거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유주 본

26) 통상 납세자의 주된 거주지는 면세되지만 빅토리아 및 타스메니아에서는 과세하고 있다.

인이 주거지로 사용(used)하고 거주(occupied)해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의 대지 면적이나 지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소한 한 명의 소유주가 주거지로 사용하고 거주해야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 거주기간은 해당 과세연도 1년 전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주거용도(residential purpose)로 거주해야 한다. 2010년의 경우 2009년 7월 1일부터 거주해야 한다. 주택의 일부를 홈오피스로 비즈니스를 한 경우도 대부분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나 부동산이 법인(company) 명의 또는 개인과 법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경우 면세신청이 불가능하다. 재산관리 성격의 수탁법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도 대체로 면세 신청이 가능하다.

자가주거용도의 새 집을 지을 계획으로 거주자가 없는(unoccupied) 토지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현재 자택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빈 땅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 후 2년 동안 면세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세입자)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산 경우는 세입자의 거주가 종료된 시점이나 본래의 목적인 자가주거용 새 집을 신축하는 건축공사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2년의 회계년도(tax years) 동안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2년 유예기간은 부득이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면세 신청자는 현재의 자택 외에 국내외 어느 곳에도 자가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해당 부동산에서 어떠한 임대 소득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완공 후 최소한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부대조건이 붙는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모든 면세유예기간이 취소된다.

〈표 3-III-2〉 각 주별 토지세 세율

(단위: 호주달러)

지역	하한기준	납부세액
뉴 사우스 웨일즈	376,000 미만	0%
	376,000~2,298,999	100 + 1.6%
	2,299,000 이상	2%의 할증세율로 부과
빅토리아	250,000 미만	0%
	250,000~599,999	275 + 25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0.2%
	600,000~999,999	975 + 6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0.5%
	1,000,000~1,799,999	2,975 + 1,0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0.8%
	1,800,000~2,999,999	9,375 + 1,8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1.3%
	3,000,000 이상	24,975 + 3,000,000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2.25%
퀸즐랜드	600,000 미만	0%
	600,000~999,999	500 + 6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1%
	1,000,000~2,999,999	4,500 + 1,0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1.65%
	3,000,000~4,999,999	37,500 + 3,0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1.25%
	5,000,000 이상	62,500 + 5,0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1.75%
남부 호주	300,000 미만	0%
	300,001~550,000	3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0.5%
	550,001~800,000	1,250 + 55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1.65%
	800,001~1,000,000	5,375 + 8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2.40%
	1,000,000 초과	10,175 + 1,0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3.70%
서호주	300,000 미만	0%
	300,000~999,999	3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0.09%
	1,000,000~2,199,999	630 + 1,0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0.47%
	2,200,000~5,499,999	6,270 + 2,2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1.22%
	5,500,000~10,999,999	46,530 + 5,5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1.46%
11,000,000 이상	126,830 + 11,00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2.16%	
테즈메이니아	25,000 미만	0%
	50,000~349,999	50 + 25,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0.55%
	350,000~749,999	1,837.50 + 350,000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1.5%
	750,000 이상	
수도 특별구	75,000 이하	토지 가치의 0.6%
	75,001~150,000	토지 가치의 0.89%
	150,001~275,000	토지 가치의 1.15%
	275,000 초과	토지 가치의 1.40%
노던 테리토리		토지세 없음

또한 카운슬(council) 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매입 토지나 부동산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경우와 해당 토지와 이웃한 두 개 필지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세는 매년 주정부가 토지세 납부 하한기준(threshold)을 발표하며 이에 따라 조정된다. 2010년 하한기준은 37만 6천달러이다.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당기 회계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가격 인상을 고려하여 하한기준(threshold)을 산정한다. 주정부 재무부에서 토지의 감정평가를 발급하면 이를 기준으로 토지세가 산정된다. 감정평가는 토지감정법(Valuation of Land Act 1916)에 근거하여 감정국(Valuer-General)에서 매년 실시한다. 토지세의 세율은 각 주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주정부는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매년 2% 내지 3%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아래 표는 토지세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어떤 주에서는 비과세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3. 인지세(Stamp Duty)

인지세란登記(title search)의 소유주 변동이 있거나 소유주가 새로 생겼을 경우 문서에 대한 승인 시 납부하는 주정부 세금이다. 각 주 및 중주(또는 특별지구)는 일정한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의 폭은 각 중주나 거래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주정부별로 상이하다(〈표 3-Ⅲ-3〉 참조). 그러나 각종 인지세는 그 과세기반이 협소함에 따라 종류를 늘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각 주마다 세금의 유형, 세율, 대상 등이 각기 달라 인지세로 인해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 많은 기업들이 해당 세금이 없는 다른 주나 해외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등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30만달러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각 주의 인지세를 보면 퀸즐랜드가 8,975달러로 가장 적고 빅토리아 주가 1만 3,600달러로 가장 많아 최대치가 최저치의 1.5배를 넘는다(〈표 3-Ⅲ-4〉 참조).

〈표 3-III-3〉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각 주의 인지세

(단위: 호주달러)

지역	주택의 시가	인지세 산식
뉴 사우스 웨일즈	14,000 이하	1.25% × 주택의 시가
	14,001~30,000	175 + 1.5% × 주택의 시가
	30,001~80,000	415 + 1.75% × 주택의 시가
	80,001~300,000	1,290 + 3.5% × 주택의 시가
	300,001~1 million	8,990 + 4.5% × 주택의 시가
	1 million 초과	40,490 + 5.5% × 주택의 시가
빅토리아	20,000 이하	1.4% × 주택의 시가
	20,001~115,000	280 + 2.4% × 주택의 시가
	115,001~870,000	2,560 + 6% × 주택의 시가
	870,000 초과	5.5% × 주택의 시가
퀸즐랜드	20,000 이하	1.5% × 주택의 시가
	20,001~50,000	300 + 2.25% × 주택의 시가
	50,001~100,000	975 + 2.75% × 주택의 시가
	100,001~250,000	2,350 + 3.25% × 주택의 시가
	250,001~500,000	7,225 + 3.5% × 주택의 시가
	500,000 초과	15,975 + 3.75% × 주택의 시가
남부 호주	12,000 이하	1% × 주택의 시가
	12,001~30,000	120 + 2% × 주택의 시가
	30,001~50,000	480 + 3% × 주택의 시가
	50,001~100,000	1,080 + 3.5% × 주택의 시가
	100,001~200,000	2,830 + 4% × 주택의 시가
	200,001~250,000	6,830 + 4.25% × 주택의 시가
	250,001~300,000	8,955 + 4.75% × 주택의 시가
300,001~500,000	11,330 + 5% × 주택의 시가	
	500,000 초과	21,330 + 5.5% × 주택의 시가
서호주	80,000 이하	2% × 주택의 시가
	80,001~100,000	16,000 + 3% × 주택의 시가
	100,001~250,000	22,000 + 4% × 주택의 시가
	250,001~500,000	82,000 + 5% × 주택의 시가
	500,000 초과	20,700 + 5.4% × 주택의 시가
태즈메이니아	1,300 이하	20
	1,301~10,000	1.5% × 주택의 시가
	10,001~30,000	150 + 2% × 주택의 시가
	30,001~75,000	550 + 2.5% × 주택의 시가
	75,001~150,000	1,675 + 3% × 주택의 시가
	150,001~225,000	3,925 + 3.5% × 주택의 시가
	225,000 초과	6,550 + 4% × 주택의 시가
수도 특별구	100,000 이하	2% × 주택의 시가
	100,001~200,000	2,000 + 3.5% × 주택의 시가
	200,001~300,000	5,500 + 4% × 주택의 시가
	300,001~500,000	9,500 + 5.5% × 주택의 시가
	500,001~1 million	20,500 + 5.75% × 주택의 시가
	1 million 초과	49,250 + 6.75% × 주택의 시가
노던 테리토리	500,000 이하	$(0.065 \times V^2) + 21 \times V$, $V=(\text{주택의 시가})/1000$
	500,000 초과	5.4% × 주택의 시가

자료: 각 주의 Revenue Office Homepage

〈표 3-III-4〉 30만달러 주택 구입 시 주별 인지세 비교

(단위: 호주달러)

지역	인지세
뉴 사우스 웨일즈	8,990
빅토리아	13,660
퀸즐랜드	8,975
남부 호주	11,33
태즈메이니아	12,150
수도 특별구	9,500
노던 테리토리	10,700

〈표 3-III-5〉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각 주의 인지세

(단위: 호주달러)

지역	차량의 가치	인지세 산식
뉴 사우스 웨일즈	45,000 미만	$3\% \times \text{차량의 가치}$
	45,000 이상	$1,350 + 45,000\text{초과 금액} \times 5\%$
빅토리아	57,009 이하	$2.5\% \times \text{차량의 가치}$
	57,009 초과	$5.0\% \times \text{차량의 가치}$
퀸즐랜드	모든 차량	2.0%
남부 호주	1,000 이하	1.0% (단, 기본 인지세는 5달러)
	1,001~2,000	$10 + (1,000 \text{ 초과금액의 } 2\%)$
	2,001~3,000	$30 + (2,000 \text{ 초과금액의 } 3\%)$
	3,000 초과	$60 + (3,000 \text{ 초과금액의 } 4\%)$
태즈메이니아	600 이하	20
	601~35,000	$3\% \times \text{차량의 가치}$
	35,001~40,000	$1,050 + (35,000 \text{ 초과금액의 } 11\%)$
	40,000 초과	$4\% \times \text{차량의 가치}$

인지세는 통상 잔금결제일로부터 통상 1주일 전에 납부하게 되는데,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는 계약의 조건(FIRB 인가 등)이 모두 성취된 때로부

터 30일 내에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세무서로부터 세액 통지를 받으면 그로부터 다시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지세는 잔금 결제 전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잔금 결제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인지세액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당사자가 문서의 종류에 따라 인지를 구입해 붙이는 방식과 세무당국이 인지세액을 평가해 납부한 후 문서에 날인하는 방식이 있다.

4. 카운슬 레이트(Council Rate)

카운슬 레이트는 기초자치단체인 구(council)에서 부과하는 유일한 지방세로서 해당 구청에 매년 건축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토지의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시청에서 오물수거비, 하수도 및 도로사용비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주에게 분기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주거용 부동산(단독주택 기준)에는 연평균 800~1,200달러 정도 부과된다. 상업용은 주거용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뉴사우스웨일스의 지방정부 사례를 보면, 카운슬 레이트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수입 원으로서 세금은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감정평가국(Valuer-General)이 평가한 토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는 지방의회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결정한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들은 카운슬 레이트에 추가하여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에 대한 호주 쓰레기 관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8월 3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다음의 일정에 따라 4분기로 나누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첫 번째 분할 납부 - 8월 31일
- 두 번째 분할 납부 - 11월 30일
- 세 번째 분할 납부 - 2월 28일
- 네 번째 분할 납부 - 5월 31일

해당 납부일이나 그 전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이자가 부과된다.

제4편 국세행정 및 절차

I. 세금의 납부 및 징수

1. 세금 납부기한

납세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납부 기한은 (i) 소득세 신고기한 만료 후 21일 이내와 (ii) 평가가 종료된 이후 21일 이내의 두 기간 중 늦은 기간이 납세기한이 된다(ITAA36 s 204(1)). 여기서 21일은 최소의 기간을 규정한 것이며, 국세청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식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이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기한은 과세연도가 6월 30일에 종료되는 경우 다음 과세연도의 12월 1일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날짜 중 늦은 날짜가 납세기한이 된다.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세금은 호주달러로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세목 구분 없이 모든 세목에 대해 TAA sch 1 Pt 4~15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요 세목인 개인 및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각각 제2편의 개인소득세 행정을 설명하는 부분과 제3편의 부가가치세 행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원천징수세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어지는 원천징수세 징수에 대한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2. 활동보고서

GST 사업자는 간단한 사업활동 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s: BAS)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GST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

의 중간 예납에 대하여 IAS(Instalment Activity Statements)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BAS는 2001년 7월 1일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다양한 신고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BAS에는 GST는 물론 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의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부가급여세의 경우에는 아직도 별도로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이 GST 사업자에게 신고기한 전에 BAS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그것을 완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국세청은 BAS에 나타난 세금 관련 채권과 채무를 납세자별 계정인 RBA(Running Balance Account)에 기록한다. 납세자가 BAS에 신고해야 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시기에 자동전화를 통해서 간편하게 BAS 신고를 할 수 있다. BAS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 GST
- 와인균등세 및 고급자동차세
- 지급액으로부터 원천징수한 PAYG 원천징수액
- PAYG 분할납부
- FBT 분할납부
- 기업의 이연된 중간예납

PAYG의 경우 대규모 원천징수 의무자는 의무적으로 원천징수에 대해 전자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BAS에 원천징수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다.

IAS는 소득이 주로 신고대상 투자소득으로 구성된 납세자들이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인데, 신고대상 투자소득은 임대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말한다. 신고내용을 보면 해당 소득에 대한 PAYG 분할납부액, 지급액에 대한 PAYG 원천징수액, FBT 분할납부액, 기업의 중간예납이 포함된다. 신고액이 0인 경우에는 자동전화 신고가 가능하다. 어떤 납세자들은 BAS와 IAS를 모두 작성 보고하여야 하는데, 신탁을 통해 가족사업(family business)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납세자는 TAA Sch 1 s 388-50에 규정된 정해진 양식에 따라 활동보고서 즉, BAS와 IAS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기한은 신고대상 기간의 다음 달 21일까지이며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ITAA97 s 945-1(1)에 규정된 BAS 이연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기한이 연장된 분기별 신고가 허용되며, 이 경우 분기별 신고기한은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의 28일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1주일의 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즉, 3월 31일에 종료되는 분기의 경우에는 4월 28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고, 6월 30일에 종료되는 분기에 대해서는 7월 28일, 9월 31일에 종료되는 분기에 대해서는 10월 28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분기의 경우 크리스마스 휴가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을 더 연장한 2월 28일이 신고기한이 된다. GST 사업자로서 중규모 원천징수 의무자나 대규모 원천징수 의무자에 의해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는 경우와 연간 납세에 대한 분할납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보고서 신고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활동보고서의 일반적인 신고주기는 다음과 같다.

- GST
 - 연수입 2만달러 미만 : 분기별 신고
 - 연수입 2만달러 이상 : 월별 신고
- PAYG 원천징수
 - 연간 원천징수 의무금액 2만 5천달러 이하 : 분기별 신고(납세자가 월별 신고 선택 가능)
 - 연간 원천징수 의무금액이 2만 5천달러를 넘고 100만달러 이하 : 월별 신고
 - 연간 원천징수 의무 금액이 100만달러를 넘는 대규모 원천징수 의무자 : 원천징수 후 1주일 이내 전자신고
- PAYG 분할납부 : 분기(일정 기준 충족 시 연간 보고 선택 가능)
- FBT 분할납부 : 분기(전년도 FBT가 3천달러 미만인 경우 연간 신고)

3. 세액의 통보 및 세금의 납부

납세자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의 RBA에 활동 내역을 납부세액과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여 납부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즉, 납세자에게 조세채권이 발생한 경우 그것을

해당 납세자의 다른 조세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그렇게 상계되지 않는 부분은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른 조세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조세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않고 조세채권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일 내(14일)에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납부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어 조세채무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연간 세금신고 시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가산된다.

RBA는 세목별이 아니라 납세자별로 통합된 납세자별 납세의무와 납부세액을 정리한 계정으로서 여러 세목과 여러 개의 분리된 BAS에 대해 각각 분리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국세청에서 하나의 계좌를 통해 하나로 종합하여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TAA Pt II B(s 8AAZA에서 8AAZN까지).

RBA는 GST와 각종 원천징수세 등 다양한 세목에 대해 적용되는데, 벌금 등 법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나 파산절차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법인, 파트너십, 신탁 수혜자, 정치단체 등을 포함하여 개별 납세자에 대해 RBA를 설정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사업소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별로 별도의 RBA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전체의 세부담은 특정 사업의 관련 RBA를 종합하여 산정한다. 개인이 여러 개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각 신탁별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RBA를 설정할 수도 있다.

RBA에 나타난 조세채권을 다른 조세채무와 상계할 때 PAYG 원천징수 체계에서 발생한 채권(credit)은 HELP 강제상환금액을 상환하는 데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FS(Financial Supplement) 평가 채무를 상계한다. 그리고 나서 초과분이 있는 경우 RBA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조세부채와 상계한다(TAA s 8AAZLD).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세채권을 조세채무와 상환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 조세채무가 활동보고서 작성 대상 세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조세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아직 납부기한이 되지 않은 것
- 조세채무에 대한 분할상환계획을 제출한 경우

- 국세청장이 채무의 상환을 연기하는 데 동의한 경우

국세청장은 아직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활동보고서가 있는 경우 완료될 때까지 환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납세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다. 물론 수표나 전자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다.

II. PAYG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지급과 세율

원천징수는 금전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하여 그 금전을 수취하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PAYG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개인과 기업, 파트너십, 기타 단체가 모두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있다 (TAA sch 1 Pt 2~5).

금전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급을 원천징수 대상 지급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TAA sch 1 s 10-5(1)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 급여
- 이사의 보수
- 종교집단에 속한 개업자(개업의사, 변호사 등)에 대한 지급
- 개인의 용역에 대한 지급 : 개인에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그 지급액 중에 수취하는 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세율은 20% 또는 수취자의 분할납부세율(분할납부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진 지급
- 고용계약에 따른 급여
- 시행령에 명시된 것 : 주로 독립적 인적용역이 이에 해당됨
- 기업연금 소득(일시불 포함)
- 미사용 휴가 보상금
- 사회보장 급여 및 그와 유사한 지급
- 정부의 교육·훈련비 지급
- 질병·부상 등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금

- 투자소득의 지급으로서 지급자가 수취자의 납세자 번호(TFN)나 사업자번호 (ABN)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세율 46.5%
- Part VA에 해당하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득 : 구체적인 내용은 TAA sch 1 SubDiv 14-B에 규정 : 세율 46.5%
-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단위신탁 소득
-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서 지급자가 수취자의 사업자 번호를 제공하는 않는 경우 : 세율 46.5%
-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취한 이자, 배당, 사용료: 세율 배당 30%, 이자 10%, 사용료 30% 또는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
-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 세율 10%
- 호주를 항구적으로 떠나는 일시적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업연금의 지급 : 세율 35~45%
- 초과 비과세 회전금액(untaxed roll-over amount) : 비과세 회전금액이란 기업연금 혜택이 롤 오버되는 것으로서 기업연금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 세율 46.5%
- 외국 거주자 또는 외국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취하는 특정 지급 : (i) 이자, 배당, 사용료의 지급, (ii) 호주를 항구적으로 떠나는 일시적 거주자에 대한 연금, (iii) 천연자원 지급, (iv) 광산 지급을 제외한 지급액
 - 세율 : (i) 카지노 여행 운영 및 판매에 대한 지급은 3%, (ii) 스포츠 및 연예 활동에 대한 지급은 비거주자인 수취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 (iii) 건물, 공장 또는 시설물의 건축, 설치 및 개수 계약에 다른 지급은 5%
- 광산 지급 또는 천연자원 지급
 - 광산 지급 : 호주 원주민 토지에 있는 광산의 채굴권 발급 및 갱신에 대한 대가 지급, 세율 4%
 - 천연자원 지급 : 호주에서 생산되는 천연자원의 양이나 가치를 근거로 지급하는 금전, 세율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함

- 독립적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
- 비금전적 혜택
- 종업원 지주제에 따른 할인된 주식 또는 권리의 배분으로서 수취자의 납세자 번호나 사업자 번호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세율 46.5%

위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 대체로 개인에게 근로, 용역 등의 대가로 금전이나 비금전적 혜택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소득을 지급하면서 납세자 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비거주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목록에는 또한 원천징수 세율을 같이 정리하였는데, 세율을 병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액을 수취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율을 근거로 하여 정해진 누진적 원천징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세율의 개략적인 원칙을 정리해 보면 납세자 번호나 사업자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46.5%의 세율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다. 그 내용을 보면 배당은 30%인데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약에 정의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조약에 규정된 제한세율은 대체로 15%이다. 이자는 세율이 10%인데 조약에서도 대체로 10%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료는 법정 세율이 30%인데, 조약에서는 훨씬 낮은 세율로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 카지노 여행 운영 및 판매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3%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며, 건축 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연예·오락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수취자인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광산 관련 지급에 대해서는 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천연자원 관련 지급에 대한 세율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 외의 지급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취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을 근거로 정해진 누진적 원천징수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세청에 등록을 하고 정해진 납기 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년 연간 원천징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지급에 대해 정리한 요약보고서와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급액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연간 지급액과 원천징수 금액을 기재한 연간 지급요약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급액을 지급받은 자는 자신의 소득세 신고 시 지급받은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고, 기납부세액은 공제를 받는다.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원천징수 의무자로 구분하여 각각 원천징수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구분 기준과 각 규모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 납부 의무를 표로 정리하면 <표 4-II-1> 및 <표 4-II-2>와 같다.

대규모 원천징수 의무자는 1주일 단위로 전자납부를 하여야 하며, 중규모 원천징수 의무자는 월단위로 세금을 납부하되 납부 수단은 전자납부로 해도 되고 국세청이 인정하는 다른 지급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 소규모 원천징수 의무자는 전자납부나 기타 국세청이 인정하는 다른 수단으로 분기별 납부를 한다. 월별, 분기별 납부는 원천징수를 한 달/분기의 다음 달/분기의 2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GST 사업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활동 보고서(BAS)나 투자활동 보고서(IAS)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납세자는 해당 달/분기의 28일로 원천징수세 납부 기일이 연장되는데, 이들을 'BAS 이연납세자(deferred BAS payers)'라고 부른다.

〈표 4-Ⅱ-1〉 원천징수 의무자의 구분

구분	기준
대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6월에 대규모 원천징수 의무자 · 현월보다 2개월 이전에 종료된 전년도 원천징수액 100만달러 초과 · 현월보다 2개월 이전에 종료된 전년도에 원천징수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 집단의 일원 · 국세청장이 대규모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정한 자
중규모	대규모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7월에 중규모 원천징수 의무자 · 전년도 원천징수 세액이 2만 5천달러 초과 · 국세청장이 중규모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정한 자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원천징수 의무자는 아니나 원천징수 실적이 있는 자

〈표 4-Ⅱ-2〉 규모별 원천징수세 납부기일 및 납부수단

징수의무자	세금 납부 기일		납부 수단
대규모	원천징수일	납부기일	전자납부
	토·일요일	징수 후 두 번째 월요일	
	월·화요일	징수 후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징수 후 두 번째 화요일	
	목·금요일	징수 후 첫 번째 목요일	
중규모	징수한 다음 달의 21일 또는 28일		전자, 기타
소규모	징수한 다음 분기의 21일 또는 28일		전자, 기타

3. PAYG 분할납부(중간예납)

호주는 소득세와 의료 부담금, HELP 채무 상환금, 학생용자제도 채무 상환금, ABSTUDY 학생용자지원금 상환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세금, 부담금, 상환금을 분할납부(또는 예납)하도록 하는 PAYG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통상 한 분기가 지나면 그 분기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분

기별 납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소득의 분기별 편차가 심한 1차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와 작가, 예술가, 기타 특정전문가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3분기 말과 4분기 말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별 납부를 하지 않고 연간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TAA Sch 1 Pt 2~10, Div. 45).

분할납부 세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며, 분기별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가 정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분할납부 세율을 통보한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TAA s 45-15). 단, 사업 첫해에는 국세청장의 통보 없이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소득세의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은 광의의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으로서 분기 내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납부하기도 한다. 호주노령연금을 수취하는 연금소득자와 연금은 분할납부가 면제되며, 가장 최근의 과세평가액이 500달러 이하인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의 합계가 2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면제된다. 분할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매년 연간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기업과 기업연금기금의 경우 국세청이 계산한 분할납부세율이 0%이거나 세액이 250달러 미만인 경우, 대부분의 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의 합계가 100만달러 미만인 경우, GST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분할납부가 면제된다. 연결납세를 하는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기업 집단의 수준에서 모기업의 집단 전체의 분할납부를 담당한다.

분할납부를 해야 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기일까지 국세청이 인정한 양식에 따라 분할납부 대상 소득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추정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 보고 의무가 없다. 연간 과세 평가 시 분할납부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납세자는 첫 번째 분할납부 분기가 지난 이후에 연간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GST 등록 의무자가 아니거나 자발적으로 GST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가장 최근 연도의 납부 세액이 8천달러 미만인 경우

-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납세 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GST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 기일은 원칙적으로 앞서 분기별 원천징수세 납부기일과 마찬가지로 한 분기가 지난 다음 달 21일이 되며, 분기별로 BAS나 IAS를 제출해야 하는 BAS 이연납세자의 경우 같은 달 28일로 납부기일이 1주일 연장된다. 연간세무신고는 과세연도가 종료된 후 4번째 달의 21일이 신고기한이므로 6월 30일에 과세연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10월 21일이 신고기한이 된다. 분할납부에 적용되는 납부 수단은 대규모 납세자와 GST 등록자는 전자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Ⅲ. 평가와 조사

1. 서론

호주는 신고납부제를 원칙으로 하여 매년 납세자가 자신이 평가한 과세표준과 세금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신고서를 자세하게 분석하기 전에 신고서에 기재된, 입증되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과세평가를 하여 납세자의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정식 신고대상인 기업과 펀드의 경우에는 신고 자체를 평가로 간주하므로 국세청에서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세자는 신고서에 나타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평가 결과에 대해 국세청은 입수한 정보와 정보획득 권한에 따라 다양한 조사프로그램을 통해 조사를 한다.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 내용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장은 평가 결과를 경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2년 이내에 경정을 하여야 하고 과세문제가 복잡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경정하면 된다. 단, 사해행위나 탈세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정이 가능하다. 경정 후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 납세자는 법으로 정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진신고한 내용에 대한 납세자 자신의 경정도 허용된다.

세금의 납부기일은 개인납세자와 신탁의 수탁자의 경우 신고기일에 따라 납부기일이 결정되며, 기업이나 기타 정식신고 대상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중간예납(PAYG Installments)을 하고 연말에 연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정산을 하게 된다.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나빠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법에 정해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미납된 조세채권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산인이나 파산관리인, 사망한 납세자의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 또는 납세자를 대신해서 금전을 보유하는 제3자로부터

적절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들이 있다. 또한 체납징수를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세금을 체납한 회사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세부담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이에 속한다.

2. 평가

가. 최초 평가(original assessment)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국세청이 확보한 다른 정보를 종합하여 납세자별 과세소득과 납부해야 할 세액을 평가한다. 이 때 국세청은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이 평가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여 납세자가 그 통보를 받았을 때에 평가가 종료되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완료된다는 점에서 이 평가는 최종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신고납부제하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납세신고서는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자세하게 검토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은폐된 소득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조사 후 과소 신고가 발견되면 평가결과를 경정하게 된다(ITAA36 s 166).

납세자가 어떤 과세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적 예규나 구두 예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규를 요청하는 질의 내용을 신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 평가 결과가 나온 후에 평가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인 재검토나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평가결과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통보에 의해 납세자의 과세소득과 납부해야 할 세액, 면세가 있는 경우 면세여부가 확정된다(ITAA36 s 174). 국세청은 평가 결과를 납세자의 주소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우편 통보 시에는 우편물 발송 시 통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평가의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납세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서면으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후 3개월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평가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정식 신고(full assessment)

개인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국세청이 평가하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거치는 데 비해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제출하는 납세신고서가 평가결과로 간주되고 국세청에서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개인과는 달리 좀 더 많은 정보를 신고서에 답아야 하며, 이를 정식신고라고 한다. 정식신고는 법인에게 적용되는데, 이 때 법인에는 기업단위의 신탁, 기업단위의 신탁이 포함된다. 그리고 기업연금기금, ADF, PST도 정식 신고를 하여야 한다(ITAA36 s 166A).

다. 임의평가(default or arbitrary assessment)

임의평가(default assessment)란 신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국세청이 규칙에 따라 발행하는 평가로서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서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 발행한다(ITAA36 s 167). 미신고평가서 발행방법에 대해서는 Practice Statement PS LA 2007/24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임의평가에서 국세청은 제3자가 제공한 정보와 국세청 내·외부의 관련 정보, 간접 조사 방법을 통해 입수한 정보, 관련 경제통계자료 및 기타 과거의 정보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평가한다. 통상적으로 임의평가가 있을 때는 사전에 평가 예정 사실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판례에 따르면 임의평가 시 국세청이 과세소득을 모두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정당한 근거와 계산방식만 입증하면 된다. 그러므로 국세청에서 평가한 소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3. 조사와 정보접근 권한

가. 조사의 원칙

세무조사는 특정한 법률 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국세청이 세법(ITAA36 s 8)에 규정된 일반적인 행정책임하에 진행하면 된다(ITAA36 s 8). 국세청은 특정 집단에 대해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된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관리 중점분야(compliance priority area)를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009/10년의 중점분야는 부유한 개인 납세자, 이사의 보수(예, 종업원 지주제 등을 통한 보수의 지급), 세액공제 수혜 자격, 현금거래 분야, 투자상품 판매손실, 환급에서의 사해행위(조세지원의 남용 등), 고용주의 원천징수 및 기업연금 기여금, 피닉스 활동(pheonix activity)을 통한 조세회피²⁷⁾, 국제조세 회피 전략-특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경우와 이전가격 조작-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한 가지 세목에 국한하지 않고 소득세, GST, PAYG 원천징수, FBT, 기업연금 기여금 등 모든 세목과 관련 지출을 종합하여 조사한다.

국세청의 감사관은 매년 조사활동을 점검하여 개편안을 권고하는데, 2009/10년의 경우 국세청의 대기업 조사 종료와 관련된 관행에 대한 재검토와 중소기업의 납세의무 이행에 중점을 두는 관행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하였다.

나. 조사프로그램

조사 프로그램은 크게 기본조사(primary audits)와 사업체조사(business audits), 복합조사(complex audits), 그리고 특별조사(special audits)로 구분된다. 기본조사는 개인에 대한 조사로서 피고용자와 연금소득자, 그리고 투자소득이 있는 자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신고자료와 다른 자료를 상호대조하는 방식의 조사와 조사관의 면

27) 손실기업의 청산 또는 매각을 통한 조세회피

접조사, 각종 공제 및 비용에 대한 실질을 입증하는 자료 요구 등의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대상은 ① 미신고소득(이자, 배당, 연금 등), ② 설명되지 않은 실업기간, ③ 과세대상 정액소득(lump sum)과 ETPs(Eligible Termination Payments)의 계산, ④ 자동차 관련 비용, ⑤ 생명보험 보너스, ⑥ 타지거주(living-away-from-home) 공제, ⑦ 근로 관련비용 공제, ⑧ 여행경비, ⑨ 개인연금공제, ⑩ 기부금 공제, ⑪ 부양가족공제 등이다.

사업체조사는 주로 사업체의 소득에 대한 조사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납세자와 법인에 공동으로 적용되며, 복합조사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대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체조사에서는 납세자의 사업체 운영과 기록, 회계장부, 기타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하는데, 중점 조사분야는 매출액과 매입액, (이자 등의) 증식 및 선지급, 은행계좌, 투자소득(이자/배당), 채권자/채무자, 여행 및 기타 경비(실질성 입증), 조세회피 전략, 일지 및 원장 기록내용, 분할납부 공제 등이다. 사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납세자는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복합조사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무조사로서 경영자 보수, 사용료, 계열기업 간 자금의 차입/대부, 이전가격 결정방법, 조세조약 관련 문제 등 주로 전략적인 이슈에 중점을 두는 조사로서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도 적용된다. 특정 부류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워헌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00대 기업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정이 아니다. 복합조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기 1개월 전에 조사를 통보하고 조사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준다.

특별조사는 대규모의 불법행위나 조세회피 전략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사로서, 특히 기소를 위한 자료수집에 초점을 맞춘다.

다. 연간 납세 계약(Annual Compliance Arrangements: ACA)

매출액 기준 상위 50개 기업은 국세청과 ACA를 체결할 수 있다. ACA는 기업의 과세에 대한 확실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세

청은 위험관리 계획의 개발을 포함하여 공동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해 확인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발행한다. 공동 위험관리 절차를 보면 국세청은 다음에 열거한 바와 같이 조세 결과가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 연중에 ACA를 체결한 납세자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험성을 공개한다.

- 세법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
- 주요 거래가 발생한 경우
-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
- 중요한 국제과세문제
- 경제적 실질과 다른 조세결과가 나타난 경우
- ATO나 법정이 다른 견해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연말에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한 후에는 납세자와 공동으로 신고서와 법정 계정 및 세무조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다른 정보들을 종합하여 조세위험을 검토한다. 그리고 ATO는 공동 위험관리 결과를 확인하는 조사면제증명서(a sign-off letter)를 발행한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ACA를 통하여 저위험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으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회사가 알게 된다. 공개된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전에 예규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라. 협상을 통한 조정

국세청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납세자와 합의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합의 조정은 적합한 경우에만 하여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소송비용이 이익보다 큰 경우, (ii) 사실과 수량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AAT나 법원이 정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려운 경우, (iii) 조세회피 전략에 참여한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그 전략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 (iv) 그 합의를 통해서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납세자나 납세자 집단의 현재와 미래의 납세 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 (v) 유일한 자산의 가치 평가와 같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i) 그 결과가 법에 반영된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i) 합의를 통해 ATO의 견해를 확대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 (iii) 사안이 분명하거나 ATO의 견해가 확립된 경우로서 합의를 정당화할 이유가 없는 경우, (iv)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를 달리 취급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v) 법정에서의 분명한 판정이 공공 이익이 되는 경우, (vi) 법정에서의 소송이 중요한 납세순응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vii) 비슷한 사안이 소송에 걸려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viii) 납세자의 상황이 좋지 않아 AAT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합의를 통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마. 국세청의 정보접근 권한

국세청의 정보접근 권한은 전문가의 법적 특권주의(the doctrine of legal professional privilege)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그 외에도 개인의 비밀 보호 규정이 국세청의 정보접근을 저해할 수 있는데 호주인 경우 개인의 비밀 보호법(Privacy Act 1988)에 규정된 개인의 비밀 보호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밀보호법의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받는다. 그 정보의 사용이나 공개에 대해서도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공공재정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국세청이 제3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할 때 비공식적인 방법보다는 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정도의 제약은 존재한다.

IV. 국세청의 예규와 권고

1. 예규, 권고의 종류와 특성

국세청이 세법의 해석이나 시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시달하는 것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것과 일반 납세자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납세자에 대한 것으로는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예규(private rulings)와 행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권고(advice), 서면 권고 등이 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통칙(public rulings)과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책자들이 있다.

Practical Statement PS LA 2008/3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기술적 자문에 대해 언제 이 기술적 자문을 수행하고 그 자문은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언제든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서면 권고안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권고안이 적용되는 사적인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서 모든 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거나 또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질의가 많은 경우에는 사적인 예규나 권고보다는 기본통칙을 활용한다.

예규와 통칙, 그리고 GST에 대해 발급 또는 출간한 서면 권고는 국세청장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이러한 지침을 따라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벌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다른 서면 권고나 국세청이 발행한 행정지침에 따라 신고와 납세절차를 수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세청이 발행하는 서면 권고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해석 결정(Interpretation Decision)으로서 국세청의 ID 시리즈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세무 공무원의 법률적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행정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Law Administration Practice Statements(PS LA 시리즈)라고 하며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행정지침을 말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조세회피 상품

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경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Taxpayer Alerts(TA 시리즈)이다. 마지막으로 GST와 관련하여 훈령이나 지침에 추가하여 제공하는 자료들로서 fact sheets, information booklets, advice manuals, bulletins and product manuals를 포함하여 모든 GST 서면권고(All GST written advice)가 있다. 이와 같은 서면 권고는 모두 국세청 홈페이지의 법률 DB에 수록되어 있다. 사적 예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적예규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데, 사적 예규 등록부는 사적예규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적 예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예규는 사적 예규와 공적 예규, 그리고 구두 예규가 있는데,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사적 예규는 납세자의 질의에 대응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 국세청의 법률 해석을 정리한 것이다. 예규를 신청할 때 납세자가 제시한 사실과 가정,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 공적 예규는 사적 예규와 달리 일반적인 납세자 또는 특정 집단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나 특정 거래(scheme)에 적용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것 역시 특정한 사실과 가정,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예규통첩과 기본통칙이 있는데, 예규는 본래 관청 간의 법령 해석에 대한 지침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 형식으로 이루어져 그 해석이 납세자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본통칙은 세법의 해석·집행에 관한 예규통첩 및 내부적인 취급규정 중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세법해석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정하여 법조형식으로 체계화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예규통첩의 범주에 속한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예규가 호주의 사적 예규와 공적 예규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적 예규의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본통칙이 공적 예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에서는 사적 예규와 공적 예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나 행정재판소(Administration Appeals Tribunal: AAT)가 예규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여도 예규의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단, 사적 예규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AAT가 그 예규를 재검토하거나 예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법원이

나 AAT의 결정이 예규보다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납세자가 법원이나 AAT결정을 따를 수 있다.

법률이 변경된 경우 구법의 예규는 신법의 같은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구법과 신법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며, 신법에서 구법과 다른 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면 같은 것으로 본다.

예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1) 이전의 예규가 공적 예규였으면 납세자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 이전과 나중의 예규가 모두 사적 예규이거나 구두 예규인 경우, 국세청장이 나중의 예규에서 이전 것을 언급하였다면 이전 것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의 것을 무시한다. (3) 이전의 예규가 사적 예규이고 나중의 예규가 공적 예규인 경우에는 나중의 공적 예규가 만들어진 시점에 이전의 사적 예규 유효기간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그 사적 예규가 만들어진 거래(scheme)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적 예규를 무시한다.

예규가 무시된 경우에는 그 예규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납세자의 입장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또한 예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세금의 과소납부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부주의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TAA s 357-65).

2. 공적예규(Public Ruling)

공적 예규는 (i) 적용대상이 일반 납세자이거나 특정 계층의 납세자인 경우, (ii) 특정한 성격의 절세 전략과 관련된 것, 또는 (iii) 특정 절세전략에 관련된 납세자 집단에 관한 것인 경우에 발행한다(TAA s 358-5). 공적 예규에는 조세행정, 징수, 사실의 판단, 위험관리 수단, 과세 피난처(safe harbors), 사업자번호(ABN) 관련 내용, 특정 납세자에 대한 내용 등을 담으며,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적 예규를 철회할 수 있다.

공적 예규 중에 호주에서 특색이 있는 제도로 상품예규(Product Ruling)가 있다. 상품예규는 특정 (금융)상품의 조세혜택에 대해 공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서 많은 납세자들이 한 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래를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

에 발행한다. 이 경우 프로모터들이나 그 거래를 주도하는 자들이 Product Ruling PR 2007/71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상품 예규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응하여 예규를 발행하게 된다. 예규는 별도의 사적 예규 없이 해당 거래에 참여한 모든 납세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해당 상품이 예규 신청 시 설명한 내용과 다르면 철회할 수 있다.

공적 예규 중 계층예규(class ruling)는 세법이 특정 사안(거래)과 관련하여 특정 계층의 납세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해석에 대한 요청으로 발행하며, 거래의 참여자에게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상품 예규가 발행되는 투자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는 계층예규를 발행하지 않는다.

공적 예규는 특정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의 모든 납세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납세자가 공적 예규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 예규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적 예규를 신청할 수는 있다.

3. 사적 예규(Private Ruling)

사적 예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적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적용기간은 현재는 물론 과거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신청서에 '사적 예규'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적 예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단, (i) 법률의 집행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제약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ii) 이미 국세청에서 검토한 사안이거나 국세청장이 현행 규정하에서 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미 그 사용방향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예규에 미래 발생 사건과 관련된 가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적 예규를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TAA s 359-35).

사적 예규는 납세자가 신청한 후 60일 이내에 발생하여야 하며, 특별한 통지 없이 예규를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서면으로 재요청을 할 수 있다. 재요청 후 30일 이내에 예규가 발행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그것을 요청한 예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간주하여 반대나 청구(appeal)를 할 수 있다.

사적 예규는 국세청의 구속력 있는 사적 예규 등록부에 등록하여 출판되고 ATO 웹 사이트에 등재된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사적 예규에 대해 관련 건의 납세 기일 이전에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구두 예규는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며, 납세자는 결과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 납세자의 의견과 다를 경우 별도로 사적 예규를 신청할 수는 있다.

V. 조세불복

1. 불복대상

과세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나 심판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TAA Pt IVC(s 14ZL에서 14ZZS까지)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평가결과나 행정벌과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이중과세방지조약의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배당세액 공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GAAR)을 적용하여 철회한 조세혜택에 따른 대응 조정 요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사망한 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사망한 자의 세부담 평가결과에 불만을 가진 경우
- PAYG 원천징수제도하에서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위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FBT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연금기여금 추징금 평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퇴직금(termination payments) 추징금에 대한 평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 ABN 관련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등록 유효기간, ABN 발급 거부, 등록취소의 거부, 등록취소의 유효기간 결정, 상세정보 공개금지 신청 거부 등

평가결과에 불복하여 경정을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조세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기간동안 납세 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나 진정한 논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대체로 국세청장이 기간 연장을 허용한다.

2. 불복 절차

국세청의 평가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판청구 등 다른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 납세자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불복에 따른 이의제기(objection against assessment)이다. 대부분의 개인과 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결정, 행정벌과금, 배당세액공제, FBT 등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문제가 좀 더 복잡한 납세자는 4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통보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원(Administration Appeals Tribunal: AAT)이나 소액조세심판원(Small Tax Claims Tribunal: STCT)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납세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AAT에는 국세청의 결정이 있는 지 60일 이내에, STCT에는 28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AAT나 STCT를 거치지 않고 연방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국세청의 결정이 있는 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송 신청비, 심리비용 등 관련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AAT/STCT에 심사를 청구할 것인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납세자 스스로 소요되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5천달러 이하의 분쟁에 대해서는 STCT가 가장 유리하다. 여행경비, 교육비 등 단순히 경비만이 이슈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확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AT가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법률에 대한 논쟁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의 재량적 결정에 대한 문제는 먼저 AAT를 거치는 것이 유리하다. AAT/STCT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AT/STCT를 통한 불복절차와 법원을 통한 불복절차의 특징을 보면 AAT는 형식

의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서 증거주의 원칙에 구속을 받지 않고 심리도 덜 형식적이고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직접 출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정 소송의 경우 형식이 매우 중요하여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

공개성과 관련해서는 AAT의 경우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STCT의 경우에는 공개심리가 원칙이나 STCT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비공개 심리의 경우 판결에서 납세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소송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원이 공개된다.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AAT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국세청 각각의 부담이 명확하다. 법정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정소송은 매우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승소했을 때에도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AAT와 STCT, 그리고 법정소송 비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4-V-1>과 같다.

심사청구에 대한 AAT/STCT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이후 항소하는 과정을 보면 납세자는 AAT/STCT 결정 이후 28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연방법원 단독심 판결(a single judge of Federal Court)에 불복하여 합의심(Full Federal Court)에 항소하는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한다. 합의심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에는 28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표 4-V-1〉 AAT/STCT, 법정 소송의 수수료

(단위: 호주달러)

심판원	신청수수료					
	STCT			68		
	AAT			682		
법원	신청비		setting down fee		일당 심사비	
	법인	비법인	법인	비법인	법인	비법인
1심	1,881	785	3,135	1,569	1,254	625
상고심	3,135	1,569	3,135	1,569	1,254	625
대법원	신청비(SLA의 경우)		심사비(비SLA)		일당 심사비(비SLA)	
	법인	비법인	법인	비법인	법인	비법인
	2,726	1,364	4,090	2,045	2,045	1,022

주: SLA: Special Leaving Application

AAT/STCT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세청은 60일 이내에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검토나 소송이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납기가 연장되지는 않는다.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이자를 지불한다.

주어진 기한 내에 하나의 평가 결과에 대해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평가 결과를 통합하여 하나의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다. 평가결과의 경정에 대해서는 경정 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정보의 자유에 대한 법률(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에 의하면 심사청구 과정에서 납세자는 국세청의 내부자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문단의 보고서 등 내부 자료나 관청 간에 오고간 메모, 불복 보고서, 개인소득세 간소화를 위한 자문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특정인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한 경우에는 AAT에 심사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 AAT/STCT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처음 이의제기를 한 내용에 국한하여야 한다(TAA s 14ZZK(a); 14ZZO(a)). 이와 관련하여 AAT와 법원은 납세자가 이의제기하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있으나 의무적으로 그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AAT나 법원의 심의 과정에서 정보입증의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다. 즉,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평가 결과가 과도하다는 입증을 납세자가 하여야 하며, 배당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공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기타 다른 조세 관련 결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거나 다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이자는 ‘기본이자율(base interest rate)’로서 만기 90일의 은행 수취 어음 이자율을 적용한다(TAA s 8AAD②). 이자는 복리가 아닌 단리로 적용하고 세부담과 상계할 수도 있으며 과다납부세액의 환급 시 같이 환급하기도 한다.

Ⅵ. 조세회피 방지와 소득의 처분

1.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

흔히 GAAR(General Anti-Avoidance Rule)이라고 불리는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이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다(ITAA36 Pt IV A). GAAR은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조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 국세청이 그 혜택을 부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어떤 납세자가 특정한 조세혜택을 추구하는데, 다른 세법상 규정에 의해 그 혜택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GAAR은 그런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GAAR은 조세회피를 유일한 또는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러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실질이 형식에 우선한다는 실질주의 또는 회계상 무효(fiscal nullity)주의에 의하면 납세자가 특정한 일련의 거래를 조세 혜택을 얻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그 거래를 무시할 수 있다. 회계상 무효 원칙(fiscal nullity doctrine)은 영국 법원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호주에서는 ITAA36 Pt IV A에 규정된 GAAR이 있어 별도의 규정이나 규범이 필요하지 않다.

형법(Crimes (Taxation Offences) Act 1980)은 탈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담고 있고, 그 규정은 소득세, GST, FBT, 개별소비세, 석유자원 임대세, 연금기금 기여금 등 모든 세목에 걸쳐서 적용된다. 그런데 Pt IV A는 형법에 규정된 탈세와는 달리 법을 범한 것은 아니지만 조세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절세전략의 조세혜택을 무효화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규정의 문맥상 적용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공무원의 재량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커서 지침을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 Practical Statements PS LA 2008/6
- Practical Guide “Part IV A: The General Anti-Avoidance Rule for Income Tax – Basic Principles about How and When it Applies”
- “Recognizing and Reporting Tax Avoidance Scheme”

GAAR 규정은 조세회피 전략이 있고, 납세자가 그 전략을 통해 조세혜택을 받았으며, 조세혜택이 그 전략의 유일한 목적이거나 주목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규정이 적용되면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받는 조세혜택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penalty tax)를 부과할 수도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 전략(scheme)이란 어떤 합의나 계약, 약정, 약속, 보증-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든, 암묵적인 것이든, 강제할 수 있는 것이든- 그리고 어떤 기획, 계획, 제안, 활동이나 행위의 진행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ITAA36 s 177A). 이를 본 보고서에서는 전략이라고 번역한다.

조세혜택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할 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것
- 공제되지 않았어야 할 비용이 공제된 것
- 공제되지 않았어야 할 자본손실이 공제된 것
- 공제되지 않았어야 할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된 것
-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
- 과소배당전략(a dividend stripping scheme)하에서의 재산처분

합리적인 기대란 단순한 가능성 이상으로 해당 전략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였을 사건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며, 그 예측이 합리적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전략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시행되는 방법과 시기, 전략의 내용, 과세결과, 재무상황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과세통첩(Taxation Ruling)을 통해 Pt IV A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의 내역을 발표하고, 새로운 전략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 경고(Taxpayer Alert)를 발행하고 나중에 과세통첩에 반영한다.

과소배당전략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1) 과소배당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재산이 처분된 경우로서
- (2) 국세청장이 판단하기에 그 재산의 처분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이익의 배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 (3) 그 전략이 시행되기 이전에 재산처분 이익이 배당되었다면 그 배당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었을 것인 경우

배당세액공제 전략은 납세자에게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조세회피 전략과는 달리 '조세혜택'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동 규정이 적용된다(ITAA36 s 177 EA).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이 발생하였고, ② 배당세액공제 가능 배당(franded dividend)이 지급되었으며, ③ 주주가 소득세에서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④ 적어도 어느 일방의 경우에 거래의 목적이 세액공제를 받는 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Pt IV A를 적용한다. Pt IV A의 적용을 위해 조세회피가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나 거래가 단순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것일 뿐이라면 Pt IV A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세액공제 전략에 대해 Pt IV A를 적용하면 (i) 회사의 배당가능 배당액의 지급을 차변에 기입하여 자본금의 감소로 보고 (ii) 배당을 수취한 주주의 배당세액공제를 부인한다.

2.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

호주 세법에서 조세피난처(tax haven)란 비밀주의 과세 및 금융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비거주자에게 최소한 또는 매우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를 말한다. ATO는 납세자에게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거래에 대한 조세결과에 대해 납세자 경고를 발행하고, 조세회피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소납부세액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이 발행한 소책자 "Tax Haven and the Tax Administration"에 조세피난처를 통한 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에 있어 호주는 OECD 국가 등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 앤티가 바부다, 버뮤다, 영국령 버진 제도, 지브랄터, 건지, 맨 섬, 저지,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쿡 제도, 사모아, 아루바와는 과세정보 교환 협정(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ATO는 또한 다음 국가들을 조세피난처로 간주하고 있다. 안도라(Andorra), 앵귤라(Anguilla), 아루바(Aruba),

바하마(Bahamas), 벨리즈(Belize), 바레인(Bahrain),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 쿡 제도(Cook Islands), 키프로스(Cyprus), 도미니카 연방(Dominica), 그레나다(Grenada), 저지(Jersey), 라이베리아(Liberia),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 몰타(Malta), 마셜 제도(Marshall Islands), 모리셔스(Mauritius), 모나코(Monaco), 몬트세랫(Montserrat), 나우루(Nauru), 니우에(Niue), 파나마(Panama), 사모아(Samoa), 산마리노(San Marino), 세이셸(Seychelles), 세인트 키츠 네비스연방(St. Kitts and Nevis), 세인트루시아(St. Lucia),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St. Vincent and Grenadines),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Turks and Caicos Islands), Vanata.

3. 조세회피 전략 프로모터

TAA Sch 1 Div 290에는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고 판매하는 프로모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을 포함한 어떤 주체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금지명령을 받거나 강제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 그 주체나 다른 주체로 하여금 법률에 반하는 조세회피 전략의 프로모터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상품 예규를 근거로 개발 판매되는 상품을 그 예규에 설명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여기서 주체란 개인과 기업 파트너십을 모두 포함한다. 프로모터란 (i) 한 주체가 전략을 판매하거나 전략의 확산에 기여하고, (ii) 그 주체 또는 그 주체의 관계자가 전략을 판매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데 대한 대가를 수취하며, (iii)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 주체가 전략의 판매 및 확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때 그 주체를 의미한다.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단순한 자문을 행한 자는 전략이 시행되었더라도 프로모터로 보지 않으며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전략의 판매 및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자도 프로모터로 보지 않는다. 조세회피 전략이란 탈세나 법률에 반하는 회피를 통해 조세 혜택을 취하는 전략으로서 그 전략의 유일한 목적 또는 주목적이 조세혜택을 받는 데 있고, 그 전략을 통해 받은 혜택이 합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프로모터에 대한 벌금은 아래 설명하는 (1)과 (2) 중 큰 것이 된다.

- (1) 개인의 경우 5천PU(55만달러), 법인의 경우 2만 5천PU(275만달러)
- (2) 그 전략의 대가로 받은 보수의 2배

프로모터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프로모터가 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전략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프로모터에 대한 벌금 규정은 2006년 4월 6일 이후부터 유효하다.

4. 소득의 처분(alienation of income)

여기서 소득의 처분(alienation of income)이란 과세대상 소득을 다른 자에게 귀속시켜서 조세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소득을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자에게 귀속시키면 전체적으로 세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소득의 처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주요한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적 용역소득을 기업소득으로 전환하여 소득을 분할하고 사업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2)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의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을 한계세율이 낮은 납세자에게 이전하는 방법
- (3) 소득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방법

PSE(personal service entity)의 공제가능 비용은 ITAA97 SubDiv 86-B에 규정되어 있는데, PSE란 기업이나 파트너십 또는 신탁으로서 그 정상소득이나 법정 소득에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의 PSI(Personal Service Income)가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PSE의 비용 공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개인의 PSI 획득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다. 인적용역에 대해 GAAR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PSI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PSE에 허용되는 공제는 (1) PSI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PSE의 유지 관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2) 다른 원천의 소득을 초과하는 PSE 유지 관리비용은 PSI 비용에 포함시킨다. 공제가능한 비용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광고비 등)

- (2) 소득 또는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의 손실에 대비한 보험 비용
- (3)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에서 비롯되는 채무에 대한 보험 비용
- (4)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주체를 고용한 비용
- (5) 사적 기업연금 기여금
- (6) 근로자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지불 비용
- (7) GST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소요된 비용
- (8) 소규모 사업체의 하나의 수혜차량을 포함한 자산 감가상각비

VII. 벌과금과 처벌

1. 벌과금

조세와 관련된 벌금은 행정벌금과 납부지연 벌금, 그리고 조세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상의 벌금으로 구분된다. 행정벌금은 소득세법 ITAA s 995-1(1)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벌금이 다른 세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TAA s3AA). 이 규정은 과소보고를 초래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서 세목과 관계 없이 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에는 동등한 벌과금 체계(uniform penalties)가 적용된다. 그 내용은 TAA Sch 1 Pt 4-25에 규정되어 있는데, 벌금 부과대상은 활동보고서, 납세신고서, 기타 다른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나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과소신고, 기타 다양한 납세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세청장은 서면으로 벌금 부과 통보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벌금의 규모는 <표 4-VII-1>에 정리된 바와 같다.

벌금의 내역을 보면 위반 행위의 성격과 납세자의 특성, 그리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벌금이 달라진다.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소신고보다는 조세회피 전략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한 벌금이 더 과중하며, 납세자가 주의를 기울인 정도가 약하면 벌금이 가중된다. 그리고 조사를 하기 전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과소신고 내역을 보고한 경우에는 벌금을 경감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소규모 납세자에 비해 대규모 납세자에게 가중하여 벌금을 부과하며, 기타 행정벌금은 주로 국세청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20PU(Penalty Unit)가 부과된다. 2009/10년의 경우 1PU는 110달러이다.

과소신고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부가되며, 이자율은 GIC(General Interest Charge)로서 90일 만기의 은행 이자율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2010년 4월~6월에 적용된 이자율은 연 11.16%로 일 0.0353574%이다.

〈표 4-VII-1〉 각종 벌금의 내역

(단위: %)

	기본벌금	조정된 벌금		
		행정 방해(또는 반복발생)	자발적인 신고	
			조사중	조사 전
과소신고벌금 ¹⁾				
(1) 의도적 무시	75	90	60	15
(2) 무모한 부주의	50	60	40	10
(3) 사소한 부주의	25	30	20	5
(4) 합리화 곤란	25	30	20	5
(5) 보고서 제출 실패	75	90	N/A	N/A
조세회피 전략에 의한 과소신고 ^{1), 2)}				
(6) 반조세회피규정 적용	50(25)	60(30)	40(20)	10(5)
(7) 이익분할(조세회피목적)	50(25)	60(30)	40(20)	10(5)
(8) 기타 이익분할	25(10)	30(12)	20(8)	5(2)
신고의무 불이행				
(9) 소규모 납세자	기본 벌금 : 28일당 1PU(penalty unit) ³⁾			
(10) 중규모 납세자				
(11) 대규모 납세자				
기타 행정벌금				
(12) 자료 보관의무 불이행	20PU			
(13) 진술서 생성·보관 불이행	20PU			
(14) 정보접근 저지	20PU			

주: 1) 과소신고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보고서 제출의무불이행의 경우 관련 납부액의 일정비율(%)

2) 납세자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경우에는 () 안의 수치 적용

3) 1PU는 110달러(2009/10년) (Crimes Act 1914 s 4AA)

과소신고에 대한 벌금은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미신고로 인해 과소신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적용된다. 합리화할 수 있는 경우란 확률적으로 납세자의 진술이 맞을 확률이 틀릴 확률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 실패란 신고, 통보, 기타 서류를 적절한 양식으로 정해진 기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모한 부주의란 단순한 부주의나 태만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무시하거나 그런 위험에 무관심한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경우는 (i) 개인의 상황, 사업의 기장 여부, (ii) 과세결과에 의문이 가는 경우 적절한 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iii) 세법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였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모든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주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과소신고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 납세자는 합리적인 주의를 하였으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0년 3월부터 납세자 벌금을 면제한다. 사적 예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주의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표 4-VII-1>에 나타난 벌금 중 2개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것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해서는 그 전략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프로모터에게도 민법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TAA Sch 1 Subdiv 290-B). 국세청이 연방법원에 민법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하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조세회피 전략 또는 탈세 전략의 프로모터
- 상품예규에 근거하여 판매된 투자상품을 예규에 나타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한 자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프로모터에 대한 최대 벌금액은 ① 개인 5천PU(약 55만달러), 법인 2만 5천PU(약 275만달러)와 ② 해당 조세회피 전략에 대해 프로모터 및 프로모터 관계자가 받는 보수의 2배 중 큰 것이 된다.

기타 행정의무 위반 벌금은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벌금, 원천징수 의무자 등록 불이행, 지급정보 제출 의무 불이행 등 각종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나 서약서를 생성·보관해야 하는 의무 위반, 법에 의해 위임받은 세무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위반에 대해 부과하며, 각 위반 행위에 따라 벌금이 달리 부과된다.

국세청장은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법률의 이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한 삭감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Practice

Guideline PS LA 2006/2에 의하면 납세자가 장부기록 과정에서 행한 단순한 오류로서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실수이고 중요한 거래와 무관한 것이며, 그 납세자가 그동안 우수한 납세순응 실적을 보여주었다면, 국세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벌금을 삭감할 수 있다. 신고 불이행 벌금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과거에 우수한 납세순응 실적을 보여주었고, 신고 불이행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을 삭감할 수 있다.

2. 조세범 처벌

TAA Pt IV(s 8A에서 8ZN)에는 조세범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다.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은 형법상 벌금이 아니라 민법상 벌과금이다.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재범에 대해서는 중과하고 법인은 개인에 비해 최대 5배까지 중과한다. 형사고소와 벌금이 중복된 경우에는 벌금을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가지 모두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PAYG 제도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TFN 관련 규정의 위반 및 TFN의 남용 등이 형사고소와 벌금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업의 경영자에게 기업의 조세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표 4-Ⅶ-2〉 범죄 유형에 따른 조세범 처벌

범죄유형	최대 처벌	
	자연인	법인
신고, 정보제공, 자료의 생성 및 접근, 질문에 대한 대답, 출두요구, 증거제출 및 확인의 거부 및 불이행	초범: 20PU 재범: 40PU 3범 이상: 50PU and/or 12개월 구속 *범죄가 확정된 경우 조세회피 금액의 두 배,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세 배까지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초범: 20PU 재범: 40PU 3범 이상: 250PU
증거제출, 신고 및 정보제공에 대한 법원의 명령 이행 거부 또는 불이행	50PU and/or 12개월 구속 *범죄가 확정된 경우 조세회피 금액의 두 배,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세 배까지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250PU
· 보고서 작성에서의 오류, 그릇된 작성,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의 누락 · 부정확한 기장	초범: 20PU 재범 이상: 40PU *범죄가 확정된 경우 조세회피 금액의 두 배까지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초범: 20PU 재범 이상: 40PU
· 분별없이 행한 보고서 작성에서의 오류, 그릇된 작성,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의 누락 및 부정확한 기장	초범: 30PU 재범 이상: 50PU and/or 12개월 구속 *범죄가 확정된 경우 조세회피 금액의 두 배,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세 배까지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초범: 30PU 재범 이상: 250PU
자료를 의도적으로 위조하거나 감추고, 폐기, 또는 변경	초범: 50PU and/or 12개월 구속 재범 이상: 100PU and/or 2년 구속 *범죄가 확정된 경우 조세회피 금액의 두 배까지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초범: 250PU 재범 이상: 500PU
ATO 공무원 공무집행 방해	120PU and/or 2년 구속	600PU
· 과세기록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접근 · 허가받지 않고 조세정보를 녹음 또는 누설	100PU and/or 2년 구속	500PU
TFN 규정 위반 · 미승인 TFN 취득, 사용, 공개 등	100PU and/or 2년 구속	500PU

주: 1. PU: Penalty Unit, 1PU는 1.1달러(Crime Act 1914 s 4AA)

조세범 처벌 및 벌금 규정을 표로 정리하면 <표 4-VII-2>와 같다. 신고나 정보의 제공, 증거제출 등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초범과 재범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3범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과 함께 법정 구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과소납부한 세액의 2배 또는 3배까지 세금을 중과할 수 있다. 부주의한 정도가 심화되면 처벌이 강화되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감춘 경우, 국세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허가받지 않고 과세기록에 접근하거나 과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TFN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0~120PU의 중한 벌금을 부과하며 재범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구속을 할 수 있다. 자연인의 경우에 구속이 가능한 범죄인 경우에 법인은 법정 구속이 불가능하므로 법정구속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벌금을 가중하여 부과한다.

조세범도 일반 형사범과 마찬가지로 일반형법 규정인 Criminal Code s 134.2와 134.5에 의해서 기소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의 범죄에 대해 회사의 관리자나 경영자가 자신의 범죄인 것처럼 기소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ATO는 회사를 기소하지만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자나 경영자 개인을 기소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정재호,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의 조세제도(I)-」, 『재정포럼』, 2000(11).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각 연도.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정보, 해외투자통계, 2012.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Year Book Australia*, February 2008, 재인용.

_____, *Australian Demographic Statistics*, September 2011.

_____, *Australian Economic Indicators*, April 2012.

_____,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December, 2011.

_____,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December, 2011.

_____, *Consumer Price Index, Australia*, December, 2011.

_____,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February, 2012.

_____, *Taxation Revenue 2010-11*, 2012.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2008-09*, 2008.

_____, *Budget 2012-13*, 201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12.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Reserve Bank of Australia, *Exchange Rate Data*, <<http://www.rba.gov.au>>, accessed 2012/4/18.

호주 국세청, <http://law.atolaw.gov.au/atolaw>

호주 외교무역부, http://www.dfat.gov.au/facts/legal_system.html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편 -

2012년 5월 2일 인쇄
2012년 5월 9일 발행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580-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9,000원